

연구보고 10-R02-1

아동·가족 공공서비스 정책

책임연구원 :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조흥식(서울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 : 이정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최은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유현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편람은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내용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공공서비스의 내용을 요약, 발췌하였음.
- 주된 기준 자료는 각 중앙행정부처 백서, 보도자료, 업무보고, 종합계획, 시행계획, 사업시행지침서, 사업 안내, 관련법, 사업 운영지침, 사업실적 보고서 등이며 2010년 내용의 경우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록함.
- 이 편람은 전반적 아동·가족공공지원서비스를 총망라함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가족은 물론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부처들에게 중앙행정부처 전반의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편람은 부처별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봄.

- 첫 부분에서는 대표적 아동·가족 공공지원기관 및 사업 개관을 살펴봄. 세부내용으로 기관 및 주요 사업명(관련중앙행정기관), 사업개요(역할 및 기능),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기타사항 등을 포함함.
-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주요사업별 개관을 바탕으로 부처별 최근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봄.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내용은 아동·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지원내용을 가능한 포괄적으로 수록하고자 하였음.
- 본 편람에서 살펴보고 있는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여성가족부: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상담 #1388,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아카데미 ‘두드림존’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 쉼터(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아동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 청소년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사업, 청소년유해생활환경 개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RED ZONE) 제한구역 지정운영, 청소년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 인터넷 위기채팅 상담 사업, 청소년선도(보호)시설, 한부모가족 상담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문화존, 청소년교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취업지원 통합전산망, 위민넷, 여성회관, 자립형 창업지원 복지자금,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아이돌보미 사업, 청소년증 사업.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예방센터),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중독상담센터, 흡연상담센터, 드림스타트사업, 시설보호아동지원사업, 가정보호사업,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아동급식지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129).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내 청소년상담센터, 학교폭력 SOS지원단, 학교사회복지사업,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구축 사업, 배움터지킴이 배치 및 학교 내 CCTV 설치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멘토링 이력관리체계, 농산어촌 우수학교, 교육지원청(구 지역교육청),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 학력인정 대안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및 자녀 교육비 통합지원 체제, ‘그린스쿨’.
- 문화체육관광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문화·체육·관광 바우처 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시설·단체에 신문구독 지원.
-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지원,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긴급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저소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강화, 저출산 고령화, Well-Being 시대에 부응한 주거복지 강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방재청 포함):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희망 근로 사업,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희망마을프로젝트, 농어촌 집수리 사업, 지역희망금융사업, 세제 지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아동안전 지킴이집,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실종아동 등 가출인 찾기 시스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청소년 상담교실 및 사랑의 교실 운영 사업,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 생활안전사고 예방 강화, 외국인주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기반 마련
- 통일부: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제 2 하나원 건립, 하나둘학교, 초등학교 특별학급(삼죽초등학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일자리 중심 북한이탈주민 토탈케어 정보시스템 구축.
-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 청소년심리검사실, 보호관찰소, 법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구 한국갱생보호공단).
- 고용노동부: 직업전문학교, 구인·구직 DB 구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저소득층 취업지원 특별기간 운영, 사회적 기업.
- 농림수산물부: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사업, 여성농업인센터,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실시.
- 환경부: 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저소득층 수돗물 공급지원 확대, 나눔 장터 등 자원절약 및 알뜰구매 범국민운동 전개,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농어촌 지역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어린이유해환경 개선,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 설립.

- 기타 중앙행정기관: 희망키움통장제(기획재정부),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목 차

I. 서 론	1
II.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기관 및 사업 개관	7
1. 여성가족부	9
2. 보건복지부	38
3. 교육과학기술부	51
4. 행정안전부	58
5. 통일부	59
6. 법무부	63
7. 고용노동부	69
8. 농림수산식품부	70
III.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기관 및 사업 현황	73
1. 여성가족부	75
1)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	76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77
3)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상담 #1388 ...	79
4)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81
5)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아카데미'두드림존' 사업	82
6) 청소년수련시설	83
7) 청소년이용시설	84
8) 건강가정지원센터	85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8
1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90
11) 이주여성 쉼터(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91
12) 여성긴급전화 1366	91

13)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92
14) 아동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93
15)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95
1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95
17)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96
18)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96
19)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97
20)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	98
21) 청소년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사업	98
22) 청소년유해생활환경 개선	99
2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100
24) 청소년 통행금지(RED ZONE)·제한구역 지정운영	101
25) 청소년쉼터	101
26) 청소년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	102
27) 인터넷 위기채팅 상담 사업	103
28) 청소년선도(보호)시설	104
29) 한부모가족 상담사업	104
30)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	105
3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6
32) 청소년공부방	107
33) 청소년문화존	107
34) 청소년교류	108
35) 한국청소년진흥센터(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9
36)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110
37)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111
38)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11
3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2
40)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113
41) 여성취업지원 통합전산망	114
42) 위민넷	114
43) 여성회관	115

44) 자립형 창업지원 복지자금	116
45)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118
46)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118
47) 아이돌보미 사업	119
48) 청소년증 사업	120
 2. 보건복지부	122
1)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예방센터)	123
2) 아동상담소	123
3) 지역아동센터	124
4) 종합사회복지관	125
5) 정신보건센터	125
6) 알코올중독상담센터	126
7) 흡연상담센터	127
8) 드림스타트사업	128
9) 시설보호아동지원사업	128
10) 가정보호사업	134
11)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136
12) 아동급식지원	136
1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137
14)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종합센터)	138
15)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140
16) 보건복지콜센터(129)	140
 3. 교육과학기술부	142
1) 교육청 내 청소년상담센터	144
2) 학교폭력SOS지원단	145
3) 학교사회복지사업	147
4)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구축 사업	148
5) 배움터지킴이 배치 및 학교 내 CCTV 설치사업	151
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152
7) 방과후학교	154

8) 방과후학교지원센터	156
9)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158
10) 멘토링 이력관리체계	158
11) 농산어촌 우수학교	160
12) 교육지원청(구 지역교육청)	161
13) 직업교육 선진화-진로정보센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62
14)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164
1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164
16) 탈북청소년 학력인정 대안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166
17)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및 자녀 교육비 통합지원 체제	167
18) '그린스쿨'	169
4. 문화체육관광부	171
1)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171
2) 문화·체육·관광 바우처 사업	172
3)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77
4)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178
5)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시설·단체에 신문구독 지원	181
5. 국토해양부	182
1) 보금자리주택	182
2) 다가구 매입임대	187
3) 기존주택 전세임대	188
4)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190
5)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191
6) 긴급주거지원사업	192
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193
8) 저소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강화	194
9) 저출산 고령화, Well-Being 시대에 부응한 주거복지 강화	195
10)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	196

6.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방재청)	196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197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99
3) 희망 근로 사업	200
4)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203
5) 희망마을프로젝트	203
6) 농어촌 집수리 사업	205
7) 지역희망금융사업	206
8) 세제 지원	206
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207
10) 아동안전 지킴이집,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209
1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찾기 시스템	212
12) 유괴·실종 경보시스템 운영	212
13)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213
14) 아동안전보호협의회	215
15)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215
16) 청소년 상담교실 및 사랑의 교실 운영 사업	217
17)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	218
18)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	219
19) 생활안전사고 예방 강화	222
20) 외국인주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223
2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223
22)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기반 마련	224
7. 통일부	225
1)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제2하나원 건립 ..	226
2) 하나둘학교	228
3) 초등학교 특별학급(삼죽초등학교)	229
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230
5) 일자리 중심 북한이탈주민 토탈케어 정보시스템 구축 ..	231

8. 법무부	232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34
2) 소년원학교	235
3)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	238
4) 청소년심리검사실	240
5) 보호관찰소	240
6) 법교육	247
9. 고용노동부	253
1) 직업전문학교	253
2) 고용지원센터	253
3) 구인·구직 DB 구축	260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261
5)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263
6) 저소득층 취업지원 특별기간 운영	264
7) 사회적 기업	265
10. 농림수산식품부	267
1)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267
2)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268
3)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사업	271
4) 여성농업인센터	276
5)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실시(5개 지역)	276
11. 환경부	279
1) 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279
2) 저소득층 수돗물 공급지원 확대	279
3) 나눔장터 등 자원절약 및 알뜰구매 범국민운동 전개	280
4)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280
5) 농어촌 지역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280
6) 어린이유해환경 개선	281
7)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 설립	281

12. 기타 중앙행정기관	282
1) 희망키움통장제(기획재정부)	282
2)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청) ...	283
참고문헌	285

표 목차

<표 I-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목록	4
<표 III-1> 두드림존 운영 2010년 사업 추진 방향	83
<표 III-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연령별 현황	124
<표 III-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연령별 현황	124
<표 III-4> 가정위탁보호현황	135
<표 III-5> 보건복지콜센터 주요상담내용	141
<표 III-6>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별 업무분장	144
<표 III-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	156
<표 III-8> 농산어촌 우수학교 2010년도 지원 내용	161
<표 III-9> 전국 탈북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대안학교	167
<표 III-10> 그린 스쿨 유형(예시)	170
<표 III-11> 문화체육관광부 부서 및 업무내용	171
<표 III-12>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실적(2009) ..	172
<표 III-13> 문화바우처 지원 실적(연도별/대상별, 2009) ..	173
<표 III-14> 문화바우처 지원 실적(장르별, 2009)	174
<표 III-15>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별 현황(2009)	178
<표 III-16> 2008 분야별 예술강사 현황	179
<표 III-17> 2009 분야별 예술강사 현황	180
<표 III-18>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 (2006~2009)	181
<표 III-19>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및 업무내용	196
<표 III-2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	200
<표 III-21> ONE-STOP 지원센터 현황(18개소)	207
<표 III-22> ONE-STOP 지원센터 운영실적('09년)	208
<표 III-23>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성과 ('08. 4. 14~'09. 12. 31)	210
<표 III-24>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성과('09. 3. 2~12. 31) ..	211
<표 III-25> 실종아동등 발생 및 처리 현황	212
<표 III-26> 유괴·실종 경보시스템 참여매체 현황	213

<표 III-27>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연도별 운영 현황 ..	216
<표 III-28> 청소년 상담교실 운영 실적	217
<표 III-29> 사랑의 교실 운영 실적	218
<표 III-30>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적	219
<표 III-31> 명예경찰 소년단 현황('09년)	220
<표 III-32> 명예경찰 소년단 수련활동 실적('09년)	221
<표 III-33> 명예경찰 소년단 선도활동 실적('09년)	221
<표 III-34> 통일부 담당부서별 주요 정책 및 사업	226
<표 III-35> 법무부 담당부서별 주요정책 및 사업	233
<표 III-3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현황	238
<표 III-37>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240
<표 III-38>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244
<표 III-39>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245
<표 III-40> 청소년대상자 판결(결정)전 조사 및 환경 조사 접수 실적	246
<표 III-41>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 주요내용	247
<표 III-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비행청소년보호실적	251
<표 III-43> 고용지원센터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	255
<표 III-44>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255
<표 III-45> 심층상담 전담제 추진실적	257
<표 III-46> 집단상담프로그램 현황	258
<표 III-47>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현황	258
<표 III-48> 고용지원센터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현황 ..	259
<표 III-49>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267
<표 III-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269
<표 III-51>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269
<표 III-52>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사업 사업수혜자 만족도조사 결과	272
<표 III-53>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272
<표 III-54>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사업 201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273
<표 III-55>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실시(5개 지역)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277

그림 목차

[그림 III-1] 조직구조 및 주요기능	75
[그림 III-2]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서비스 연계도	77
[그림 III-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도	79
[그림 III-4] 청소년전화 1388 전화상담 모형	81
[그림 III-5] 청소년동반자 서비스 체계도	82
[그림 III-6]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달체계도	87
[그림 III-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89
[그림 III-8] 피해자를 위한 모든 기관과의 네트워크	90
[그림 III-9]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추진체계	92
[그림 III-10]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체계도	93
[그림 III-11] 해바라기아동센터 네트워크 운영체계	94
[그림 III-12] 청소년쉼터 체계도	102
[그림 III-13] 사업추진체계	103
[그림 III-14] 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배치도	105
[그림 III-1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체계	106
[그림 III-16] 청소년문화존 운영체계	108
[그림 III-17]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지원·연계 체계도	110
[그림 III-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체계	113
[그림 III-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추진체계도	114
[그림 III-20] 복지자금 대여 절차도	117
[그림 III-2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조직도	119
[그림 III-22] 아이돌보미 사업 서비스 흐름도	120
[그림 III-23] 보건복지부 조직도	122
[그림 III-24] 정신보건센터 지원체계도	126
[그림 III-25]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 체계도	128
[그림 III-26] 보건복지콜 센터 통합후 보건복지콜센터의 현황 ..	142
[그림 III-27]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도	143
[그림 III-28] 그림 학교폭력SOS지원단 체계도	146
[그림 III-29] 그림 Wee 프로젝트 체계도	148
[그림 III-30] Wee 서비스 네트워크	151

[그림 III-3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154
[그림 III-32]	그림 부산 서구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체제	157
[그림 III-33]	대학생 멘토링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159
[그림 III-34]	농어촌우수학교 사업방안	160
[그림 III-35]	진로교육지표의 이론적 모형	163
[그림 III-36]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추진체제	166
[그림 III-37]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전·후 비교	169
[그림 III-38]	복지관광사업 신청절차	176
[그림 III-39]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체제	179
[그림 III-40]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제	180
[그림 III-41]	보금자리 주택 안내	182
[그림 III-42]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	185
[그림 III-43]	영구임대주택 입주과정	187
[그림 III-44]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절차도	188
[그림 III-45]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절차도	189
[그림 III-46]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지원절차도	191
[그림 III-47]	긴급주거지원사업 지원 절차	193
[그림 III-48]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보육시설 확대 추진체제	195
[그림 III-49]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	198
[그림 III-50]	희망마을 프로젝트 안내	205
[그림 III-51]	프로파일링 시스템 체계도	214
[그림 III-52]	통일부 조직도	225
[그림 III-53]	하나원 조직도	227
[그림 III-54]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227
[그림 III-55]	단계별 정착초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229
[그림 III-56]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 체계도	231
[그림 III-57]	취업지원체계도	232
[그림 III-5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조직도	233
[그림 III-59]	한국가정법률사무소 기구표	235
[그림 III-60]	그림 소년원학교 조직도	236
[그림 III-61]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237

[그림 III-6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구표	239
[그림 III-63]	보호관찰 주요정책변화	241
[그림 III-64]	보호관찰실시 절차도	243
[그림 III-65]	법질서선진화기획단 조직도	249
[그림 III-66]	솔로몬 로파크 비전	250
[그림 III-6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조직도	252
[그림 III-68]	e-채용마당을 통한 인재 채용 흐름도	256
[그림 III-69]	계좌제 방식 흐름도	262
[그림 III-70]	2010년도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개관 ..	264
[그림 III-71]	사회적기업의 역할	266
[그림 III-72]	사업시행 체계도 - 시설이용아동	274
[그림 III-73]	사업시행 체계도 - 시설미이용아동	275
[그림 III-74]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추진체계	278

I. 서론

I. 서론

본 편람은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내용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서비스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중앙행정부처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방재청 포함), 통일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타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기준 자료는 각 중앙행정기관 백서, 보도자료, 업무보고, 종합계획, 시행계획, 사업시행지침서, 사업 안내, 관련법, 사업 운영지침, 사업실적보고서 등이며 2010년 내용의 경우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다. 가능한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인터넷 자료 이외에 별도의 부처 최근 자료를 찾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몇 년 전 자료를 수록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명의 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년도 해당시기의 기관명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기관명을 기재하였다.

이 편람은 전반적 아동·가족공공지원서비스를 총망라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아동·가족은 물론 아동·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부처들에게 중앙행정기관 전반의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에 대해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해보는 중요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편람에서는 부처별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부분에서는 대표적 아동·가족 공공지원기관 및 사업의 개관을 기관 및 주요 사업명(관련중앙행정기관), 사업개요(역할 및 기능), 주요사업, 세부사업내용, 기타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주요사업별 개관을 바탕으로 기관별 최근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내용은 아동·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능한 포괄적으로 수록하고자 하였다.

본 편람에서 살펴보고 있는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표 1-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목록

중앙행정기관명	공공지원서비스 목록
여성가족부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상담 #1388,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아카데미 '두드림존'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 쉼터(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아동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 청소년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사업, 청소년유해생활환경 개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RED ZONE) 제한구역 지정운영, 청소년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 인터넷 위기채팅 상담 사업, 청소년선도(보호)시설, 한부모가족 상담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문화존, 청소년교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사업,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취업지원 통합전산망, 위민넷, 여성회관, 자립형 창업지원 복지자금,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아이돌보미 사업, 청소년증 사업.

중앙행정기관명	공공지원서비스 목록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예방센터),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중독상담센터, 흡연상담센터, 드림스타트사업, 시설보호아동지원사업, 가정보호사업,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아동급식지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12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내 청소년상담센터, 학교폭력 SOS지원단, 학교사회복지사업,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구축 사업, 배움터지킴이 배치 및 학교 내 CCTV 설치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멘토링 이력관리체계, 농산어촌 우수학교, 교육지원청(구 지역교육청),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 학력인정 대안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및 자녀 교육비 통합지원체계, '그린스쿨'.
문화체육관광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문화·체육·관광 바우처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시설·단체에 신문구독지원.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긴급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저소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강화, 저출산 고령화, Well-Being 시대에 부응한 주거복지 강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포함)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희망 근로 사업,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희망마을프로젝트, 농어촌 집수리 사업, 지역희망금융사업, 세계 지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아동안전 지킴이집,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실종아동 등 가출인 찾기 시스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청소년 상담교실 및 사랑의 교실 운영 사업,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 생활안전사고 예방 강화, 외국인주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기반 마련

중앙행정기관명	공공지원서비스 목록
통일부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제 2 하나원 건립, 하나둘학교, 초등학교 특별학급(삼죽초등학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일자리 중심 북한이탈주민 토탈케어 정보시스템 구축.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 청소년심리검사실, 보호관찰소, 법교육,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구 한국갱생보호공단).
고용노동부	직업전문학교, 구인·구직 DB 구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저소득층 취업지원 특별기간 운영, 사회적 기업.
농림수산식품부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사업, 여성농업인센터,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실시.
환경부	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저소득층 수돗물 공급 지원 확대, 나눔 장터 등 자원절약 및 알뜰구매 범국민운동 전개,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농어촌 지역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어린이유해환경 개선,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 설립.
기타 중앙행정기관	희망키움통장제(기획재정부),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청) 등.

Ⅱ.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기관 및 사업 개관

1. 여성가족부
2. 보건복지부
3. 교육과학기술부
4. 행정안전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고용노동부
8. 농림수산물식품부

1. 여성가족부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연계하여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임. 이는 곧 사회안전망을 의미하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서는 전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허브(HUB)역할을 담당하여, 상담을 통해 문제를 평가한 뒤 해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다. 주요사업	○ 지역연계협력사업 ○ 청소년상담 및 활동지원 ○ 청소년전화 1388운영 ○ 위기청소년 긴급 구조 활동 ○ 일시보호시설운영 ○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라. 세부사업내용	○ 상담(직접수행) : 개인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동반자 파견 등 ○ 보호 : 긴급구조,일시보호,귀가지원,식사제공,교통비지원(직접수행) - 청소년쉼터, 그룹홈 연계(청소년쉼터, 그룹홈) ○ 교육(직접수행,대안학교) : 검정고시 응시지원, 대안교육 면제 등 ○ 자립(직접수행, 고용지원센터) : 직업,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 법률(1388 법률지원단) : 조사동행, 변호지원, 법률자문 ○ 문화(청소년수련관) : 동아리활동 지원, 수련관 프로그램 안내 등 ○ 건강(지역의료원, 보건소, 1388 의료지원단(약사회,의사협회 등)) : 약품지원, 건강진단, 치료지원 * ()의 내용은 사업수행기관을 의미함.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3_01.jsp 2010.10.1 검색 청소년전화 1388 홈페이지 CYS-NET 소개 http://1388.kyci.or.kr/cys_net/cysnetinfo.asp 2010.10.1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상담 #1388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일반 국민 누구나 청소년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화로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및 수련활동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 치료 등 청소년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365일 24시간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1388'은 2004년 청소년보호단체인 사단법인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 주도로 시작됐으며, 현재 주요 통신사들이 참여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시간적 제약이 없음.
다. 주요사업	o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전화상담 통한 서비스지원 o '#1388' : 모바일 상담을 통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o 청소년에게 전화를 통해 다급한 위기 해결에서부터 근본적인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o 청소년의 보호자와 지도자를 비롯해 전화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정보제공, 전문가와의 상담 등 지원 o 전국 24시간 운영 <pre> graph LR Start((PUSH 1318)) --> A[발신자] A --> B[접수] B --> C[평가] C --> D[위기상담] C --> E[신고] D --> F[일반상담] D --> G[긴급구조 (1388 청소년지원단)] F --> H[단회 상담후 종결 상담 접수면접연결 정보제공] G --> I[기록 및 사후관리] E --> J[관계기관 협조 (자치단체, 검찰, 경찰등)] </pre> <청소년전화 1388 전화상담 모형>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상담원
바. 자료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2009 주요사업실적. http://www.kyci.or.kr, 2010. 9. 30. 검색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1388 청소년전화. http://www.kyci.or.kr, 2010. 9. 30. 검색 한국일보 '청소년 고민 상담 통화보다 문자로!'. http://news.hankooki.com, 2010. 7. 14일자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청소년동반자(YC)프로그램(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위기(가능)청소년을 직접 찾아 심리·정서적 교류를 증진 하고 상호 신뢰감을 구축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역 자원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대상 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와 성공적인 삶을 지원함.
다. 주요사업	○ 찾아가는 상담지원 ○ 생활지원 연계 ○ 프로그램지원 연계
라. 세부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이용 청소년 중 동반 자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 대상자 발굴 청소년동반자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청소년은 1388 청소년지원단 및 학교, 지역 내 공공기관·전달체계·out-reach 등을 통하여 연계된 모든 위기청소년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신청방법 청소년전화1388” 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방문 신청 ○ 프로그램 내용 1) 찾아가는 상담지원 위기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동반자가 직접 찾아가 청소년의 심리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2) 정서적 지원 위기청소년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정서적 지지 3) 생활지원 연계 위기청소년의 생활환경에서 필요한 숙식,교육,의료,보건,법률,여가,직업훈련,취업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4) 프로그램지원 연계 위기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학습체험·체육·문화체험, 자기 계발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 인력 : 청소년동반자(청소년관련 자격증 소지자)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3_02.jsp 2010.10.1 검색 청소년전화 1388 홈페이지 YC소개 http://1388.kyci.or.kr/cysnet/yc.asp 2010.10.1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아카데미 '두드림존'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현재 학교교육을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토털 자립준비지원사업이다.
다. 주요사업	○ 청소년 자립준비에 필요한 체험중심의 종합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연계 및 지원 ○ 체험중심적 자립지원센터 두드림존의 설치 및 운영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대 ○ 온라인 관리시스템 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 사업지원 대상 - 연령범위 : 만 15~24세 - 대상 : 학업중단, 가출, 요보호, 보호관찰, 시설퇴소, 학교부적응 등 사회·심리적 위기·취약계층으로서, 사회진출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당면 청소년 ※ 대상 선발시 유의사항 : 본인이 자발적으로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를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청) 및 요보호시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단,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인격장애 등 집단활동 불가 대상 제외) ○ 단계별 대상관리 : 1) 사전단계 : 대상자 모집, 대상자 면접(스크리닝), 대상자 선정 2) 1단계(교육프로그램) : 프로그램 참여시간 관리 - 지속참여 독려 - 참가자들의 문제행동 발생시 긴급 개입 - 담당자와의 긴밀한 연락망 구성 3) 2단계(체험프로그램) - 수시상담 실시 - 희망직업분야 탐색 - 외부활동 시 보험가입 4) 3단계 (사회진출 지원) - 자립지원 계획수립 - 개인별 사례관리 - 사회진출 또는 학업지속 독려 5) 사후관리 : 전화,사이버,면접상담/멘토링/또래지지도임/사내멘토연결 * 각 단계별 대상자는 1단계→ 2단계→ 3단계→사회진출(자립)의 순서로 참여함. 단, 1단계 수료 후, 사회진출 준비가 완료된 대상에 한해, 곧장 3단계로 진행 가능함.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 인력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간행물 발간 자료실, 2010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7_01.jsp 2010.10.1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함.
다. 주요사업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 청소년 수련관 - 생활권에 위치하며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 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원 - 자연권에 위치해 있으며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 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전문적인 활동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수련시설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인력 : 청소년지도자
바. 자료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안내 http://www.youthnet.or.kr/2009/center/youthcenter.asp 2010.10.1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청소년 이용시설(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이지만,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 활동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
다. 주요사업	청소년이용시설로는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② 『과학관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④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 교육시설 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⑥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⑧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써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라. 세부사업내용	가. 문화시설 ○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 각 지역별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 문화공간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나. 과학관 ○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서울과학관 ○ 국립중앙과학관 - 상설전시관에 4개분야 약 4,100여점의 전시품 전시 -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 ○ 국립서울과학관 :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의 공간을 갖춘 다. 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 농구 내, 시·군 기본체육 시설 등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를 증진함.
다. 주요사업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보급 - 센터 종사자 교육, 지방센터 사업운영 지원 및 평가 - 가족관련 정보제공(DB 구축) 및 전국단위 가족문화운동 전개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제공 - 지역주민 대상의 가족문화 개선 · 홍보사업 추진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사업 추진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가족관련 정보제공 등
라. 세부사업내용	○ 필수사업 -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예비부부/신혼기부부 교육, 가정경영 아카데미 - 가족상담: 가족상담, 이혼전후가족상담 -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봉사단운영, 아버지학교 - 가족돌봄지원서비스: 공동품앗이 육아망 구축 사업, 놀토·임시휴교·방학 중 가족돌봄 지원사업 -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통합 제공되는 사업 -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 및 연계사업 ○ 선택사업 - 가족교육: 부모교육, 부부교육, 학령기 자녀교육, 중년기 부부교육 등 기타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 가족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문제상담, 가족위기상담, 자녀 문제상담, 상담봉사자 양성 등 -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문화캠페인, 가족여가/체험프로그램, 가족친화경영, 가족봉사단 축제, 지역내 이웃간의 나누기, 돕기가 가능한 문화프로그램, 가족생활문화개선 캠페인, 지역 축제 등 - 가족돌봄지원서비스: 가족봉사단 멘토 멘티, 가정봉사원 파견 등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 중앙 협약기관과의 연계(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 센터, 국민연금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3_02.jsp 2010.10.1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
다. 주요사업	○ 방문교육사업 ○ 통·번역서비스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이중언어교실 운영 등
라. 세부사업내용	○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 단계별(5단계) 한국어교육 실시 ○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 한국생활 전반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우리나라의 법률 및 인권, 결혼과 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생활교육 등 ○ 가족교육 - 가족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 - 가족전체 통합교육, 시부모교육, 배우자교육, 자녀지원 프로그램 ○ 가족개입상담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 취·창업지원 - 결혼이민자 자립을 위한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 취·창업능력 향상 교육, 일자리제공기관과 결혼이민자 연계 활동 ○ 통번역서비스자조모임 ○ 멘토링, 자원봉사단 등 지역사회민간자원 활용프로그램 - 센터내 프로그램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 양성·활동 - 법률지원,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영역별로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4_02.jsp 2010.10.1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언제라도 365일 핫라인을 통해 자국어로 상담과 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며, 이주여성의 전문지도력을 개발하고 이주여성에게 자긍심을 높여주며, 이주여성 고용창출의 모델이 되도록 하고자 함.
다. 주요사업	○ 10개 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 긴급지원 필요시 쉼터 제공 및 의료·법률지원 ○ 체류, 국적취득, 가정문제 등에 대한 법률상담 제공 ○ 전문상담소, 쉼터, 변호사, 병원, 여성단체, 복지단체 등 연계 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국어 초기 상담 서비스 제공 - 365일 전화상담 : 상담전화 1577-1366(오전8시-오후10시) - 야간 채택전화 상담(긴급상황처리) : 오후10시-익일 오전8시 - 10개 국어 상담 :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파갈로그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 위기 개입, 면접상담, 법률상담 시 전화통역 서비스 제공 ○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 법률 정보 안내 ○ 긴급지원서비스 연계활동 - 긴급피난시설 운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 의료, 법률, 검찰, 경찰 서비스 - 수사 및 소송 수행 등과 연계하여 위기 개입 지원 ○ 홍보활동 및 이주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운동 실시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바. 자료출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wm1366.or.kr/ 2010.10.1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이주여성쉼터(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출국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함.
다. 주요사업	○ 가정폭력 등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일시 보호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정 지원 ○ 거주, 기초생활 지원 및 의료, 법률, 출국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예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자국 출국지원 ○ 기타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함.
다. 주요사업	전화권역(시,도)별로 설치·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서비스 연계(의료기관,상담기관,법률구조기관,보호시설 등)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라. 세부사업내용	○ 24시간 Hot-Line 운영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안내·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제로 전담직원 배치 (야간에는 2명 이상 반드시 배치) ○ 긴급보호 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근거리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등으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긴급연락망 구축 및 협조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를 지역실정에 알맞게 설치·유지 - 주요 연계내용 · 서비스 대상자에게 외부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서비스 대상자를 해당 외부서비스기관 의뢰 ·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자원동원 요청 · 외부서비스기관과 프로그램 계획, 홍보 활동, 자원발굴 등을 공동으로 수립·시행 ○ 정보교류 및 자원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DB 구축 ○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 긴급상담·안내의 범위 - 전문상담소(상담원)에 연계가 곤란한 야간·휴일 등 특정 시간대의 1차 긴급상담 후 익일 오전 전문상담소로 연계 조치 -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은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를 적극 활용 - 상담의뢰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적절한 위기개입이나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9,112등의 연계조치 및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 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현장 출동을 통한 긴급피난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마. 기타사항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바. 자료출처	1. 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1_02g.jsp . 2010.10.1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촉받아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운영되어온 경찰병원 여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 18개 병원 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은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다. 주요사업	○ 상담지원사업 ○ 수사지원 ○ 의료지원 ○ 법률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 상담지원사업 - 유형별 전문상담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 유형에 맞는 전문상담사 상담 - 24시간 On-line, Off-line, 전화, 방문 상담 가능 : 위기 당면시 언제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담사가 센터에 상주하여 상담 - NGO와 네트워크 구축되어 적절한 시설 연계 : 부산, 경남 일대 NGO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시설 연계 ○ 의료지원 - 24시간 응급진료 가능 : 응급실 및 상·가정폭력 전담 의료기관 연계하여 24시간 응급진료 - 24시간 증거채취 및 진단서 발급 가능 : 성폭력 사건 발생시 즉시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구입 및 항생제 처방 및 질병검사 실시 / 24시간 진단서 발급가능(단, 정형외과 등 전문의 확인 후 조치) - 신경정신과 치료, 소아정신과 심리치료 : 정신과 진료 및 성폭력 피해 등 관련 아동 심리 치유 프로그램 실시 ○ 수사지원 - 고소장 작성 및 여경에 의한 피해 조사 : 전담여성경찰관이 24시간 근무 / 피해조사와 동시에 일선경찰서와 연계하여 신속한 처리 - 진술녹화실 운영 : 효과적인 피해조사를 위해 센터 내 진술녹화실 운영 / 해부학적인형 비치로 성폭력피해아동·장애여성의 피해진술에 도움 - 원격지 화상대질실 운영 : 원격지 경찰서에 있는 가해자의 얼굴을 센터 방문한 피해자가 화상을 통해 대질·확인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접 대질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 공단사무실을 방문한 면접법률상담 /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번에 의한 전화법률상담 / 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부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bsonestop.or.kr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종합병원 가까운 근처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문치료인력이 배치되어 정신과, 산부인과 등의 의료진이 피해아동의 후유증 치료, 진술이 어려운 피해아동들에게 치료를 통한 진술이 가능하게 하며,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기관임.
다. 주요사업	○ 접수 및 초기상담 ○ 의료지원 ○ 심리평가 ○ 법적지원 ○ 치료프로그램 : 아동/부모프로그램
라. 세부사업내용	○ 접수 및 초기상담 ; 전화, 방문, 온라인으로 신고, 상담 ○ 의료지원 - 응급처치 : 주간 / 야간 - 외상정도에 따른 전문의 치료 : 외상치료 / 검사 / 임신방지 응급처치 / 정액검사 - 정신과 및 소아정신과 전문의 진료 진단 - 입원치료 ○ 심리평가 ○ 법적지원 - 법률상담지원 - 소송안내 및 상담 - 고소과정지원 : 진술녹화협조 및 동석 / 증거 자원지원 / 수사 진행과정 모니터링 - 법률자문연계 ○ 치료프로그램 : 아동/부모프로그램 - 약물치료 - 심리치료 : 놀이/모래/인지/인지행동/상담/집단치료 - 부모교육, 부모상담치료, 사후관리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2009 부산 해바라기 아동센터 홈페이지. http://www.child4u.or.kr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가정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성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유지 및 해체를 방지함.
다. 주요사업	○ 피해자 신고접수 및 상담 ○ 피해자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 인도 ○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 ○ 캠페인 및 홍보활동 ○ 조사·연구
라. 세부사업내용	○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지역사회에 대하여 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CATV, 반사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 시행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 ○ 인력 : 시설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2_02_c.jsp 2010.10.1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1)-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일정기간동안 보호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다. 주요사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 자립자활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 제공 ○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학령 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피해자 아동의 취학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미지원 ○ 퇴소 - 보호목적의 달성 또는 보호기간 만료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 ○ 인력 : 시설장, 상담원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1_02d.jsp 2010.10.1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은 성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을 설립(2010.6)된 기관으로 전국에 설치된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성폭력 피해 여성·아동 지원 전문기관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다. 주요사업	○ 여성·아동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허브(Hub) 기능 ○ 정책연구지원 ○ 교육개발사업 ○ 운영지원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 여성·아동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허브(Hub) 기능 : - 전국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거점관리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정책연구지원 -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연구 : 피해자지원관련 국내외 정책연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사례 관리 및 연구, 여성·아동폭력 대응체계 강화방안 연구, 여성·아동폭력피해 지원기관 및 종사자 전문성향상 방안연구 -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관련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면담 매뉴얼 개발 ○ 교육개발사업 - 종사자 전문성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신규 종사자 입문교육,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센터 업무매뉴얼 개발·보급 -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성·아동폭력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지원사업 - 전국 지역센터 지원 : 전국 지역센터 사업지원 및 통계관리 -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홍보 : 여성·아동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중앙운영위원회 운영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womannchild.or.kr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아동· 청소년을 집중 보호하기 위한 시설임. (전국 최초로 경남1곳(8월24일), 경북1곳(9월1일)에 '아동청소년 전 용쉼터'인 '아동청소년 무지개쉼터'를 개소하였다a를 경남1곳(8월24 일), 경북1곳(9월1일)에 개소됨)
다. 주요사업	○ 친족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 가해자의 친권 박탈 이후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정처럼 학교 에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 외 별도의 특별교실 과 공부방 등 지원 ○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상담과 치료, 진학과 취업 및 문화활동 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 친족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 가해자의 친권 박탈 이후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정처럼 학교 에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 외 별도의 특별교실 과 공부방 등 지원 ○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상담과 치료, 진학과 취업 및 문화활동 지원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 경북인터넷뉴스. '경상북도아동청소년 무지개 쉼터 개소'. http://www.gbin.co.kr. 2010. 9. 1일자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초·중·고등학교의 교사·학부모, 시민단체(청소년단체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등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단체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지정 받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주요사업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고발활동 － 위반 행위 적발 시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 시정 건의 ○ 워크숍 개최, 캠페인 전개, 유해환경 교육 및 홍보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정화 활동 ○ 아동 안전 및 보호 활동 － 학교 및 놀이터 주변 아동 안전사고 및 실종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간행물 발간 자료실, 2010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7_01.jsp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청소년쉼터(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가출청소년쉼터는 1992년 시범사업운영의 일환으로 서울 YMCA 청소년쉼터가 개소한 이래 1996년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음. 2005년부터는 가출 및 위기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보호시설체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 쉼터를 일시쉼터(드롭인센터), 단기쉼터(청소년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여 운영함.
다. 주요사업	○ 안정된 공간에서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심신의 회복과 변화에의 동기화 ○ 전문적 사정과 서비스 판별 ○ 가정복귀와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적 서비스 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와의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보호서비스 확충 ※ 쉼터는 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활, 고충처리 등 청소년 종합선도 터전으로서의 역할 수행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10). 2009 아동·청소년 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3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 청소년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활동하는 NGO와 경찰행정당국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2004년도에는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들의 긴급 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인센터(Drop-in-center)를 개설함. 2005년부터는 서울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도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다. 주요사업	○ 24시간 구조 ○ 상담 ○ 분야별 교육 ○ 대안학교 및 직업알선/교육 ○ 사후관리 멘토링
라. 세부사업내용	○ 대외협력 - CYS-NET 구축 및 운영 - 실행위원회 구축 및 운영 - 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 운영 ○ 위기지원 - 1388 청소년전화 - 위기청소년 구조사업 - 일시보호사업 -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 - 아웃리치(거리상담) ○ 자활상담 - 진로 및 자립교육 프로그램 - 위기청소년관련 세미나 - 연구조사보고서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폭력예방/자살예방/학교부적응 청소년지원/학습향상/학교밖 청소년해밀/솔리언트대상담/품성개발 프로그램 - 청소년지도자 양성교육 - 부모교육 - 사례회의 - 인터넷중독예방·해소사업 - 교육적 선도(예방적·회복적)보호지원 사업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찾아가는 상담학교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10). 2009 아동·청소년 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bs1388.or.kr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멀티미디어 세대인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참여형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함.
다. 주요사업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성문화교육관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 각급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 출장 성교육 실시 ○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 - 성교육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 구축 -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성교육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 청소년 성교육프로그램 : 섹슈얼리티 체험관 성교육, 주제별 성교육, 초등학교학년 성교육, 유아 및 초등저학년 성교육 인형극 ○ 상담활동 : 전화, 면접, 사이버 등 개인상담, 성문제 대상별 상담(성폭력, 성매매 등), 집단상담 치 성적의사결정훈련, 찾아가는 상담, 응급지원상담 ○ 성인교육 프로그램 : 성교육지도자워크숍, 섹슈얼리티포럼, 성상담전문가워크숍, 사이버성상담워크숍, 성상담활동가훈련, 청소년부모성교실 ○ 문화캠페인 : 청소년 성교육 캠프, 청소년 성문화 축제, 청소년 춤명상 캠프, 청소년 성이야기 작품공모전, 청소년 성바로알기캠페인 ○ 자원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 성교육 자원활동가 워크숍, 성상담 사례연구회, 성상담 자원봉사자 워크숍 ○ 정보활동 : 홈페이지 운영, 자료실 운영, 10대 성문화 실태 조사 ○ 찾아가는 성교육 활동 :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대안학교 등, 일반 등 ○ 클럽활동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www.ahacenter.kr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국가의 정책 사업과제로 여성가족부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및 생활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 현재 171개소 청소년시설에서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음.
다. 주요사업	○ 초등학교 - 숙제 · 자기주도 학습, 보충심화학습 - 주말 체험학습 ○ 중학교 - 숙제 · 자기주도 학습, 보충심화학습 - 주말 체험학습 ○ 생활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 기본 공통과정 - 기본적인 학습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과 수업을 청소년 개인의 수준에 맞추어 진행되는 기본 학습 및 숙제지도, 자기주도 학습 등을 실시 ○ 전문선택과정 - 청소년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과정 - 문화예술 : 오카리나, 풍물 등 - 스포츠 : 태권도, 수영 등 - 과학·탐구 : 컴퓨터 등 - 세계·시민 : 전통예절 등 ○ 체험학습 과정 : - 토요일을 이용하여 문화유적지, 박물관, 민속마을 등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토요체험학습과 시설 내에서 간단하게 진행되는 학습을 과정 - 세계문화체험, 농장체험, 경기관람, 박물관 견학, 요리 프로그램 등 ○ 생활지원과정 - 상담, 심리·성적·성격 테스트, 건강관리, 급식 등을 지원하며, 청소년과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 하교시간부터 집에 돌아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 지원 - 급식지원, 건강검진, 생일파티, 심리검사, 학부모 간담회, 지원협의회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youthacademy.or.kr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청소년공부방(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청소년공부방은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게 학습 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을 중심으로, 특기적성교육, 문화, 체험활동 기회를 지원함.
다. 주요사업	○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공간 제공 - 전국적으로 생활주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무료 및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 무료 도서대출 및 열람을 통한 면학 분위기 조성 - 인터넷, EBS 시청 등 학습정보 제공 ○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지원 -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지역사회기관, 구성원, 자원봉사자를 통한 보충학습지도, 피아노 등 특기교육, 박물관견학, 연합체육회, 캠프활동 등을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열등감과 소외감 극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 책임성,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역할 지원 ○ 청소년지원 및 지역연계 활동 - 지역연계기관에서 청소년공부방이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공동체 참여 공간의 역할 수행 - 다양한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등 상담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정체성 형성 지원 - 경제적인 문제, 가정문제 등 취약한 조건에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 및 지역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담연계활동과 보호활동을 전개
라. 세부사업내용	청소년공부방 운영 프로그램 ○ 학습공간제공 : 열람실, 도서정보실(도서대출, 인터넷, EBS 시청가능), 상담실(사무실겸용가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학습을 위해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학습지도활동 : 개인별 지도, 그룹 지도, 개별 교과과목(국,영,수 등) 지도를 통해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강화를 위해 학습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 ○ 특기적성교육 : 논술, 한문, 독서지도, 음악, 미술, 컴퓨터, 악기(기타, 피아노 등) 청소년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문화·체험활동 : 견학 등 현장체험활동, 공연관람 등 문화활동,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자원, 봉사활동, 취미 및 수련활동 등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문화, 체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지역연계활동 : 가족지원(부모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지역자원개발, 진로체험 등 지역연계를 통한 활동을 할 수 있음. ○ 기타 활동 : 기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간행물 발간 자료실, 2010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7_01.jsp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청소년문화존(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청소년문화존은 주 5일 수업제의 확대 실시에 따라 늘어나는 방과 후 시간대에 청소년들에게 전국의 광역 생활권 주변에서 쉽고 다양하게 문화향수, 문화감성, 문화창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함.
다. 주요사업	- 청소년 및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문화활동을 알릴 수 있는 문화마당의 장 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 공연마당 : 청소년들이 준비한 합창, 중창, 기악연주, 보컬, 힙합댄스, 응원댄스, 마술, 수화, 풍물놀이, 길놀이, 판소리, 사물놀이, 택견, 난타 등의 공연 프로그램 - 체험마당 : 청소년들이 준비한 과학, 미술, 애니메이션, 페이스페인팅, 코스프레 등의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 놀이마당 :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마. 기타사항	o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간행물 발간 자료실, 2010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7_01.jsp 전라남도 대표 청소년문화존 홈페이지. http://zone.jnyouth.or.kr.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한국청소년진흥센터(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다. 주요사업	○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및 시범운영 ○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청소년 관련 제 기관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지원·지도·평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유지·관리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교육 및 교류 진흥 ○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참여·권리증진활동의 활성화 지원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청소년성취포상제도의 운영 및 지원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 청소년종합정보 'e-청소년'은 청소년 활동·문화복지·보호·참여·생활 등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소식·프로그램의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종합적으 로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서비스 - 청소년관련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 청소년관련 제 기관의 연계 및 협력 - 청소년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청소년자원봉사 - 청소년봉사활동 관리 시스템(www.dovol.net) 개발·운영 -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orea Youth Volunteer Program) 파견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활동을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활동 기록관리가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 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1956년 영국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전 세계 131개국, 600만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14-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지역 및 세계 사회에 이바지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 청소년국제교류 : 국제캠프, 지도자 국제연수, 외국방문단 지원 ○ 청소년지도자 양성제도 :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청소 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 부여 ○ 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해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 성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매년 개최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www.kysc.or.kr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시행:2008. 12. 6)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로 가사,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별도로 신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기존의 여성 관련 시설을 새일센터로 지정하여 2009년 현재 전국에 총 7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다. 주요사업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취업,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취업 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라. 세부사업내용	○ 직업상담 - 직업상담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취업정보 제공 및 구인·구직 정보 관리 - 취업정보 제공 - 취업정보 제공 - 구인-구직 정보 관리 ○ 직업교육 훈련 ○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새일여성인턴) 전업주부 등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훈련 프로그램으로 새일여성 인턴제를 운영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노동부(2010). '10년도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기존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의 명칭을 변경, 기능을 확대 개편한 One-Stop 여성 취업지원센터로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주변에 설치·운영중임.
다. 주요사업	○ 효과적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문화강좌 중심의 여성회관을 취업지원 기능으로 전환 유도
라. 세부사업내용	가. 여성가족부 ○ 「광역 새일지원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광역 새일지원본부」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총괄 ○ 사업비(국비) 확보 및 교부 ○ 사업 지도·감독 및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시·도) ○ 세부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 사업 추진 계획 승인(변경포함) 및 여성가족부 보고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비 재배정 및 정산 ○ 사업비(지방비) 확보 및 교부 ○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총괄·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현장민원 적극 대응 및 처리현황 보고 ○ 현장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 사업 추진 상황 및 실적 보고 ○ 「광역 새일지원본부」본부장 임면 ○ 「광역 새일지원본부」종사자 현황관리 다. 광역 새일지원본부 ○ 새일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새일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새일센터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등 지정기관 업무지원 등 ○ 새일센터 미 지정 지역 구직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문화강좌중심 여성회관을 취업지원기관으로 기능 전환 유도 ○ 종사자 임면, 현황관리 및 시·도 보고 ○ 조직·인사·급여·회계 기타 운영 관리 규정 제정 ※ 기존 규정에 새일센터 운영사항(조직 기구, 취업설계사 등 인사복무규정, 관리 등)을 포함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새일센터 업무지원, 새일센터 미 지정 지역 취업지원, 여성회관 기능 전환 유도 등 -구직자 경력관리 및 구인업체 발굴 -홍보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 추진 상황, 추진 실적 등 보고 ○ 사업비 결과 및 정산 보고
마. 기타사항	○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군), 광역자치단체
바. 자료출처	여성부(2009). 여성부 2009 업무보고. 서울: 여성부. 여성가족부·노동부(2010). '10년도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여성회관(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으로써 사회적 지위향상과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다. 주요사업	○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 ○ 취미교실 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주로 여성들에 대한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바자회, 합창단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점 사업 :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과 취미교실 운영 -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간병사, 조리사, 컴퓨터 등)은 여성들로 하여금 잠재 능력을 개발하게 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 한편, 종이접기, 에어로빅, 노래교실, 북춤, 한글학당, 제빵제과, 고전무용 등의 취미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디지털진도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jindo.grandculture.net/gc/contents/contents.jsp?tid=50000981.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여성가족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해결 및 가정·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요한 장애여성 역량강화,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다. 주요사업	○ 여성장애인 맞춤형 상담을 통한 고충해결 ○ 역량강화교육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 사후관리 및 종합서비스 ONE-STOP 제공
라. 세부사업내용	○ 초기상담(사정)-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고충상담 지원 ○ 계획 수립(프로그램 설계)- 고충·욕구 해결을 위한 개인별 서비스 : 정보제공,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 ○ 정보제공- 법률,의료,주거,직업재활,교육,취업,복지서비스 등 정보제공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연중 개설·운영 : 여성장애인의 정서안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여가활동, 기초 경제적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지원 ○ 지역사회기관 연계 서비스- 협약 등을 통해 연계 서비스 제공 : 건강·의료,법률,직업훈련,직업재활,취업알선,복지서비스 지원 등 ○ 사후관리- 개인프로그램 설계 서비스 제공 후 문제해결 등 지원 ○ 자조모임 지원- 멘토링 및 자조모임 지원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 ○ 인력 : 시설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바.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4_02_02.jsp 2010.10.1 검색

2. 보건복지부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예방센터)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및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함.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다. 주요사업	○ 피학대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 아동학대 치료·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라. 세부사업내용	○ 상담·치료 사업 전화, 내방, 서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의료서비스(소아과, 소아정신과 등 내원, 알코올문제 상담 등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법률서비스(학대자에 대한 처벌 및 가족문제 등 각종 법률자문 제공) 등의 응급조치, 개인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미술·놀이치료 등 아동을 위한 치료상담, 격리보호서비스 제공 ○ 예방·교육 사업 아동·교사·부모·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강좌, 사이버 자녀 양육 교육 및 상담·문의, 사례발표회, 정기학술세미나 개최 ○ 아동보호체계 구축 아동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의료계·행정계·교육계·사법경찰계·타민간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아동학대예방 네트워크 체계 구축 ○ 홍보·출판 사업 캠페인 전개 및 아동학대 사진·그림 전시회 개최, 교육자료집·사례집 발간, 홍보물제작·배포, 자료실 운영 ○ 후원 사업 피학대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의료·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기타 아동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childabuse.or.kr , 2010. 9. 30. 검색	홈페이지.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아동상담소(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다. 주요사업	○ 문제행동아동 즉, 복합비행, 가출, 부랑, 도벽, 허언, 약물남용,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만18세 이하 7세 미만 아동의 일시 보호 및 상담 ○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의 일시보호 및 상담 ○ 문제행동아동부모, 학대부모 및 보호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자녀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일반부모에 대한 상담
라. 세부사업내용	가. 문제행동 및 학대아동 상담 ○ 대상별 상담치료 :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 주요 상담치료기법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행동수정, 미술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과제중심모델 부모교육(STEP) 등 적용 나. 아동보호치료 ○ 반별학습 : 일반학습,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 특수아교육 ○ 직업훈련: 상담소 내 제빵교육 실시, 직업학교 연계하여 기술훈련 실시 다. 아동일시보호 ○ 일시보호소 운영 ○ 장·단기 그룹홈 라. 아동학대예방센터 ○ 신고사례접수 ○ 현장조사 ○ 사례판별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 홈페이지. http://bhang.linuxtest.net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아동상담소(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다. 주요사업	○ 문제행동아동 즉, 복합비행, 가출, 부랑, 도벽, 허언, 약물남용,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만18세 이하 7세 미만 아동의 일시 보호 및 상담 ○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의 일시보호 및 상담 ○ 문제행동아동부모, 학대부모 및 보호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자녀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일반부모에 대한 상담
라. 세부사업내용	가. 문제행동 및 학대아동 상담 ○ 대상별 상담치료 :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 주요 상담치료기법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행동수정, 미술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과제중심모델 부모교육(STEP) 등 적용 나. 아동보호치료 ○ 반별학습 : 일반학습,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 특수아교육 ○ 직업훈련: 상담소 내 재향교육 실시, 직업학교 연계하여 기술훈련 실시 다. 아동일시보호 ○ 일시보호소 운영 ○ 장·단기 그룹홈 라. 아동학대예방센터 ○ 신고사례접수 ○ 현장조사 ○ 사례판별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 홈페이지. http://bhang.linuxtest.net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종합사회복지관(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다. 주요사업	○ 가족복지사업 ○ 지역복지사업 ○ 지역사회조직사업 ○ 교육문화사업 ○ 자활사업
라. 세부사업내용	가.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 나. 지역복지사업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 서비스 다. 지역사회조직사업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 라. 교육문화사업 아동·청소년기능교육, 성인기능교육, 어르신 여가문화사업, 문화복지사업 마. 자활사업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kaswc.or.kr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다. 주요사업	가. 지역아동센터 정규운영 프로그램 ○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내 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식제공 등(아동급식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전원급식을 실시함) ○ 학습지원프로그램 : 학교생활준비지원, 학년별학습지도하기, 학습부진아 지도, 학습지원 성과 평가하기,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 ○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 지원, 특기적성프로그램지원, 등 ○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 지역내 인적자원확보 및 관리, 물적자원확보 및 관리, 관련기관연계프로그램, 홍보 등 나. 특별프로그램 ○ 주말·공휴일·일요일 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사랑방 프로그램, 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1318세대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주 5일 수업, 가정사정 등으로 주말 등 공휴일과 야간에 아동보호·학습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실정 및 센터 여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라. 세부사업내용	가. 대상 계층 :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나. 운영기관 : 법인, 민간단체 및 개인 등 —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 3,585개소('10. 6. 30. 기준) 다. 지원현황 ○ 지원금액 : 320만원/개소, 월(급식비 지원은 별도) ○ 지원대상 선정 : 각 시·군·구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별 ○ 선정기준표에 의해 심사·선정 ○ 종사자 기준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 종사자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적용 라. 운영 기간 및 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지역여건 및 실정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 및 토·일요일 운영 가능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지역아동센터. http://www.mw.go.kr/front/jc/sjc0111mn.jsp?PAR_MENU_ID=06&MENU_ID=06180304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정신보건센터(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Day care), 교육·훈련, 타 기관 연계 등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
다. 주요사업	○ 사업기획 ○ 중증정신질환관리 ○ 정신건강 증진사업 ○ 정신보건 환경조성
라. 세부사업내용	가. 사업기획 ○ 지역사회 진단 ○ 기획 및 자원 조정 나. 중증정신질환관리 ○ 신규 발견체계 구축 ○ 사례관리서비스 ○ 위기관리서비스 ○ 주간재활프로그램 ○ 직업재활 프로그램 ○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 홍보 및 교육사업 ○ 1577-0199 상담전화 ○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사업·아동청소년·성인 우울증, 스트레스·노인 우울증 및 치매·알코올 중독 라. 정신보건 환경조성 ○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운영체계 구축 ○ 지역 언론 협력체계 구축 ○ 경찰 및 구조구급 네트워크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정신보건. http://www.mw.go.kr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알코올중독상담센터(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알코올중독자, 예비중독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알코올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 교육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알코올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사업	○ 알코올중독에 대한 정보제공, 예방교육 및 홍보 ○ 문제음주자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유도 ○ 지역사회에서의 여성 및 청소년 음주 문제, 산업장에서의 교용인의 음주문제, 음주운전등의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역기능, 가정의 자녀 및 배우자들의 숨겨진 고민을 상담해 주어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의 정신적 회복을 돕는 일
라. 세부사업내용	가. 교육홍보사업 음주문제예방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나. 치료재활사업 상담실 운영, 문제성 음주자의 발견 등록 및 관리 다. 행정지원사업 유관기관과 협력, 타 병원과의 협력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알코올중독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www.alcohol114.com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공동생활가정-그룹홈(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아동그룹홈은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의 중간 형태로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요보호 아동들을 보호·양육하는 대체가정(소규모시설)이라 할 수 있음. 즉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처럼 6~7명의 아이들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보호자를 이모 또는 고모라 부르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가정단위 양육형태를 말함.
다. 주요사업	가. 위기가동 보호 및 양육 위기가동을 보호·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나. 의료서비스 지원 정기적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각 분야의 의료진을 주치의로 지정하여 상시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 다. 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 개개인에 맞춘 학습지도를 일상적으로 진행하며 아동의 재능과 잠재력 개발을 위해 개인별 특기적성교육을 지원 라. 정서지원 활동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풍부한 정서 함양에 힘쓰고, 가족여행과 나들이 등 가족활동을 통해 가족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강화 마. 아동 및 부모상담 일상에서 아동상담을 실시하여 아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부모와의 상담으로 아동의 성장과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 바. 지역사회 자원연결 자문활동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아동의 인권과 권익 향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 지속성과 전문성을 가진 자원활동가와 후원자를 확보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사. 가정복귀 및 자립지원 아동과 친부모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여 가족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자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친부모가 자립하여 가정을 복원할 수 있도록 지지
라. 세부사업내용	가.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에서 대리보호자 (2인시설장, 보육사)가 5명~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대리보호자 서비스 제공 ○ 공동생활가정 운영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나. 지원대상 보호아동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의 의뢰 또는 보호필요아동 발견시 보호자 및 아동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공동생활가정 한울타리 홈페이지. http://www.hanultari.or.kr . 2010. 9. 30. 검색 그룹홈 해맑은아이들의집 홈페이지. http://www.sunnychild.org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디딤씨앗 통장(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 목적: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지원('07.4월 도입)자립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명칭 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디딤씨앗통장'을 대국민 브랜드로 2009년부터 사용함
다. 주요사업	○ 전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후원사업을 통한 자립자금 마련 ○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을 지원 ○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디딤씨앗통장 관리 ○ 보호아동의 사례관리(모니터링)를 통한 디딤씨앗통장 효과성 증대
라. 세부사업내용	○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함 ※ 아동형편에 따라 최대 월 50만원 내에서 자율 저축 가능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시 계속 지원 ○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 ○ 경제교육 사업 내용 : 1)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 지원 - 경제교육 매뉴얼 보급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 - 전국 권역별 경제교육 실시 2)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디딤씨앗통장 사업관리 3) 요보호아동의 사례관리(모니터링)를 통한 디딤씨앗통장 사업 효과성 증대 -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사례현황관리 -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저축 독려 - 유관단체들과의 연계 체계 구축
마. 기타사항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아동복지협회(디딤씨앗통장사업부)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마당 http://www.mw.go.kr/front/jc/sjc0101mn.jsp?PAR_MENU_ID=06&MENU_ID=060101, 디딤씨앗통장 공식홈페이지 사업내용 http://www.adongcda.or.kr/sub01/sub0102.html,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기존 시·군·구별 서울행정시스템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 31개 시군구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 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임
다. 주요사업	○ 개인별·가구별 DB 구축 ○ 소득·재산조사의 표준화 ○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조직개편 ○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라. 세부사업내용	가. 개인별·가구별 DB 구축 ○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 - 중복 지원 차단, 누락서비스 안내 등 복지지원의 형평성 제고 나. 소득·재산조사의 표준화 ○ 사업별로 다른 소득·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토록 개선 - 서비스 신청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안내 - 사업별 유사중복 서식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 및 민원 편의 증대 다.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 ○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 →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 라.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조직개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선 복지행정조직 개편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복지대상자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일원화 - 읍면동 및 서비스연계팀 ⇒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강화 마.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 외부 접근의 물리적 차단 ○ 내부 정보 유출 차단 ○ 법·제도적 보호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2010. 1. 4일자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종합센터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치료·보호 및 가정 복귀까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실, 놀이실 등은 물론 보호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으며 아동보호를 위한 전체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다. 주요사업	○ 아동학대상담 및 신고 ○ 치료사업 ○ 아동권리사업 ○ 아동학대협의체 운영
라. 세부사업내용	가. 아동학대상담 및 신고 피해아동, 학대행동, 신고자에 대한 사항 신고 나. 치료사업 놀이치료/미술/모래놀이/언어치료, 종합심리평가, 개인·부모상담, 집단상담 등 다. 아동권리사업 ○ 아동권리교육 : 미취학 및 초등학생 대상, 학부모 및 성인대상 ○ 아동권리 캠프 ○ 아동권리캠페인 ○ 아동 및 종사자 권리교육 라. 아동학대협의체 운영 ○ 학대받는 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전문적·종합적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성 ○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유관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홈페이지. http://adong.busan.go.kr. 2010. 9. 30. 검색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홈페이지. http://www.icwc.sc.or.kr.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학대 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다. 주요사업	○ 신고접수 ○ 현장조사 및 사정 ○ 조치결정 ○ 사례판정 ○ 서비스제공 ○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라. 세부사업내용	가. 신고접수 - 신고접수 된 사례의 응급성 정도, 현재 피해아동의 안전 및 학대의 지속성 여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처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함 - 아동학대의심사례인지 일반상담인지를 구분하여 현장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함(아동학대의심사례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나. 현장조사 및 사정 - 피해아동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 학대여부 확인 및 학대 위험 정도 파악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기초자료 및 정보조사 다. 조치결정 - 현장조사 및 아동학대 위험사정척도 등을 통한 사례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라. 사례판정 - 해당사례를 아동복지법령 정의 및 규정에 의하여 심각성의 정도, 응급성 여부, 적절한 조치 및 사례개입방법, 서비스 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한 -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세 가지로 구분 마. 서비스제공 -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및 그 가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 학대유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족 전체를 위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침 제공 - 피해아동의 위기가 제거되었거나 감소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도구 제공 바.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네이버 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2010. 9. 30. 검색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홈페이지. http://adong.busan.go.kr.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콜센터(129) (보건복지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보건복지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 2 9번으로 전화하면 필요한 보건복지가족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 보건복지와 관련된 모든 상담 및 지원요청을 One-Stop으로 통합 처리함
다. 주요사업	보건복지가족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라. 세부사업내용	가. 민생안정지원 일자리지원, 자영업자생업지원, 실직자지원, 저소득층생계지원, 교 육·보육지원, 주거지원 등 나.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국민연금, 자활사업, 가족정책, 의사상자, 부랑인 등 다.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법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서비스(바우처), 장 애인복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보육정책, 푸드뱅크, 위기임신 등 라. 건강생활 노인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사, 암환자 지원, 희귀난치성질 환자지원, 한방정책, 혈액정책, 생명윤리, 공공보건, 구강보건, 의 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보건의료인 시험, 의료분쟁, 금연, 영양, 예방접종, 건강보험제도 등 마. 긴급지원 긴급복지 지원(야간/휴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청소년상담, 자살, 알콜, 응급의료, 위기임신 등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 http://www.129.go.kr . 2010. 9. 3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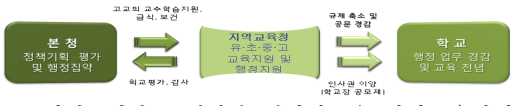
3. 교육과학기술부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Wee 센터 (교육과학기술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진단, 상담, 치료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기관으로 원불교서울교구 등근마음상담연구소에서 위탁운영. 센터 이용대상은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이며 비용은 무료.
다. 주요사업	○ 센터 특화프로그램 'Wee-Art & Sun School': 학습 성장치료, MBCT를 통한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MBCT를 통한 불안 관리 프로그램, 진정한 자기발견을 위한 모래놀이 치료집단, 마음공부 집단상담 ○ 상담 프로그램: 개인상담, 집단상담(문제 유형별 10명 내외 집단 구성으로 회기별 진행), 가족상담, 아동 및 위기지원 상담(방문상담) ○ 심리검사: 성격검사, 인성 및 신경심리검사, 진로검사, 학습검사, 지능검사를 학교방문 집단검사로 실시하거나 개인검사 ○ 교육 프로그램 - 부모교육: 관내 학부모 대상으로 연중 16회 실시 - 진로상담, 생활부장 간담회: 관내 중·고등학교 진로상담부 및 학생지도부 교사대상으로 연 2회 실시 - 멘토교육: 청소년 멘토인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들 대상으로 분기별 실시 ○ 적응교육 프로그램: 연중 수시로 센터 내에서 진행 - 일반 부적응 학생 '희망찾기'(5일) - 복학생 적응교육 Restart 5Days - 특별교육: 어려움의 원인 발견, 자아상 회복, 적응적 대처기술 습득을 돕기 위해 I(3일), II(5일), III(10일), IV(12일)의 4가지 프로그램 운영 ○ 심리치료: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Wee 센터 http://www.dongjakwee.net/ (2010. 10. 5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 목표: 교육취약아동·청소년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 등의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성취를 제고 ○ 비전: 능동적 시민 양성을 통한 사회 통합 ○ 전략: 단계적 추진(일부지역 시범사업에서 전국으로 확대. 초기 정부지원으로 지역 교육복지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향상된 지역자체 역량으로 운영. 향후 관련 법 제정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도모).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학교의 역할 확대와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
다. 주요사업	○ 학교별 기초생활수급자녀수와 한부모 가정 자녀수가 평균 70명 이상 또는 재적학생수의 평균비율 10%
라. 세부사업내용	○ 학습능력 증진: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학습결손 누적 방지를 위한 학습 동기 유발에 역량 집중.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및 기관연계 활용 ○ 문화·체험활동 지원: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인성 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동시 노력, 지역의 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전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 지자체와의 연계 통한 아동·청소년 활용 기반 시설 확충 요구 ○ 심리·정서 발달 지원: 성장과정 중 발생한 심리적 문제로 학교 및 일상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치유와 재원 제공, 지역의 전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개념, 건강한 사회성 형성을 위한 적절한 지원 ○ 교사와 학부모 지원: 관련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부모의 학교 및 자녀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연수 활동 지원 ○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부모와 학교의 보호 없이 학교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의 지원체제 구축 ○ 영·유아 교육·보육 활성화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영·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 내 교육·보육 관련 기관간의 협의체제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기관 간 상호협력 활성화(교육여건 개선,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교사연수 및 프로그램 장학 지원 등을 위한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강화)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09). 2009년 아동·청소년백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http://eduzone.kedi.re.kr/ , (2010. 10. 5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방과후학교 운영(교육과학기술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 학교교육기능 보완: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강좌운영을 통해 잠재력 계발 및 인성·창의성 신장) ○ 사교육비 경감: 질 높고 다양한 강좌운영으로 사교육 흡수 ○ 교육복지 실현: 계층·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 ○ 학교의 지역사회화: 지역사회 교육수요 반영하여 학교를 통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및 지자체·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다. 주요사업	○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읍·면이 있는 시·군에 예산 총액 지원. 각 지역은 여건에 맞게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차량운영비, 시설 및 기자재비 등으로 예산 집행.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무료 수강하는 바우처의 일종으로 프로그램 수강료 지불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및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 학생 등 포함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지원. 연간 30만원 내외로 자유수강권 활용 가능. ○ 초등보육교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에 안전하게 보호·지도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도록 돕기 위한 보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해 운영되며,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자녀, 맞벌이 부부 자녀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설비로 리모델링한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실시. 다양한 인력이 과제지도, 놀이지도, 상담, 소질계발, 인성지도 등을 실시하며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 대학생 멘토링: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개별화 학습 및 인성지도를 통한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소외계층 초·중·고학생(Mentee)들을 대학생(Mentor)과 연계하여 기초학습 및 교과지도, 특기·적성지도, 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동비는 멘토링 횟수,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 실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교·사대 등 대학과 연계·협력하여 봉사학점 등으로 인정. 시·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일반 멘토링 및 귀향 멘토링을 실시. 귀향 멘토링은 고향을 떠난 대학생이 방학 중 고향을 방문하여 후배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생 멘토 모집이 쉽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실시(2010년 6월 기준 멘토링 운영 학교 수 2,803개, 멘토 13,231명, 멘티 58,366명, 시간당 활동비 13,929원)
라. 세부사업내용	○ 인력: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가정학·여성학 관련 전공자,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자 등
마. 기타사항	보건복지부(2009). 2009년 아동청소년백서.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2010. 10. 4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방과후학교지원센터(교육과학기술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 목적: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의 유기적 연계 협력,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으로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과 지방교육의 경쟁력 확보 계기 마련,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질 관리 역할 제고(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지원, 우수 프로그램 발굴·지원, 예산의 안정적 지원,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등)
다. 주요사업	○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교육복지예산 통합 및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 복지 계획을 수립·추진: 보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지자체(예산지원)와 교육청(시설제공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한 맞춤형 운영 필요 ○ 지자체 관리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장(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학교와 직접 연계하여 운영 ○ 단위학교지원을 위한 우수강사 구축,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및 대학생 멘토, 지역사회 전문가 등 방과후학교 강사 연수 실시 ○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단위학교가 필요로 하는 연수내용을 개설·운영함으로써 강사의 질 관리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확산, 우수 콘텐츠 보급, 학교간 방과후학교 운영 정보 공유 등
라. 세부사업내용	○ 지자체·지역교육청·유관기관과의 다원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어 학생·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만족도 상승, 교육·복지 예산절감, 일자리 창출, 운영의 지속성, 효율성 제고 등 기대됨.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2010. 10. 4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지역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 기능: 교육자치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감독 위주의 업무수행 (단위학교에 대한 현장의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와 교육수요자의 학교교육 참여 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능 미비) ○ 조직: 획일적·경직적 조직 구조 운영(인구 및 학생 수에 따라 2과(134개), 4과(3개), 2국 6과(43개)의 세 유형으로 조직되었고, 획일적인 '학무'와 '관리'의 계층적 조직체제로 운영) ○ 이에 중전의 관리 중심의 지역교육청 기능을 학생·학부모·학교현장지원 위주로 새롭게 정립하여 '교육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선진화 함
다. 주요사업	1. 지역교육청 체제 정비 ○ 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 및 '교육장 공모제' 도입 2. 조직개편 모형(안) ○ 모형1 : 기본모형(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지역청의 학교평가, 감사, 시설기획, 학생수용계획 등 행정·관리업무 최대한 본청 이관 - 지역청은 각급학교 「현장지원」 위주로 재편, 집약적 서비스 제공 ○ 모형2 : 서울·경기도(일부) 모형  - 감사, 평가를 제외한 행정기능을 지역교육청에 존치. 고교 지원기능 지역교육청에 이관하여 「현장지원+행정기능」 ○ 모형3 : 권역별 기능거점형(제주를 제외한 도)  - 영세규모의 인접 지역교육청 3~4개 권역화, 지역청을 핵심기능별 거점으로 운영하여 단위학교 지원 효율화 ○ 모형4 : 특수모형(제주, 전남 신안, 통합창원시 등) - 인구 규모, 학교 분포, 지리적 여건 등으로 특수한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기능 및 조직 개편
라. 세부사업내용	
마. 기타사항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오는 9.1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달라진다.'. 2010. 6. 22일자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교육과학기술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o 목적: 전 국민의 생애진로개발 지원
다. 주요사업	1. 커리어넷 운영 및 유지보수 - o 지속적인 콘텐츠의 질 제고, 서비스 기능 강화, 홍보 다각화 노력으로 누적회원수 371만명 달성(1일 평균 방문 12만건, 전체 가입 회원 중 초·중·고등학생이 64.1%이며 방문경로는 학교소개) - o 국가 진로교육 목표 및 실천으로 학교 진로교육이 강조되면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커리어넷의 창구 역할이 증가 - o 초등학생용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아로주니어 플러스', 전통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한계를 넘어 창의적인 커리어패스를 개척한 인물을 인터뷰하는 '도전하는 한국인', 산업 분야별 직업세계를 소개하는 '생명공학산업 직업의 세계' 추가 2. 진로교육전문가 연수 및 연계 - o 진로교육 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와 전문가 역량강화 목적 - o 2009년 초·중·등 진로교육 종합계획 수립 방향 및 계획(안), 특별연수 추진방향 논의를 위해 교과부, 시도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이 참여하는 진로교육협의회 2회 운영 - o 학술대회 및 센터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전국대회 및 진로교육 유공자 표창 지원 3. 직업흥미검사개발 - o 커리어넷 중·고생용 직업흥미검사 개정연구, 간편한 직업흥미검시 개발 위해 중·고생 각각 직업흥미검사(Long형, Short형)과 표준 제작 4. 전문계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 o 진로의사결정 능력 및 진로개발역량을 자기주도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개별 전문계 고교에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방안 모색 5. 사이버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 o 지금까지 지속된 사이버 진로상담 서비스 운영 및 커리어넷 사이버 진로상담 DB에 구축된 자료 토대 기초연구(10년 진로상담 동향 분석)로 구분됨 - o 지역 사이버 진로상담 전문가 양성 및 지원(워크숍 3회, 간담회 등) - o '사이버 진로상담 장기내담자의 유형 및 상담접근방식 탐색' 연구 - o '커리어넷 사이버 진로상담 내담자의 상담 만족 및 반응 분석' 6. 진로교육지표 조사 - o 2007년 조사 참여 초·중·고 각 1,000명을 표본으로 하는 중단연구
라. 세부사업내용	o 진로교육 수요자들의 현장 직업인과의 만남 욕구에 따른 멘토링 프로그램,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커리어넷 시스템 안정적 운용, 입학사정관제 활성화와 관련한 커리어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 진로교육협의회의 활발한 활동 교류 지원, 사이버 진로상담 슈퍼비전 확대 등의 방안 강구
마. 기타사항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 진로정보센터 운영(2009)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krivet.re.kr/ (2010. 10. 4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교육과학기술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 역할과 기능: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기관·대안교육기관, 정부기관, 초중고교·대학교, 탈북청소년 학부모, 학계 연구자·전문가가 연계. 더 잘할 수 있도록 촉진,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도록 연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향 제시.
다. 주요사업	1. 학교교육지원 ○ 입국초기 적응교육지원: 교육과정 및 보충교재 개발, 담당 교사 연수사업 수행 ○ 기본 교육과정 및 교과별 보충 교재 개발: 초중등학교,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민간교육시설에서 활용 ○ 콜센터 운영과 학생, 교사, 지도교사 대상 상담활동(학교중도탈락 예방과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파악 지원에 중점) ○ 교과별 맞춤형 교재 개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2. 역량강화 ○ 일반인 인식 개선 및 홍보: 탈북주민 관련 교육자료 개발 보급 ○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지도 매뉴얼 개발, 교원, 관리자, 장학 요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 시행 ○ 탈북 성인: 사회적응력을 위한 문해교육, 직업과 교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 북한 출신 교육분야 종사자 재교육(NK 아카데미)으로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인력화 ○ 탈북청소년: NK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대학진학 설명회, 예비대학 프로그램 개발 시행으로 잠재 역량 강화하여 우수인재 육성 ○ 학부모: 탈북청소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지원 활동 강화위한 매뉴얼 개발, 학부모 교육 실시 3. 연계협력 ○ 탈북청소년 교육 협력체제 강화: 중앙정부 부처, 시도 교육청, 초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 민간교육시설, 지역사회 내 기타 교육기관 및 복지기관 등 협력 체제 구축 ○ 탈북청소년 교육포털사이트 운영: 교육 정보제공, 학교생활 이해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탈북청소년 지도 참고자료와 우수사례 보급 ○ 지역교육지원센터 운영: 교육기관, 가정, 민간단체 간 협력 도모와 교육적 자원 연계 활용 ○ 민간교육시설 컨설팅 및 평가: 정부지원에 따른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효과 4. 조사연구 ○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탈북청소년 교육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원 대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탈북 청소년 교육 중단연구: 적응실태 추적 연구로 교육 지원 대책 및 통일 대비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맞춤형 진단도구 개발: 기초학력, 학교 및 사회적응, 진로적성에 관한 진단도구 개발로 탈북청소년 이해와 지도방안 강구에 활용
라. 세부사업내용	—
마. 기타사항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s://www.hub4u.or.kr/

4. 행정안전부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주민서비스) (행정안전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위해 외부의 공공·민간기관 전산망을 연결하여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지역서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자격조회·신청에서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주민서비스 대국민 포털(oklife.go.kr)
다. 주요사업	○ 주민서비스의 종합적인 안내 ○ 주민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 ○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아보는 기능 ○ 주민이 대국민 포털로 신청한 내역이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조회 ○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민간시설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등록하고 이력을 관리
라. 세부사업내용	가. 서비스안내 및 신청 복지, 보건, 교육 등 8대 분야 관련 276종, 232개 시군구의 지역 자원 서비스 (민간서비스포함) 31만 여종의 광범위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중 2만7천 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나. 서비스 알아보기 주민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현재 중앙부처 서비스 276종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79종(법정급여 15종, 기본안내 29종, 욕구별 안내 35종)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가능 다. 지역서비스 및 민간시설 검색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별로 서비스 조회가 가능하고, 지역간 서비스 비교도 가능합니다. 지역별 주요 시설은 지리정보서비스(GIS)를 이용하여 위치 정보와 함께 시설정보, 서비스 정보 제공 라. 나눔시장을 통한 후원 OK주민서비스에서는 주민과 기관 스스로가 원하는 물품을 기부 받고 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 하여 서비스 도우미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후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마. 자원봉사 요청/신청 전국 16개 시도의 자원봉사 통합 DB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자원봉사의 요청은 물론 주민 스스로가 자원봉사자로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OK주민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oklife.go.kr , 2010. 9. 30. 검색

5. 통일부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하나원(통일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로 지난 1999년 7월 8일 경기도 안성에 설립되었고, 경기도 분당의 새마을연수원에 하나원 분원이 마련되어 있음. 탈북자들은 이곳에서 3개월 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됨. 이 기간 동안 문화적 이질감 해소, 기초직업교육 및 훈련, 심리안정 및 정서순화 교육, 역사교육 등이 이루어짐.
다. 주요사업	○ 사회적응교육 ○ 정착지원
라. 세부사업내용	가. 사회적응교육 ○ 정서안정 및 건강검진 : 심리상담, 심성수련, 건강검진 등 실시 ○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 : 민주주의 -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 중점 - 실생활 위주의 현장 학습강좌 ○ 진로지도 및 직업기초 능력 훈련 : 적성검사, 진로지도, 기초직업 훈련 실시(고용노동부와 공동실시) ○ 초기정착 지원 : 정착의지 함양 교육, 정착지원제도 설명 나. 정착지원 ○ 초기 정착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 지급 - 1인 가족의 경우 최하 600만원, 주거지원금을 포함하면 1,900만원 ○ 주택지원 -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이후 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대한주택공사나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주거지원금 지원 ○ 취업지원 : 직업훈련 기회 제공, 사업장 알선, 지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급 ○ 교육지원 :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보장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들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가 있음. ○ 거주지 보호 및 민간을 통한 지원 : 거주지에 주택을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 및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각 지역협의회, 지역 민간단체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게 됨.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 네이버 시사용어사전 홈페이지. http://terms.naver.com. 2010. 9. 30. 검색 ○ 통일부(2009). 2009년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하나둘학교(통일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만 19세 이하 하나원 입소 교육생을 유아반, 유치반, 초등반, 청소년반으로 편성하여 3개월 간 심리안정, 정서순화, 학습능력배양, 사회적응 등을 교육한 후 학력심사를 거쳐 일반학교로 편입시킴.
다. 주요사업	심리안정, 정서순화, 학습능력배양, 사회적응 등을 교육한 후 학력심사를 거쳐 일반학교로 편입
라. 세부사업내용	가. 하나원 재원 중 ○ 1단계 - 하나원 재원 청소년 방문 교육(월 1회, 4시간), 청소년반 전일제 협력(2009.9 교사 5명 파견) - 초등 유치 방과후 교육(교사 3명, 주5일, 2시간), 주말 방문교육(2시간) ○ 2단계 : 하나원 재원 청소년 배교문화체험학습(월 1회, 1박 2일) 나. 하나원 퇴소 거주지 정착 후 ○ 3단계 : 사회입문프로그램(격월 1회, 8시간) ○ 4단계 : 거주지방문교육(월 5개 지역)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초등학교 특별학급(삼죽초등학교)(통일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초등학생들을 인근에 위치한 삼죽초등학교(정규)에 특례 입학시켜 3개월 간 위탁교육을 받고 있음. 삼죽초등학교는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북한이탈학생 적응 연구학교'로써 교육과정 개발이 지원되었음.
다. 주요사업	○ 새터민학생 적응교육 ○ 적응기간 및 사후 프로그램
라. 세부사업내용	가. 새터민학생 적응교육 ○ 원적학급 시간 운영(1~4교시) : 교과적응교육 실시 ○ 특별학급 시간 운영(5~8교시) - 통합교과학습 실시 : 통합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우리는 하나」 1~6학년용 제작」 활용 - 통합교과 체험학습 실시 : 교통문화체험, 관공서 및 산업체 체험, 박물관, 대학체험, 유적지 체험, 가정생활체험, 행사체험, 놀이문화체험, 봉사활동 - 컴퓨터 교육, 미술교육 등 특기신장교육 실시 - 과학교실 운영 ○ 방학 중 특별지도 시간 운영 : 여름, 겨울 방학 중 계속 지도 (통합교과, 체험학습 실시) 나. 적응기간 및 사후 프로그램 ○ 새터민학생 특별학급 편성(저, 중, 고 2학급 편성) ○ 학년별 「우리는하나」 통합교과서 및 지도서 제작 활용 ○ 체험학습 기회제공(주1회, 9개 영역) ○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전문강사 초빙) ○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전문 상담 교사) ○ 국어·수학 보충지도 자료 개발 지도 ○ 적응 교육 카드 작성(정착지 학교에 발송) ○ 꿈나무 과학 교실 운영 ○ 평생 친구, 평생 스승 삼기, 재회의 날 행사 ○ 정착지 관리자 교사 연수, 전화상담, 방문 지도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년 경북, 울산 탈북학생 지도 담당교원 연수(탈북 초등학생 특별학급 운영의 실제) ○ 삼죽초등학교 학생안내자료 팸플릿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통일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소 후 사회진출 시 일정기간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지원해주는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거주지 실정에 맞는 '지역안내 및 취업·진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다. 주요사업	○ 지역적응교육(총 60시간-1일 4시간, 15일 기준) ○ 사후지원(1년): 상근직원이 정기적 상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진단 → 필요한 지원과 함께 유관기관 연계 → 북한이탈주민 애로해소		
라. 세부사업내용	교육주제	교과목	세부내용
	초기 정착지원	거주지 편입지원	신병인수, 주민등록, 임대아파트 계약, 물건구입, 휴대폰 개통 등
	생활교육	지역사회 이해	지역사회 탐방: 구청, 고용지원센터, 경찰서, 병원, 은행, 우체국 등 지역별 주요기관 탐방 생활법률과 경제교육, 피해사례 예방교육 등
	취업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 찾기와 취업하기” 개인별 진로상담 및 직업탐색
		고용지원센터 방문	구직등록, 취업보호담당관과 인사
		현장 탐방	사업장 및 직업훈련기관 탐방(개인별 기관탐방 과제 수행)
		(맞춤형지원)	취업유보집단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노인대학 참관수업, 자원봉사 등)
	진학지도	진학지도	지역 내 학교소개, 지역 내 아동청소년 전문가 소개, 공교육 및 검정고시, 대학진학 안내,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관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족 만들기, 결혼 및 이혼 등 가족법 문제, 가정 내 갈등해결 방법 등
	건강증진	건강관리	지역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이용방법, 기본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 정신건강예방교육(우울증자가진단)
	문화체험	문화체험	지역문화 이해하기 마련, 직원과 교육생의 친밀감 형성
	수료식		인생설계 및 교육평가, 수료식
마. 기타사항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2011년 16개 지자체 전면 실시 계획. 지역적응센터가 전국화 되면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관계없이 하나원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연속된 정착지원서비스 수혜가 가능해짐. 지역적응센터의 사후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단체 연계 지원		
바. 자료출처	통일부(2009). 통일백서. 통일부 보도자료(2009. 3. 25일자) 거주지 정착지원기관 '하나센터' 개소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2010. 10. 5 검색)		

6. 법무부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법무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 역할 및 기능: 워크숍 및 정기 교육(생활 법률, 교양 강좌, 결혼 준비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가족법 개정 운동 - 가정 문제, 가족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가정 문제 상담
다. 주요사업	○
라. 세부사업내용	○ 법률구조: 법률상담, 화해조정과 무료대서, 소송구조(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국내외 지부 설치, 백인변호사단 운영(월요일 야간상담 및 소송구조 담당 자원봉사 변호사 2007년 기준 500명 가입) ○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1977년 5월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교육사업으로 시작. - 정기강좌: 생활법률 강좌, 결혼아카데미, 여성커뮤니티, 이혼 전·후 교육, 한부모가정 교육 프로그램 및 캠프 - 공개강좌: 부부갈등의 해결을 위한 워크숍, 재혼가정교육 및 캠프, 가족심화상담 프로그램, 기혼 남성 프로그램 - 전문교육: 가정폭력·가정법률전문상담원 교육(가정문제 전문 상담위원 활동 예정자 대상)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심화교육(여성가족부 지정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이수자 대상), 법률임상실습(각 대학 사회사업·사회복지·심리학과 학생 대상) ○ 가족법 개정 운동 - 가정문제, 가족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 각종 학술 강연회 개최: 가족법 개정,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아동문제, 인권문제 등 가정문제 전반 - 도서실 운영: 여성관련 법률, 여성·가정 문제 관련 정기간행물, 논문집, 신문기사 클리핑 자료 보유 ○ 출판사업 및 홍보 활동: 1978년 출판사 등록으로 상담 사례집, 정기 간행물, 단행본, 자료집 등 다수 발간 ○ 전화, 인터넷, 서신, 외국어 등 다양한 상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야간상담
마. 기타사항	○ 인력: 법률가, 사회복지사, 가족치료사
바. 자료출처	이태수, 정익중, 김신열, 박경수, 이호균, 이경림, 박주현(2008). 아동청소년복지 네트워크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2010. 10. 5 검색)

소년원학교(법무부, 2010. 9. 현재)

o 소년원학교 현황

구분		기관명(학교명)	설립 일	개교 일	처우 과정	교육과정
특 성 화 학 교	정 보 통 신 학 교	서울소년원 (고봉정보통신 중·고교)	'42. 4.20	'00. 8.3 1	9호 10호	중고등학교 교과과목, 컴퓨 터, 검정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자교육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45. 11.2 1	'00. 8.3 1	9호 10호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자교육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67. 3.25	'00. 9.6	9호 10호	중학교 교과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63. 9.9	'00. 9.4	9호 10호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자교육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7. 11.9	'00. 8.3 0	8호 9호 10호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8호 처분자(제주지역 男)교육 보호자교육
	정 보 산 업 학 교 · 직 업 능 력 개 발 훈 련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47. 1.18	'00. 8.3 1	10호 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 컴퓨 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광주소녀원 (고룡정보산업학교)	'46. 11.7	'00. 9.6	10호 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 컴퓨 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 학교)	'46. 10.1	'00. 8.3 0	9호 10호	중학교 교과교육, 컴퓨 터, 검정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자교육
인문계 학 교	대덕소년원 (대산중·고교)	'98. 7.1	'02. 3.4	7호 8호 9호 10호	중학교 교과교육, 컴퓨 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p.370 재구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http://www.jschool.go.kr/>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보호관찰소(법무부, 2010. 9. 현재)	
o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명	협력기관	내용(참여인원)
청소년 열린 교실	강남청소년 수련관	개별상담 및 소집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 회적응능력 함양(15명)
학교폭력 예방교실	방배유스센터	공동체 의식 함양과 변화에 대한 성취동기 함 양(6명)
성년식	한국지역사회교 육협의회	전통적 방식에 의한 성년식 거행으로 성인으 로서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자기성찰의 동기부 여(51명)
예절교육	기획집행	다양한 기초예절교육을 통해 원만한 사회적응 에 이바지/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예절강사 초청(37명)
사회적응훈련 '어울림'	성동청소년 수련관	자아정체감 형성과 재비행 예방(14명)
극기캠프 '또 다른 나를 찾아서'	자녀안심 서울협의회	극기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마련(21명)
영화 '가족'관람	본 소 기획집행 / 강남협의회 후원	가족의 소중함 재인식 결연 청소년 및 보호자, 결연 범죄예방위원(110명)
결손가정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 프로그램	본 소 프로그램 슈퍼비전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결손가정 출신 대상자에게 다양한 처우프로그 램 실시하여 비행청소년 처우매뉴얼 개발/태 화종합사회복지관 공동주관(40명*3년)
등근 세상 속으로	서초종합사회 복지관	성격검사, 진로탐색검사, 직업탐색, 분노조절, 성교육(10명)
문제음주 청소년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서울보호관찰소 ,중랑한울지역 정신건강센터	음주가 미치는 영향, 음주에 대한 미신(10명)
등대교실	신당종합사회복 지관	자기표현, MBTI, 인생도표 만들기(12명)
바로서기 교실	옥수종합사회 복지관	MMPI, 직업탐색, 미술치료, 다도, 도자기 만 들기(6명)
화이트교실	태화기독교사회 복지관	분노조절훈련, MBTI, 재발방지계획(10명)
질주를 멈추고	송파청소년 수련관	MBTI, 인생곡선(13명)
자료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HP/TSPB/spb_50/spb_50202022.jsp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예시 재구성(일부발췌)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사이버 한국법교육센터(법무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법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국내 최초의 법교육 전문사이트로 법무부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음.
다. 주요사업	○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애니메이션, 동영상, 만화를 통해 쉽게 제시 ○ 생활법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 ○ 초등학생부터 외국인 노동자까지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도록 다양한 법교육 학습 콘텐츠 제공 ○ 동영상, 매뉴얼, 경연대회 등 법무부가 개발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소개
라. 세부사업내용	가. 학생자치법정 지각, 명찰 미패용, 두발불량 등 경미한 교칙위반이 잦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일방적인 체벌이 아닌 학생들로 구성된 재판부의 재판과정을 통해 교육적으로 유익한 벌칙(긍정적 처벌 혹은 긍정적 지도)을 부과하는 제도 나. 청소년 법교육학당 기존의 강의중심 준법교육을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여 모둠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나누는 체험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 다.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재판 구성을 통해 각종 법적 내용 습득 라. 생활법 경시대회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모여 법의 원리와 가치, 다양한 생활법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대회 마. 대상별 캠프 매년 여름/겨울방학 때 각2회, 연간 4회 2박 3일간 진행되는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사. 학교폭력 :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종 강의 아. 대한민국헌법교실 여러 헌법교육 연구와 활동을 모아 이루어지는 헌법교육의 총체를 이루는 프로그램 자. 출장강연 다양한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로에듀케이터 강사진이 직접 초·중·고등학교와 사회교육기관에 출장하여 법교육을 실시 차. 새터민 법교육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기본적인 법률 상식까지 새터민이 필요하고 원하는 법적인 내용 제공 타. 비행청소년 법교육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사이버 한국법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edu.or.kr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한국법문화진흥센터(솔로몬 로파크) (법무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2007년 대전에 '솔로몬 로파크'를 건립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쌓아가는 법교육 테마공원으로 조성.
다. 주요사업	○ 법체험관 ○ 법연수관 ○ 솔로몬모의재판교실
라. 세부사업내용	가. 법체험관 ○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용 법치세상 법체험 코스 : 동서양 법제도의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입법, 과학수사, 모의재판, 교도소 등 사법제도 전반을 직접 체험 ○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용 법짱마을 법체험 : 법짱극장, 안전법짱, 세움법짱, 수호법짱, 교통법짱 코스의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법과 친해지면서도 법질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 나. 법연수관 ○ 어린이 법탐험 캠프 ○ 청소년 법치세상 아카데미 ○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직무연수 등의 법교육 프로그램 다. 솔로몬 동영상 영상체험 교실 ○ 전국의 초등학교생들이 교과서 속의 법교육인 모의재판을 교실 내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법무부 솔로몬파크에서 제작한 동영상 프로그램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솔로몬 로파크 홈페이지. http://www.lawedupark.go.kr .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법무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o 목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함
다. 주요사업	o 갇생보호 및 다각적인 범죄예방활동: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긴급원호, 주거지원, 기타자립지원, 재사회화교육, 멘토링 및 사후관리 o 갇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o 갇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경영
라. 세부사업내용	<2010년 주요추진 업무> 1. 무주택자 출소자 주거지원사업: 생계곤란 무주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 국토해양부의 「특수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과 연계('06년~'10년 동안 매년 150호씩 총 1,500호 공급) 2. 창업지원 프로그램: 출소자 중 자영업 경력자나 자격증 또는 기능보유자에게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1인당 50백만원 이내의 임대보증금 지원('10년 10억원 확정, 출소자 20명에게 창업지원 예정) 3. 사랑의 빨래방: 범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갇생보호사업의 국민 인식개선 차원에서 7개 지부에 빨래방을 설치하여 소외계층의 세탁물 무료세탁, 배달('10. 6까지 2,173명 참여로 838명의 세탁물 90,582점 세탁) 4. 사후관리: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위해 자원봉사자와 결연하여 생활지도 실시('09년 9,398명), 합동결혼식 지원('09년 93쌍) 5. 기초자립 지원사업 신설운영: 생활관 입소 숙식제공자 기초생활비(1인 10만원), 직업훈련 수당(1인 20만원), 취업알선 교통비(취업 후 첫 임금 수령 전 1인 20만원) 6. '1기업 1출소자 고용운동' 전개: '08. 6 전국취업알선후원 연합회 구성(기업체 보유 후원회원 600여명 활동 중) 7. 연예인 홍보대사 활동: 대외 홍보활동 강화 8. 노란리본 캠페인 전개: 출소자 이미지 개선과 갇생보호사업의 민간 9. 참여 확대 위한 제2회 출소자 HUG 후원의 날 행사('10. 9) 10. 여성지원센터 건립: 여성 전문 사회복귀시설로 여성사회성 향상 전문프로그램 운영(경기 화성) 11. 출소자 기능취득 전문처우센터 건립 추진: 교육 시설 ('10. 12 개관 예정), 지역사회 유망 산업체 연계 통한 취업인프라 구축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법무부(2010. 8. 1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업무현황. - 법무부 http://www.moj.go.kr/ (2010. 10. 5 검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http://www.koreha.or.kr/

7. 고용노동부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고용지원센터(고용노동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 2006년 7월 1일 고용환경센터에서 고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찾아가는 서비스, 보다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기구. 기업체에 우수인력 뿐만 아니라 필요한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들에게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취업상담을 비롯하여 집단프로그램, 단기특강,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
다. 주요사업	○ 취업지원 ○ 고용보험관리 ○ 고용안정사업 ○ 집단직업상담 ○ 직업능력개발 ○ 외국인채용지원 ○ 실업급여 ○ 모성보호
라. 세부사업내용	가. 취업지원 ○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 디딤돌일자리 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 사회적 기업 나. 고용보험관리 다. 고용안정사업 ○ 고용창출사업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고용조정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 고용촉진지원 : 고령자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건설근로자계속지원금,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비지원 라. 집단직업상담 ○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 취업희망 프로그램 ○ 취업성공 프로그램 ○ 고령자 재취업 프로그램 마. 직업능력개발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지원 ○ 근로자 수강지원금지원 ○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지원 ○ 구직자 직업훈련 지원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지원 바. 외국인채용지원 : 외국인고용허가제 사. 실업급여 아.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서울고용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go.kr/seoul . 2010. 9. 30. 검색

8.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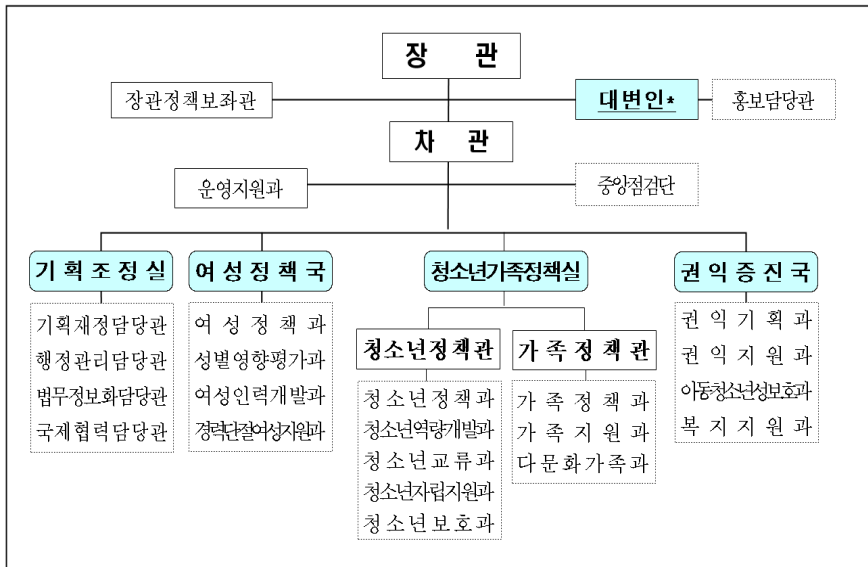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여성농업인센터(농림수산식품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영농가사육아문제 등 고충을 상담하고 보육·방과후 아동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주요사업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 농촌어린이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 여성농업인의 문화적 욕구실현 및 자기성장발전에 기여할 전문 인력양성 ○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실천방안 모색
라. 세부사업내용	가. 보육사업 ○ 어린이집 ○ 공부방 ○ 도서관 ○ 놀이터 나. 여성농민사업 ○ 교육문화활동 - 여성농민 교육 : 여성농민지도력 향상 교육, 여성강좌 - 여성농민 문화강좌 ○ 공동체 활동 - 역사문화기행 - 부모교육 - 노인사업 다. 도시농촌교류사업 라. 상담사업 ○ 여성농업인의 건강, 영농활동, 가정문제(고부간, 부부간, 자녀문제), 경제문제, 사회활동, 법률, 여성농업인의 교육, 가정폭력, 성폭력 등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형성여성농업인센터 홈페이지. http://www.hsyeonong.net. 2010. 9. 30. 검색 양구여성농업인센터 홈페이지. http://www.ygcenter.org. 2010. 9. 30. 검색

가. 기관 및 주요사업명 (관련중앙행정기관)	식품안전정보센터(농림수산식품부, 2010. 9. 현재)
나. 사업개요 (역할 및 기능)	식품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으로 소비자를 위해 산업체의 안전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식약청의 식품위해 사전예방활동을 돕는 전문정보기관
다. 주요사업	○ 식품안전정보제공 ○ 식품이력관리 ○ 협력네트워크
라. 세부사업내용	가. 식품안전정보제공 ○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 ○ 식품안전 동향 분석 ○ 대국민 정보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나. 식품이력관리 ○ 식품이력관리제도 홍보 ○ 식품이력관리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 문제 식품의 유통차단 및 회수 지원 다. 협력네트워크 ○ 이해관리자간 소통 채널 구축·운영 ○ 국내외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운영 ○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운영
마. 기타사항	
바. 자료출처	식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foodinfo.or.kr . 2010. 9. 30. 검색

Ⅲ.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기관 및 사업 현황

1. 여성가족부
2. 보건복지부
3. 교육과학기술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국토해양부
6.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방재청 포함)
7. 통일부
8. 법무부
9. 고용노동부
10. 농림수산식품부
11. 환경부
12. 기타 중앙행정기관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기능

-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 ☐ 청소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활동·복지·보호에 관한 사항
- ☐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
- ☐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보호

[그림 III-1] 조직구조 및 주요기능

-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조직 및 기능. <http://www.mogef.go.kr>. 2010.10. 검색
- * 출처: 여성가족부(2010). 여성가족부 2010년 업무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 * 주: 여성가족부의 아래 내용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는 2009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2010년 3월부터 여성가족부로 업무 이관됨.

1)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¹⁾(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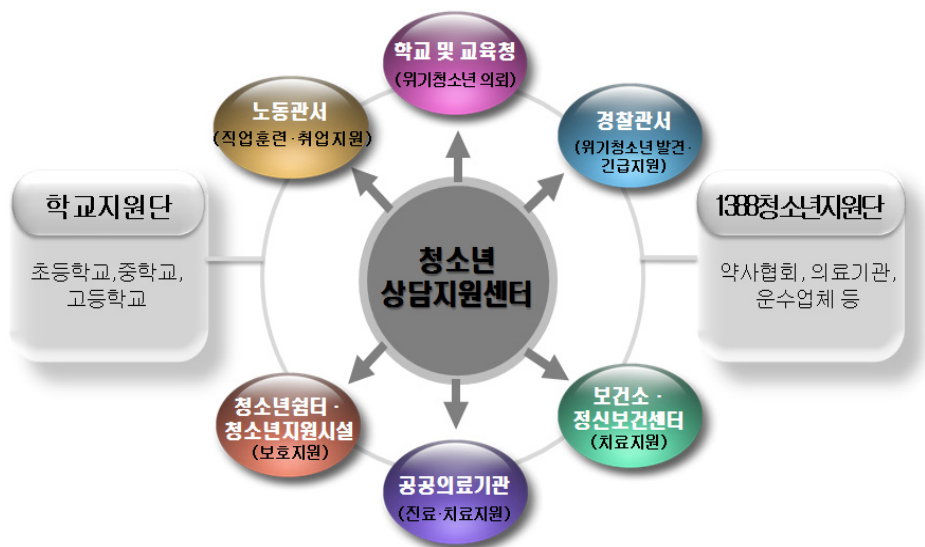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2010년 현재,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150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연간 10만여 명의 위기 청소년을 상담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허브(Hub)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직영(별도의 공익법인 설립 포함) 또는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그 동안의 운영방식, 성과를 평가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상담지원센터를 신설 및 재 위탁 시 종합적인 청소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독 건물 확보 노력에 주력하고 있다.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센터 설치²⁾를 권장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 안내, 2010).

2009년에 16개 시·도와 81개 시·군·구에서 운영하였고, 9만 여명의 위기청소년에게 연계서비스 지원을 하였으며, 2010년에는 12만 명의 위기 청소년 연계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2010년에 위기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 또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2010. 9. 30. 검색).

1)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및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2)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 내, 2013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그림 III-2]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서비스 연계도

* 참조: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YS-Net 사업은 2008년 전국 16개 시도 및 65개 시·군·구의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81,002명의 위기 청소년³⁾에게 434,281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연계 하였다. 더불어 CYS-Net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계망의 범위를 민간사회로 확대, 1388청소년지원단⁴⁾(구'1388서포터즈')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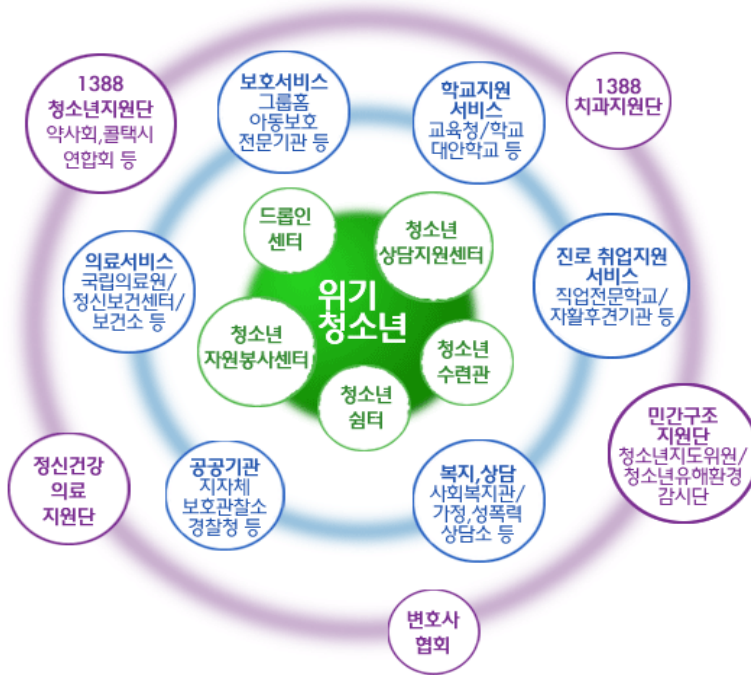
3) 위기청소년(Youth at Risk) : 학교·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가져 장래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약 93만 명으로 추정된다.(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 사업안내. 2010)

4) 가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위기 청소년의 발견, 긴급구조 및 보호서비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지원단은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며 CYS-Net의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CYS-Net의 추진방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발굴·협력 체계를 강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체계적 발굴 시스템⁵⁾을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0년 166개소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까지 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 예정이며, (186개소(11년)→224개소(12년)→248개소(13년) 운영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시군구 센터 장 평균 3.7명 수준인 인력을 2013년까지 평균 6명으로 증원한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의무적 연계·협력체계를 마련⁶⁾(총리훈령)하고 위기청소년 학습·자립 중심기관으로의 개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사업명칭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여성가족부, 2010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
- 5) 장기결석·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를 학교(교육청)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중단 없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법 개정 시 장기결석·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 제공하는 근거 마련 추진한다.
 - 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시도 및 시군구에서 총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의무적으로 연계하여야 할 공공기관(학교·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 병원, 보건소, 청소년쉼터)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한다.

○ 청소년위원회 지원기관 ○ 지역사회 연계기관 ○ 민간단체 연계기관



[그림 III-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도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1388 청소년전화. <http://www.kyci.or.kr>. 2010. 9. 30. 검색

3)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상담 #1388

1388 청소년 전화는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전국 165곳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 이후,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⁷⁾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화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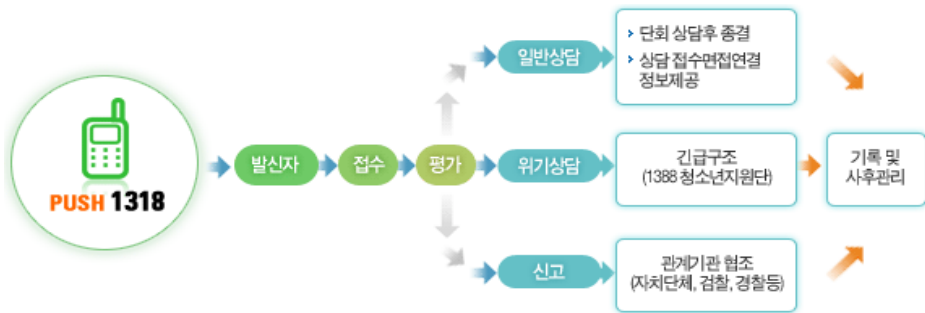
7) 인터넷 홍보, 인터넷 게임 연합회, PC방 협회 등 관련기업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홍보, 한국교총, SKT 등 단체나 일반기업과 연계로 사회공헌차원의 청소년전화 1388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TV, 라디오, 신문매체, 지하철 전광판, 홍보탑 등

수 건수의 지속적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09년 1년 동안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총 424,739건, 일평균 1,163.7건의 전화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전년대비(총 352,016건) 21%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2009 주요사업실적, <http://www.kyci.or.kr>, 2010. 9. 30. 검색).

한편, #1388이 청소년의 고민해소 창구가 되고 있다. #1388은 2004년 청소년보호단체인 사단법인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 주도로 시작됐으며, 현재 주요 통신사들이 참여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시간적 제약이 없어 청소년들의 이용건수가 2007년 2만9,985건, 2008년 9만3,565건, 2009년 14만6,676건으로 매년 폭증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개 음성통화보다는 문자대화를 더 선호한다는 점도 #1388의 이용도가 높아진 한 요인이다(한국일보, '청소년 고민 상담 통화보다 문자로!', <http://news.hankooki.com>, 2010. 7. 14일자).

2010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1388 통화 중 수신 또는 일시부재 문제 해소를 위해 착신전환 서비스 및 콜매니저 서비스를 도입하여 콜백 여부를 관리하고, 1388 전화수신 요원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10년도에는 시도별 총 22회(1,000명) 교육을 실시하고 시도센터의 상시 슈퍼비전 체계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1388 홈페이지를 통한 전화 민원 모니터링 강화,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무료화 추진 및 홍보 강화, 모바일 문자 상담원 및 서버 증설 등 기능 보강을 추진한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 안내, 2010).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그림 III-4] 청소년전화 1388 전화상담 모형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1388 청소년전화. <http://www.kyci.or.kr>. 2010. 9. 30. 검색

4)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09년 기준, 16개 시·도('06년 대비 178% 증대), 전국 108개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총 600명의 시간제 동반자가 배치되어 있다. 기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수혜청소년의 개인상담 종결 수는 16,502건으로, 목표 13,000건 대비 127%의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다⁸⁾ ('09년 추경으로 신규 배치된 추경 청소년동반자 실적 제외).

'09년 대비 '10년 추진방침은, 기존의 서비스와 지원체계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기관·시설에 찾아가야 받을 수 있거나 정보 부족, 권위자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하여 실제 수요자인 청소년과는 단절되는 경향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여 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동반자가 직접 찾아가고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청소년동반자가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서비스 지원체계는 총체적 지원망의 부재로 인하여 개별시설 및 자체 연계망을 통한 지엽적인 도움만을 제공하였지만, '10년에는 청소년이 동반자와 한번 연결될 경우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의 전체적인 정보와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8) 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2009 주요사업실적. <http://www.kyci.or.kr>, 2010. 9. 30. 검색



[그림 III-5] 청소년동반자 서비스 체계도

* 출처: 양산시 홈페이지. 청소년 광장. <http://www.yangsan.go.kr>. 2010.9. 30. 검색

5)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아카데미'두드림존' 사업

2010년 기준, 두드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상설 두드림존 및 시범 두드림존이 전국 30개소의 운영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두드림존, <http://www.kyci.or.kr>, 2010.9. 30. 검색).

상설 두드림존의 경우 '09년 3개 지역에서 '10년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었으며, '11년까지 시도별 상설 두드림존 1개소씩 운영 예정에 있다. 기본적으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그 시·도내에 있는 시군구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청소년 활동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탁할 수 있으나 예산은 시도에서 부담한다(여성가족부, 2010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표 III-1> 두드림존 운영 2010년 사업 추진 방향

구 분	기 존('09년)	변 경('10년)
예산	• 민간경상보조금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운영 지역	• 일부 지역(서울, 경기, 대전)에 국한된 시범성격의 사업	• 상설 두드림존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지역적 보편성 확보
운영 주기	• 참여기관의 일정에 맞춘 비정례적 프로그램 실시	• 능동적 일정 수립을 통한 프로그램 정례화
운영 방법	• 1~2단계의 교육 및 체험중심 자립동기 강화 프로그램에 초점	• 1~2단계 포함, 3단계 사회진출 지원강화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에 초점
단계 전환	• 수요자 희망 및 사례회의의 결과에 따른 주관적 판단	• 수요자 희망 및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반영한 사례판정회의의 결과에 따른 보편타당한 평가 도입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청소년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6) 청소년수련시설⁹⁾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432개소,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258개소로 2010년 기준, 총 690개소의 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하는 중앙정부의¹⁰⁾ 수련시설, 지방자치단체의¹¹⁾ 수련시설, 민간의¹²⁾ 수련시설 설치로 나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10 검색).

- 9)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입지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2005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정책가이드, 2010. 9. 30. 검색)
-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 1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 12)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 더불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민간수련시설을 건립하는 민간법인이나 단체, 기업 등에게 세제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지원하고(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지원센터), 국립청소년 수련원(영덕·김제) 건립을 추진하여 '13년 완공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30개소) 및 기능보강(27개소)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평가(3년 주기) 실시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수련 프로그램을 지원(147개소)한다(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 사업안내, 2010).

7) 청소년이용시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국가가 건립한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이 있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으로 분류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2) 과학관

과학관 중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상설전시관에는 4개 분야 약 4,100여점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 밖에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3) 체육시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 개최 등을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로는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 농구 내, 시·군 기본체육 시설 등이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8) 건강가정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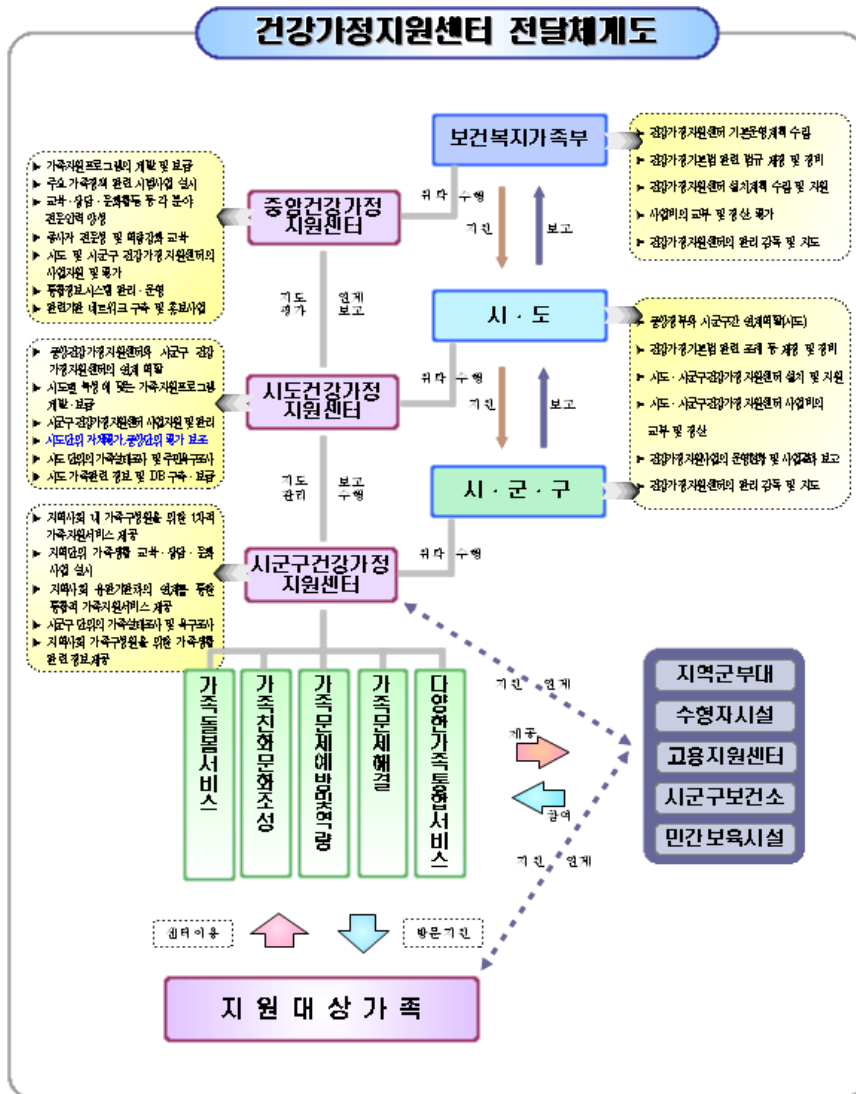
2009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5개 사업영역의 총 참여인원은 853,377명으로 집계되었다. 2004년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되어 2009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87.6%에 이르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이는 센터 수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초창기 센터들의 5년간의 사업 역량이 축적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진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센터의 총 참여인원은 2,227,346명에 이른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¹³⁾ 제정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매년 지속적인 확대설치를 통해 2010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중앙센터 포함)는 전년도에 비해 센터수 98개소에서 139개소로 41개 센터가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에 비해 국비지원센터는 45개소가 증가되어 2010년에는 총 100개 센터가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다. 2010년 국고지원을 받게 되는 45개 센터는 신규 센터 40개소와 기존에 전액지방비로 지원받던 센터 5개소 등이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1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09년과 비교하여 '10년 변경사항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 시군구에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70%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도에서는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국고보조의 경우)하였으며, '09년 농어촌지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가 우선이었으나, '10년에는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배제하고 다기능화센터¹⁴⁾를 설치하도록 하며,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14) 다기능화센터는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법인이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을 수탁 받아 함께 수행하는 센터이며, 조직 내 건강가정사업을 담당하는 팀을 둔다 (여성가족부, 2010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2010).



[그림 III-6]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달체계도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 주: 그림의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3월부터 정부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부로 업무이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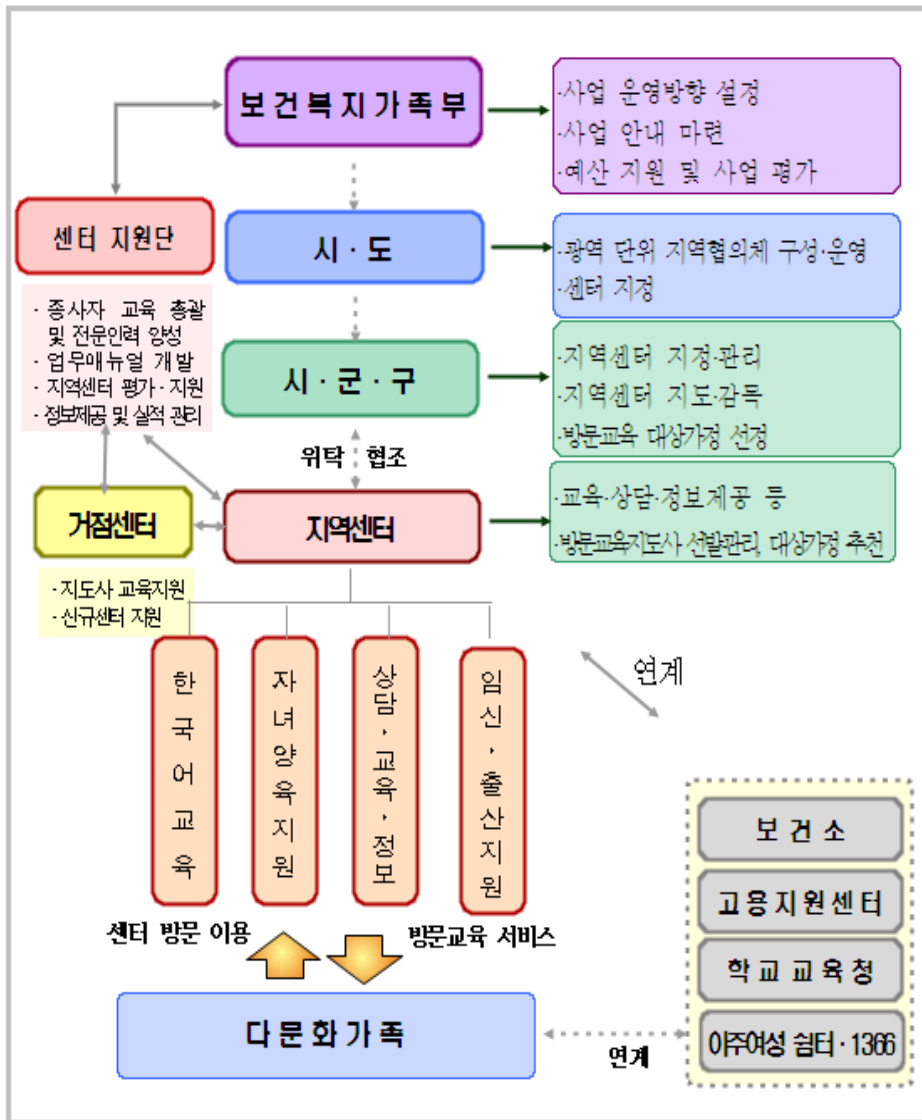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¹⁵⁾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전국 총 17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06년 21개소 → '07년 38개소 → '08년 80개소 → '09년 100개소로 확대 설치되었다(여성가족부,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2010).

'10년 5월, 정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의 한국어교육 기준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농어촌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해 방문교육지도사의 방문교육 서비스, 한국어교육통합정보망(누리-세종학당)을 통한 온라인교육 등 한국어교육 방법을 다각화하기로 하였다(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010. 5. 11일자).

'10년 중앙부처는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국어판 생활·정책정보 매거진(Rainbow+, 연 4회), 한국생활 가이드북 발간·배포(Rainbow+ 9개 언어 총24만부 배포('10.4월), 한국생활가이드북 9개 언어 10만 5천부 배포('10.5월)) 등 한국생활 정보를 제공하며, 입국초기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123개 센터 199명의 통번역지원사를 배치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국어 포털 홈페이지를 오픈한다(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도 업무보고, 2010).

-
- 15) -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독립형 센터”라 함) :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
-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병합형 센터”라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



[그림 III-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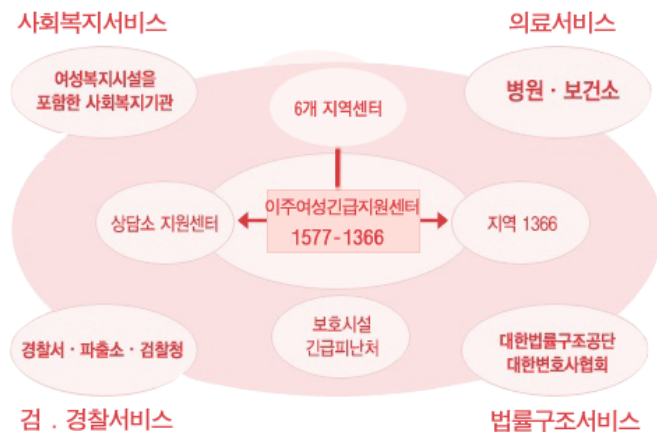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 주 : 그림의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3월부터 정부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부로 업무 이관됨

1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2006년 11월, 여성가족부 주최,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관으로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08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07년 상담건수 13,277건, '08년 19,916건, '09년 43,454건으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이다.

2009년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현장 직접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수원), 충청권(대전), 전라권(광주), 경상권(부산) 등 4개 권역별로 지역센터를 개소하여 면접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0년 7월부터는, 전북 전주시와 경북 구미시에 2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 하고, 일본어 상담 추가로 총 10개국의 언어로 상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주여성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국어 홍보를 추진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그림 III-8] 피해자를 위한 모든 기관과의 네트워크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11) 이주여성 쉼터(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지역부터 설치, 운영한 이주여성 쉼터는 현재 전국 18개 이주여성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보호하고, 동반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이주여성 쉼터는 2010년 쉼터 기능 보장비 항목을 신설, 이주여성 보호시설 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쉼터 인건비 및 운영비, 긴급지원비 지원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0).

또한,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주여성 자활공간터'를 설치해 거주, 아동보호, 직업훈련, 자활공간에서의 취업 전 훈련 등으로 이주여성 및 자녀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활조건이 성숙된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을 시작(서울1개소) 하고자 한다(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0. 5. 1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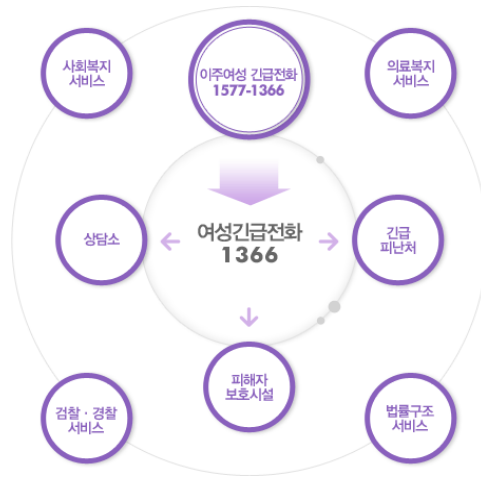
12)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부처는 2010년부터 1366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¹⁶⁾를 마련하였다.

또한 긴급피난 현장상담¹⁷⁾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현장 상담원 2명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예산 34,080천원이 추가 지원된다.

16) 긴급전화센터 1366의 사업, 설치·운영에 관한 시도 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 (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0)

17) 긴급피난 현장상담 지원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피해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 시 현장 상담원이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긴급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0).



[그림 III-9]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추진체계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또한, 중앙부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ONE-STOP 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및 112, 119등 관련 기관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 2010).

13)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촉받아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운영되어온 경찰병원 여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2010년 충남 및 전남에 센터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전국 18개 병원 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은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09. 6월말까지 16개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4,988명의 성·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19,145건의 상담과 진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여성 경찰관 3명과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범죄피해 상담, 신고접수, 증거수집, 진술조서 작성 등 활동을 벌이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와의 화상대질조사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 1. 27일자).



[그림 III-10]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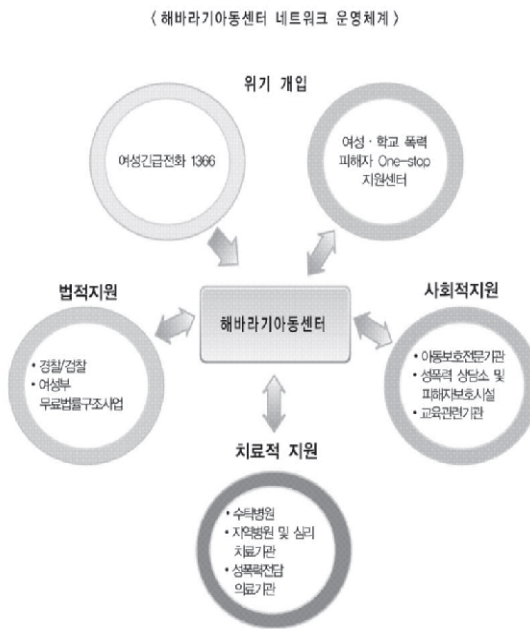
* 출처: 부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bsonestop.or.kr>. 2010. 9. 30. 검색

14) 아동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종합병원 가까운 근처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문치료 인력이 배치되어 정신과, 산부인과 등의 의료진이 피해아동의 후유증 치료, 진술이 어려운 피해아동들에게 치료를 통한 진술이 가능하게 하며,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담 기관이 10개소¹⁸⁾ 정도 설치 운영되어 지역의 밀접성에는 다소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 거리상, 시간상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2009).

'09년 사업과 비교하여 '10년 변경 사항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자체보조금 운영으로 전환되었고, 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아동센터 표준행정시스템 전산화를 구축하고 센터별 자문변호사를 위촉한 법률자문단을 운영한다(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0).



[그림 III-11] 해바라기아동센터 네트워크 운영체계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18) 해바라기아동센터는 2004년 처음 설치되었으며, 2010년 현재 지역별 해바라기 아동센터 9개소(서울, 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충청, 인천, 강원, 경남)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1개소(부산)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15)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을 설립(2010.6),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중앙지원단은 전국에 설치된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성폭력 피해 여성·아동 지원 전문기관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중앙지원단은 각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센터 역량 강화에 힘을 계획이다. 특히, 중앙지원단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분석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아동 피해 진술과정에 참여해 진술을 이끌어 내고, 진술내용의 정확성, 신빙성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검증함으로써 아동진술의 증거능력을 사법시스템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영역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사법시스템 내에서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전문 인력의 역할이 커질수록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뿐만 아니라, 기소율 제고를 통한 사법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 6. 22일자).

1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75개소, 성폭력 상담소 16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는 전국 2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실적은 '06년 283,705건, '07년 295,825건, '08년 307,851건, '09년 307,009건으로 증가하였고, 성폭력 상담소 상담 실적은 '06년 119,655건, '07년 124,591건, '08년 145,247건, '09년 155,902건으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09년도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 보고, 2010).

17)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총 66개소(입소정원 1,132명)이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총 20개소(입소정원 234명)이다.

2010년 변경 사항으로는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밀 준수 의무 사항을 명시(보완)하고, 장애인 입소자 퇴소 시 장애인 시설로의 연계 협조를 신설하였으며, 보호기간이 기존 6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였던 것을 기본 6개월로 하되, 1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성년자로서 친족 성폭력피해자는 만 18세까지 입소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입주자 선정 특례를 적용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0).

18) 여성 ·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여성가족부의 직속으로 운영되는 여성 ·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여성청소년보호 1팀(여성)과 2팀(청소년)으로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조직 및 기능,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2010년 여성 ·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활동 강화를 위해 먼저, 여성폭력 피해자 구제활동 강화사업을 실시한다. 16개 시 · 도 지역 명예감시단¹⁹⁾과 정보연계를 통한 피해자 구제활동을 실시하며 더불어 여성폭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성매매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폭력 방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0).

19) '여성폭력방지 명예감시단'은 사·도의 추천을 받아 전국 여성폭력 관련 우수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및 학계, 법조계, 경찰 등 여성폭력 관련 업무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여성폭력 피해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점검단 연계,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유로운 진술을 통한 신고 유도 등 숙련된 현장 상담 경험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여성의 안전한 구조 활동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0).

청소년보호 가출·성매매 청소년 구호 및 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구호 활동을 서울·경기 중심에서 16개 시·도(전국)로 확대 실시한다. 특히, 가출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 상담·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전문가와 지역청소년 단체가 민관합동으로 참여한다. 또한 “가출청소년 아웃리치 활동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합동구호활동을 시행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서비스연계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 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 5. 3일자).

19)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여성가족부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전용쉼터'를 경남1곳(8월24일), 경북1곳(9월1일) 개소하였다(경북인터넷뉴스, '경상북도아동청소년 무지개 쉼터 개소', <http://www.gbin.co.kr>, 2010. 9. 1일자).

친족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특히 가해자의 친권 박탈 이후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정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 외 별도의 특별교실과 공부방 등을 갖추고 있어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상담과 치료는 물론 진학과 취업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관련법을 제·개정해 친족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의 범위 확대, 피해 반복 방지를 위해 검사의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청구를 의무화하는 등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부모 등 가족이 받는 심리적 상처가 매우 커 기존의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가족 심리치료 지원 외에 '가족보듬사업'과 연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지난 2006~2009년까지 전체 성폭력범죄사건 6만 8986건의 2.54%인 1,750건이 친족 성폭력으로 신고 되었다(공감코리아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www.korea.kr>, 2010. 8. 19일자).

20)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를 위한 범정부적인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08. 4월)의 추진과제로 시작된 지역연대 운영사업은 전국 244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주축이 되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중앙부처는 16개 시·도별로 1개씩의 기초단체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육성하고 '11년부터 지역연대 운영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전국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공동협력 협약(지역사회 아동안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홀로 남은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 8. 2일자).

21) 청소년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사업

정부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에 대한 심의·결정 및 고시를 통하여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왔으나, 1997년도 이후 청소년 유해 매체물²⁰⁾로 결정·고시된 유해 간행물과 영상물 등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IT산업발달로 인터넷 분야 유해 매체물 결정 건수가 급증, 2004년 이전 평균2,088건에서 최근 3년 평균 17,307건으로 8.3배 증가 하고 있어 향후 오프라인매체를 중심으로 규정된 유해 매체물 제도를 사이버 시대에 맞게 개편하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20)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5개 심의기구에서 음반·방송·인터넷콘텐츠·간행물·게임물중 청소년 유해물로 심의 결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청소년보호법 제2조)(여성가족부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2010년 중앙정부는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상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종 매체를 통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명의 휴대전화(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 보급을 추진하고, 매체 업계 자율규제와 청소년보호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게임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교육 실시 및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분야별 사업자단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09년 온라인쇼핑몰 자율단속에 대해 지원하였고, '10년에는 모바일, 인터넷 광고 등으로 확대한다(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도 업무보고, 2010).

22) 청소년유해생활환경 개선

'08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해업소에 대한 일반 청소년의 생애 이용률은 노래방 93.7%, 비디오방/DVD방 21.3%, 카페 39.8%, 호프집 및 소주방 19.5%에 달한다. 특히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주거 지역 인근에도 유해 업소가 난립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2009).

'09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에 관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의 활동 실적(2009.12.31 기준)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총 단속 건수 333건,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위반 60건,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146건,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57건, 청소년성매매, 알선 등 70건, 가출·비행 청소년 등의 청소년 구호 761명으로 집계됐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10년 청소년 유해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는 첫째로, 청소년 유해업소 규제 강화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청소년유해업소 격리 구획화를 추진(화성·동탄 신도시)하고, 초·중·고생 대상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추가, 매체물 내용정

보제 도입, 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 도입, 자율규제 활성화 등(청소년 보호법 개정 추진)을 추진한다.

둘째,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 확대,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셋째, 청소년 유해방송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확대 시행('10.10.1)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종료고지의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넷째,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연구학교(44개), 동아리(230개)에 청소년스스로지킴이(YP) 프로그램을 보급을 강화한다(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도 업무보고, 2010).

2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²¹⁾ 운영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개설·운영을 시작으로 민간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 1994년에는 서울YMCA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운영되었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서울 등 6대 도시에 6개 시민단체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보급되었다. 1997년에 제정·시행된 청소년보호법상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정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08년 10월말 기준 전국 16개 시,도에서 350개의 감시단 총 19,665명이 활동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10년 중앙부처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및 철회 요건 강화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감시단원의 자격요건 보완 등 감시단원 관리를 강화하며, 감시단 평가 내실화를 통한 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2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초·중·고등학교 학교감시단과 시민단체 감시단(청소년단체 감시단 포함)으로 나뉜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24) 청소년 통행금지(RED ZONE) · 제한구역 지정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각종 유해한 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19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권변동 등으로 2008년 말 기준, 총 61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25) 청소년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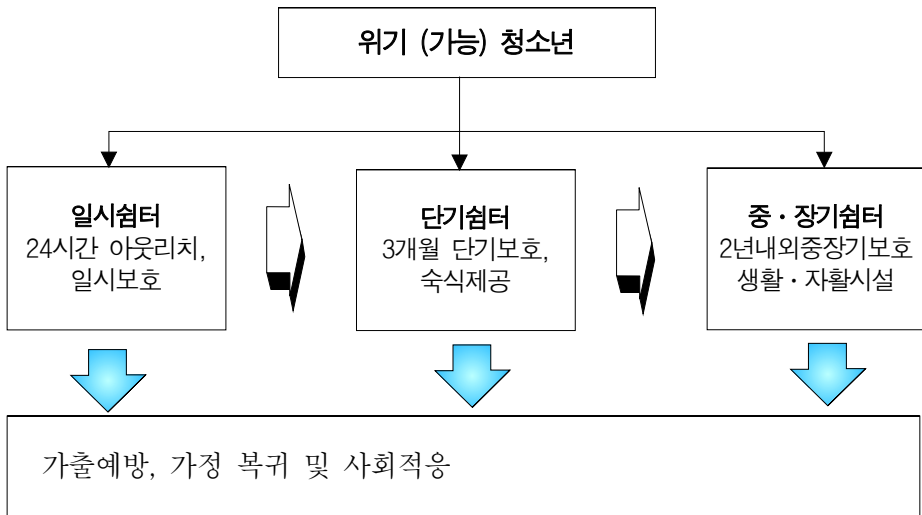
가출청소년쉼터는 1992년 시범사업운영의 일환으로 서울 YMCA 청소년쉼터가 개소한 이래 1996년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는 가출 및 위기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보호시설체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쉼터를 일시쉼터(드롭인센터), 단기쉼터(청소년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그간의 청소년 쉼터가 단기쉼터만 설치된 곳, 일시쉼터만 설치된 곳, 중장기쉼터만 설치된 곳, 또는 일시쉼터와 단기쉼터만 설치된 곳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가출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하였다. 향후 청소년 쉼터 운영 과제로는 한 지역 안에 일시 2개소, 단기 2개소, 중장기 2개소가 되도록 운영형태를 조정해야 한다(국무총리실, 위기 청소년 보호·관리 추진실태 평가결과, 2008).

청소년 쉼터 설치 현황은 '08년 78개소 → '09년 81개소 → '10년 83개소로 확대 설치되었으며, 중앙부처는 청소년 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도 업무보고, 2010).

'10년 중앙부처는 청소년 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보호서비스를 확충하여 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활, 고충처리 등 청소년 종합선도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그림 III-12] 청소년쉼터 체계도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26) 청소년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

구)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3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 청소년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활동하는 NGO와 경찰행정 당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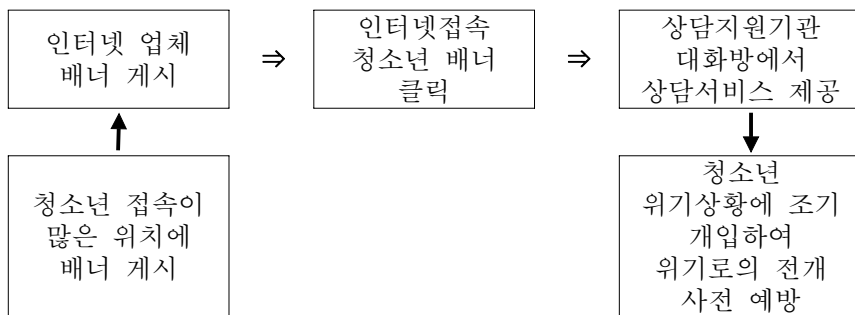
(Drop-in-center)를 개설 하였다. 2005년부터는 서울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도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27) 인터넷 위기채팅 상담 사업

인터넷 위기채팅사업은 2007년부터 한시적, 간헐적으로 운영되어왔으나,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당시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서 실시간 채팅상담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을 통해 가출 위험 청소년 532명을 대상으로 긴급 개입하여 문제해결을 돕거나 완화시켜 가출을 예방하였고, 가출 청소년 679명은 가정복귀, 조력, 쉼터 등 보호시설에 연계하였다. 기타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641명을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거나 문제해결을 도왔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온라인 위기상담 사업, <http://www.jikimi.or.kr>, 2010. 9. 30. 검색).

여성가족부는 2010년 8월 ~ 12월까지 네이버를 포함한 14개 포털사이트와 청소년 쉼터 간 연계 등 인터넷 위기상담 확대를 통해 가출 청소년 조기발견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그림 III-13] 사업추진체계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8. 7. 25일자.

28) 청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가정적·사회적으로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의 효율적인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선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선도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13개소의 청소년의 선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29) 한부모가족 상담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의 상담 및 지도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근거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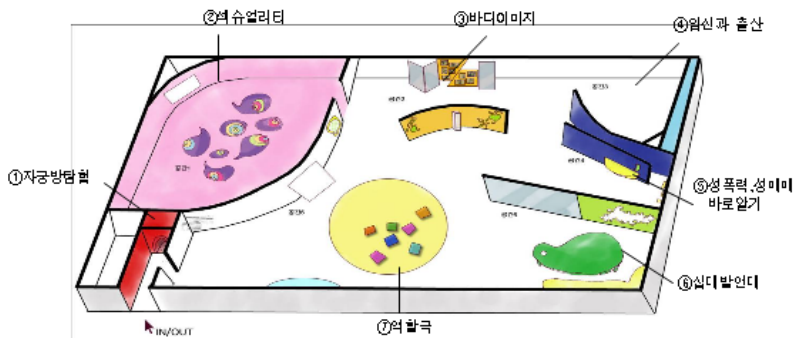
사업방침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담당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한부모가족 복지상담 활동 지속 전개, 유관 상담기관을 통한 한부모가족 복지상담 활동 강화이다. 특히 1366 상담전화 등 유관상담기관의 상담업무에 모자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복지에 대한 상담업무가 포함되도록 하며, 또한 상담 실적이 취합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주요상담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상담,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이용안내 및 알선, 기타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조치 등이다.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에 대한 상담 실적은 유관 상담기관 및 자체에서 상담한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등에 대한 한부모가족 상담 실적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한다(여성가족부, 201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10).

30)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청소년성문화센터는 '07년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현재 여성가족부) 소관 정부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16억원이 반영되었다. '07년 1월에는 운영계획수립을 위한 자문회의가 개최 되었고 2회에 걸쳐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청소년성문화센터설립추진단이 구성 되었고 '07년 4월 표준콘텐츠 및 운영 매뉴얼이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콘텐츠를 갖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07년에 전국16개 시도 단위에 16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 하였고, 여기에 기존 일부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던 참여형성교육관 5개소도 계속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08년에는 기존운영 시설 21개소와 신규시설 8개소를 합하여 총 29개소, '09년에는 신규시설 6개소 추가 설치로 인하여 총 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10년 추진방향으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3개소를 추가 신설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및 찾아가는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 지원으로 시청각 자료 등의 공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실무자 직급별 보수교육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그림 III-14] 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배치도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3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5년 46개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06년 100개소로 확대 설치되었다. 또한 지자체 매칭 펀드 방식 도입 및 지역사업으로 전환, 운영지역 확대에 따른 지역별대 상별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였다. '07년 150개소로 늘어나며, 설치대상시설의 확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등), '08년 185개소로 확대되고 농산어촌 운영활성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2009년 지자체매칭펀드방식, 부실 운영 아카데미의 폐쇄 조치로 지원 개소수를 178개소 축소·운영하였다.

'10년 전국 161개소로 운영되는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 4~6년 및 중등 1~2학년 대상으로 시설 당 40명씩 일일 5시간 내외로 운영되며,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지역협의체 및 지역자원봉사인력 개발·연계를 실시하고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 며, 수혜 집단으로의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 및 지역인적자원 으로 성장가능성에서의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운동을 실시하고자 한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그림 III-1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체계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ywa.or.kr>, 2010. 9. 30. 검색

32) 청소년공부방

청소년공부방은 종래에 단순한 학습공간만 제공해 주는 역할에 불과했던 기존의 마을 단위 공부방, 새마을문고를 보다 확대·발전시킨 것 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공부방은 지역 내 공공시설, 청소년단체, 종교 및 공공사회의 복지시설 등 기존 시설을 사용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 내의 기존 공부방 중 영세시설을 확대·보강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1개 소 당 사용면적은 25평 이상을 기본 규모로 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10년 현재 전국 385개소의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²²⁾하여 운영된다.

33) 청소년문화존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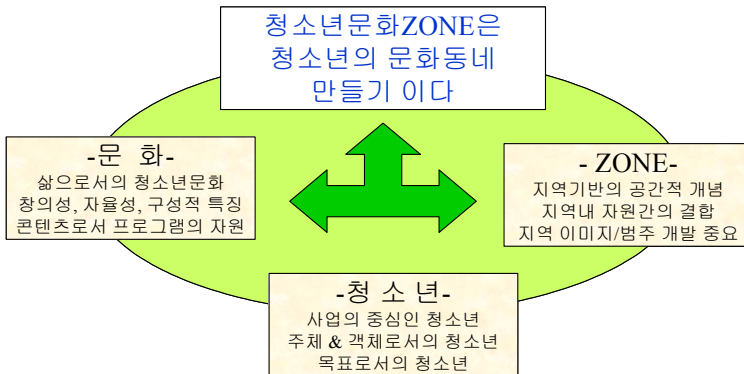
청소년 문화존은 중앙과 지방이 50:50매칭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며, 2004년 및 2005년에는 8개 광역시·도에서 운영 되었고, 2006년부터 11개 시·도로 확대되고 시범사업으로 5개 시·도를 지정하여 총 사업비 36억원 규모(2007년)로 운영되었다. 2008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청소년 문화축제를 지원하기위해, 기존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를 폐지하고 시·도별로 특성화된 대한민국 10대 청소년 문화축제를 운영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09년 청소년문화존은 횡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였고, 장소도 지역특성

22) '가'형은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나'형은 학습 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 중심으로 다양한 청소년 활동·복지 프로그램 지원함. 기타 '가'형, '나'형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형의 공부방 운영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함(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23) 문화ZONE의 지역적 범주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이나 대단위 지역이 아닌 특정한 시설, 공간을 거점으로 하는 주변 지역으로 설정하며 일상생활과 연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함(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나, '10년부터는 횡수²⁴⁾를 정하여 운영하고 장소는 기선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0년 청소년문화존은 전국 106개가 운영되며, 학교에서 학습으로 체험할 수 없는 실습위주 전문프로그램을 운영(교과활동과의 연계 강화 프로그램 운영)한다. 또한 과학기술단체, 대학, 문화기관, 산업체 등과 연계하고 전문가가 체험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특기·소질이 개발되고 개발된 소질이 장래 직업과도 연계되도록 유도한다(여성가족부, 2010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그림 III-16] 청소년문화존 운영체계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34) 청소년교류

중앙부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08년에 기존의 유럽 선진국 대상 체험 연수프로그램을 확대·발전시켜 독일, 영국,

24) 대표문화존 20회 이상, 시군구 문화존 8회 내외(월2회(단, 시군구 문화존은 월1회)이상 운영하되, 우천시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탄력적 운영가능)(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프랑스와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및 연수를 시행하고, 유럽 이사회 노스사우스센터와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기구인 유럽청소년포럼과 협의하여 스페인 '국제청소년대학'에 아시아 최초대표단으로 참가, 문화간 대화·유럽 청소년의 참여 및 권익증진 활동 등을 포함 선진 강점분야를 체험·연수 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기회가 제공되었다. 북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중국, 필리핀과 새로운 연수 사업이 실행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국가 간 청소년 국제교류는 '09년 30개국에서 '10년 총 33개국으로 확대 체결하였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²⁵⁾ 및 교류 현황으로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총 30개국 초청된 인원은 3,342명, 파견된 인원은 3,499명으로 총 인원 6,841명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10년 중앙부처는 국가간 청소년 정기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지방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한·중·일 청소년 교류를 통한 지역협력기반을 조성하고 2009년 우리나라 개최에 이어 2012년 개최 예정에 있다. 더불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해외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청소년 조사연수단, 국제회의·행사단, 해외테마체험단, 해외자원봉사단 등 4개 분야, 1,400명 지원을 실시한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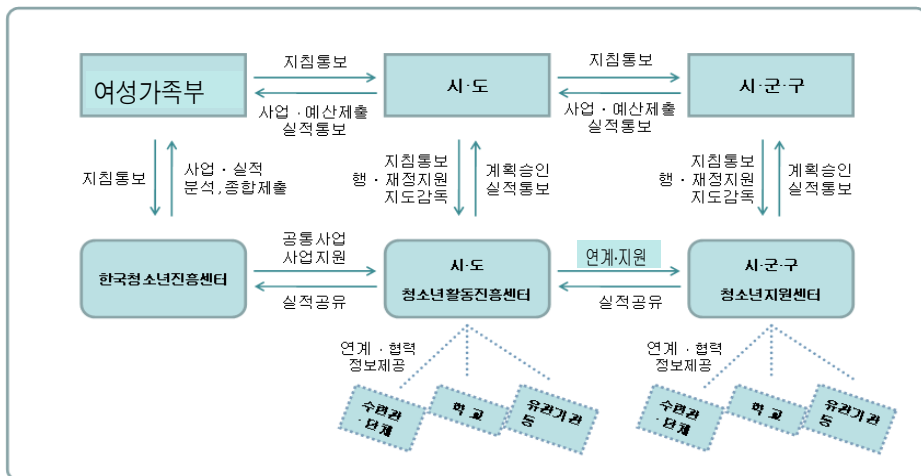
35) 한국청소년진흥센터(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²⁶⁾)

정부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외에 청소년 활동 전반에 걸친 정보·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청소년활동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

25) 1965년 한·말레이시아 청소년교류 약정체결을 통해 첫 국가간 교류 시작 2010년 3월 현재 30개국과 약정 체결하여 소요경비는 상호주의 원칙(초청국: 체제비, 파견측: 항공료)에 따라 초청·파견 실시

2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고유명칭 사용, 16개 시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양단위추진체계는'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법정단체인'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통합하여'한국청소년진흥센터 자원봉사부'로 재편하였다.(2006년3월) 아울러 지방단위추진체계는 근거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16개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칭하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병행, 청소년 활동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정보 제공 등의 기능 확대 등의 추진체계 개편(2006년6월30일)을 단행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그림 III-17]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지원·연계 체계도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 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36)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중앙부처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및 각급 학교 초·중·고·대학교의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지도자를 파견하거나 활동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08년도에는 2,000개의 청소년 동아리를 선정·지원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10년 청소년동아리 사업은 총 1,700개 동아리, 850백만원을 지원하고, 변경된 사항으로는 '09년 해당 문화존 발표 의무를 부여하였던 것에서 지역내 문화존 년 1회 이상 발표를 의무화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총괄운영기관을 자체 선정하고 청소년 관련기관 소속 동아리를 육성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0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37)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중앙부처는 고위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 전문적인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기존 인프라(아동시설, 쉼터, 정신보건센터 등)와 연계·조정하는 “국립중앙아동·청소년치료센터(가칭)”를 건립·운영함으로써 국가·사회적 차원의 아동·청소년 위기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08년~'10년, 총사업비 124억원(복권기금),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센터의 서비스 계획으로는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돌봄서비스 제공(입소), 치료·재활프로그램 개발하고, 기존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고위기 아동·청소년 종합서비스관련 국가 표준 및 인증체계 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38)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성가족부는 '10년 4월부터 만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2만4천원,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수강료 1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1:1매칭으로 최대 월40만원

(본인 20만원, 정부 매칭 20만원)까지 적립하여 준다. 동 사업은 민간 사업 자들과의 제휴로 검정고시학원에서는 학업진로를 상담하고, 자립적립금 사업자로 선정된 농협에서는 재정상담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자립가구의 우수사례 발굴 및 동 사업의 발전방안을 강구해 갈 계획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개요', 2010. 4. 7일자).

3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08.6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 이후, 08.12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친근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명칭을 개편하였다. '09.2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개소 지정, '09.7월 22개소 추가 지정되었으며, 경제위기 상황으로 증가하는 실직여성 등 구직희망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10.1월 5개소를 확대 지정하고, '12년까지 총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노동부, '10년도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안내, 2010).

'10년 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직업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취업연계 인원을 확대한다('09년 67,000명 → '10년 70,000명). 또한,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취업설계사를 확대('09년 360명 → '10년 539명)하고, 직장적응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확대('09년 3,880명 → '10년 4,620명) 실시한다(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 업무보고, 201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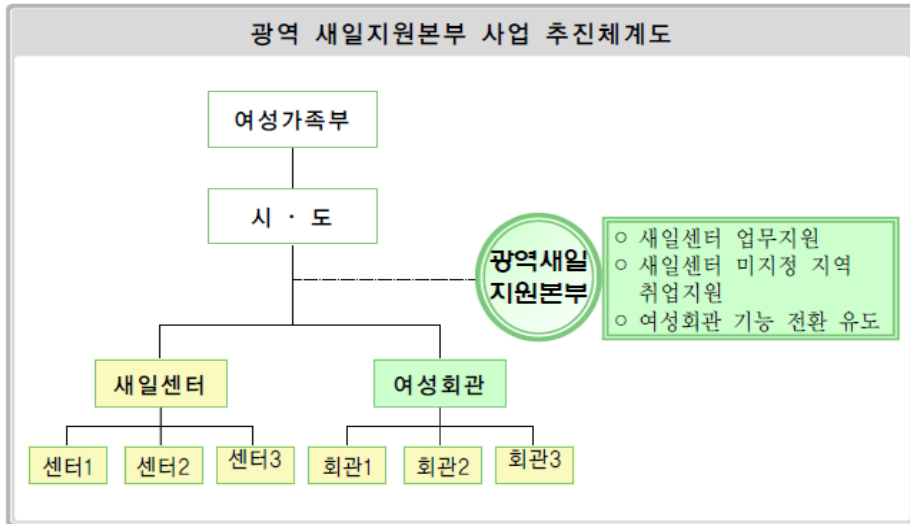
[그림 III-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체계

* 출처: 여성가족부·노동부(2010). '10년도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40)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기존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의 명칭을 변경, 기능을 확대 개편한 One-Stop 여성 취업지원센터로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주변에 설치·운영 중이며, '09년 5개소(시화, 창원, 오창, 광주, 익산) 설치·운영되었고, '09년 9월말 기준 13,237명 취업 지원하였다(여성부, 여성부 2009 업무보고, 2009).

아울러 '10년에는 시·도 단위 광역새일지원본부를 8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하고,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의 구직여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며 새일센터 종사자 교육, 취업지원 컨설팅 등 새일센터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센터 간 연계망을 구축한다(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 업무보고, 2010).



[그림 III-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추진체계도

* 출처: 여성가족부, 노동부(2010). '10년도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41) 여성취업지원 통합전산망

여성취업지원 통합전산망은 온라인상에서 여성취업지원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일자리 추진에 적합한 취업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하여 체계적으로 여성의 취업을 위한 경력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취업정보, 사내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 취업기관의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0년 업무보고, 2010).

42) 위민넷

여성을 위한 공익포털사이트로서, 여성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취업준비에서 취업성공까지 필요한 커리어 관련 정보 수집 등 정보 네

트위크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간 연대를 강화하고, 사이버를 통한 여성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009년에는 자기소개서 코칭, 이미지 메이킹 코칭, 취업·창업 가이드, 민간 채용정보, 생생 직업인 인터뷰, 포털 사이트 '커리어'와 연계한 채용정보 등을 통해 여성취업을 지원하였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사이버 강의실, 위기여성 지원을 위한 전문가·실시간 상담실, 키워 여성정책 정보, 특집기사/캠페인 등 공익 콘텐츠, 문학집배원, 오디오북 등 다양한 인터넷 여성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0년도에는 여성의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정보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클리닉, 취업창업가이드, 채용정보 등 커리어 콘텐츠의 품질 제고하고, 여성 취업·창업 교육 및 상담의 온라인화로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공익포털사이트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이버 강의실의 직업·직무관련 강좌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여성정책의 허브로서의 위민넷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1년 이후에는 공익포털사이트로서의 여성정보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정책의 메카로써의 여성정책 정보망 구축을 구축하고, 여성가족부 공익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허브(Hub)사이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포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강화 및 콘텐츠 운영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세상과 소통하는 위민넷을 운영할 것이다(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2010).

43) 여성회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으로써 사회적 지위향상과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주로 여성들에 대한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바자회, 합창단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점 사업으로는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과 취미교실 운영이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간병사, 조리사, 컴퓨터 등)은 여성들로 하여금 잠재 능력을 개발하게 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종이접기, 에어로빅, 노래교실, 북춤, 한글학당, 제빵제과, 고전무용 등의 취미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진도디지털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jindo.grandculture.net>, 2010. 9. 30. 검색).

44) 자립형 창업지원 복지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형 창업지원 복지자금 융자규모는 '08년 20억원 → '09년 30억원(200명) → '10년 40억원(27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운영된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2010).

```

graph TD
    A[보건복지가족부] -- "자금통보" --> B[농협중앙회]
    B -- "실적보고" --> A
    A <--> C[시·도]
    C <--> D[시·군·구]
    D -- "대여대상자통보" --> E[농협중앙회 영업점]
    E -- "대여내역통보" --> D
    E <--> F[읍·면·동]
    F -- "통보" --> G[대여대상자]
    G -- "신청" --> F
    B <--> E
    E <--> G
  
```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process of agricultural land rental, involving the following entities and their interactions:

-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Sends **자금통보 (Funding Notification)** to the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Associations.
 - Receives **실적보고 (Performance Report)** from the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Associations.
 - Interacts with **시·도 (City/Provincial Government)** through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Welfare Fund Lending Guideline Notification)** and **대여실적보고 (Lending Performance Report)**.
- 농협중앙회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Associations):**
 - Receives **대여취급 절차통보 (Lending Issuance Procedure Notification)** and **대여한도조치 및 등록(온라인) (Lending Limit Adjustment and Registration (Online))** from the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Associations' Business Point.
 - Interacts with the **농협중앙회 영업점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Associations Business Point)** through **대여취급 절차통보 (Lending Issuance Procedure Notification)** and **대여한도조치 및 등록(온라인) (Lending Limit Adjustment and Registration (Online))**.
- 시·도 (City/Provincial Government):**
 - Interacts with **시·군·구 (City/County/Gun District Government)** through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Welfare Fund Lending Guideline Notification)** and **대여실적보고 (Lending Performance Report)**.
- 시·군·구 (City/County/Gun District Government):**
 - Sends **대여대상자통보 (Lending Candidate Notification)** to the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Associations' Business Point.
 - Receives **대여내역통보 (Lending Record Notification)** from the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Associations' Business Point.
- 농협중앙회 영업점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Associations Business Point):**
 - Receives **대여대상자통보 (Lending Candidate Notification)** from the City/County/Gun District Government.
 - Sends **대여내역통보 (Lending Record Notification)** to the City/County/Gun District Government.
 - Interacts with **읍·면·동 (Eup/Myeon/Dong) (Township)** through **대여신청 (Lending Application)** and **대여 (Lending)**.
- 읍·면·동 (Township):**
 - Receives **대여신청 (Lending Application)** from the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Associations' Business Point.
 - Sends **대여 (Lending)** to the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Associations' Business Point.
 - Sends **통보 (Notification)** to the **대여대상자 (Lending Candidate)**.
 - Receives **신청 (Application)** from the **대여대상자 (Lending Candidate)**.
- 대여대상자 (Lending Candidate):**
 - Sends **신청 (Application)** to the Township.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45)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08년 12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14개소가 선정되었고, '09년 20개소가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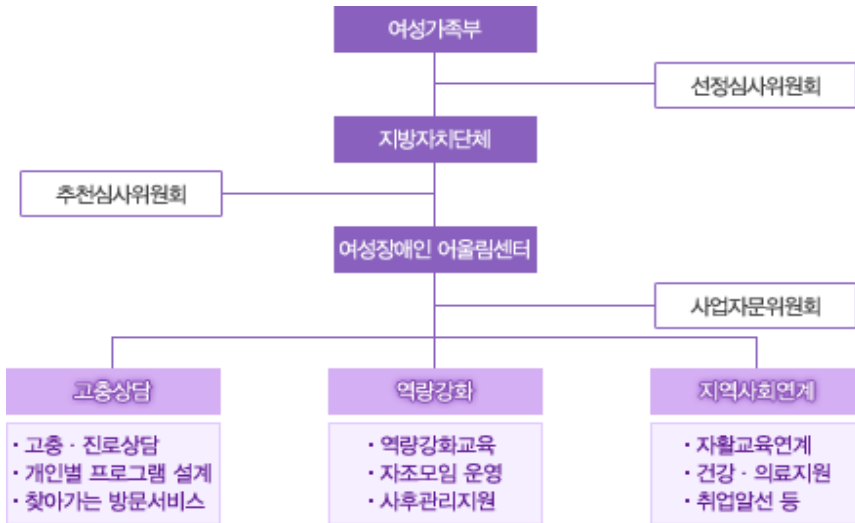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 법규사항을 충족하고, 인증 평가항목인 탄력적 근무제, 자녀양육, 가족지원제도 등 가족친화 경영 실행사항 등에서 일정점수(600점)를 획득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인증기업 확대를 위해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 기업 CEO 및 임직원 교육, 가족친화지수 측정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복지타임즈, '가족친화 기업에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http://www.bokjitime.com>, 2010. 5. 20일자).

'10년에는 모범적으로 가족친화 문화를 실천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 강화 및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대기업 등 참여의 확산을 유도한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업무보고, 2010).

46)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10년 여성가족부는 4월15일 서울 강남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별 1개소이상 전국 16개 시도에 20개소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여성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복지관을 대상) 지정하였다.

센터는 열악한 사회 환경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생애 주기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고, 장애여성 특성에 맞게 기초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기관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 건강·의료, 법률 및 취업알선 등 장애여성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지원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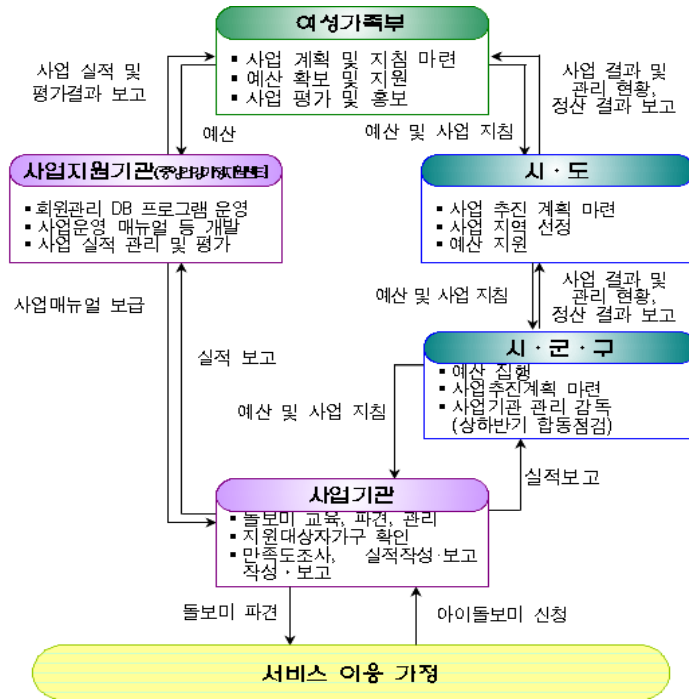


[그림 III-2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조직도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http://www.mogef.go.kr>. 2010. 9. 30. 검색

47) 아이돌보미 사업

아이돌보미 사업은 '06년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연계' 2개 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07년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본격 실시되었다. '08년 65개 사업기관 확대, '09년 4월, 전국 232개 시군구 확대 실시와 더불어 기관 파견 돌보미,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7만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7천4백여 명의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그림 III-22] 아이돌보미 사업 서비스 흐름도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09년 전국 확대 실시와 추경편성으로 사업인지도가 높아져 수요가 급증한 점을 고려하여 '10년에는 예산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사회적 일자리로서 아이돌보미 전문성 강화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강화와 더불어, 0세 아동(3개월~12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맞벌이가정에 월 정기 서비스(최대 1일 11시간 월 20일)를 신규로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안내, 2010).

48) 청소년증 사업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우대제도로 학생의 경우 학생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교통수단과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을 받고 있으나, 주민등록 발급이전

의 비학생의 청소년은 신분확인도 안되고 이에 따라 동 할인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의 경우도 학생과 동일한 신분증 역할 및 할인혜택을 주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제도를 도입하였다.

'03년 9월 청소년증발급 훈령을 제정(문화관광부)하고, 한국조폐공사와 청소년증 카드발급을 약정 체결하였다. '03년 10월 서울과 대전에서 청소년증 시범발급을 실시하였고, '04년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증 발급과 함께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정(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근거 마련)하였다. '05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시행되고 '07년 5월부터 청소년증 전산화발급이 전국적으로 실시, '08년 8월부터 청소년증 발급 알리미 제도를 시행, '10년 1월부터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발급시스템을 변경하였다.

중앙부처는 모든 청소년에게 신분확인,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제공으로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증 기능 다양화를 통한 발급 및 이용확대, 국·공립시설 및 민간시설의 청소년 우대제도 확대를 기본방침으로 추진한다(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2010).

2. 보건복지부



[그림 III-23] 보건복지부 조직도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조직도. <http://www.mw.go.kr>. 2010. 9. 30. 검색

1)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예방센터)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및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2) 아동상담소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아동상담소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설치하나, 사립상담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 연구소 등에서 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시·도에서 설치한 상담소는 상담조사, 판정지도, 일시보호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담조사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위한 전문적 판정과 더불어 심리요법, 사후지도, 위탁보호 등 보호지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 설치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담·조사의 기능에 치중하고 유료서비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동복지법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소 시설은 상담실(16.5제곱미터 이상), 심리검사·치료실(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 집단지도실(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3) 지역아동센터²⁷⁾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읍·면·동에 위치하여 아동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아동복지시설이다. 이곳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5대 영역 즉 생활지원, 학습지원,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빈곤 아동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들의 복지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표 III-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연령별 현황

계	미취학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교 등
87,291명	4,585명 (5.3%)	35,972명 (41.2%)	33,163명 (38.0%)	11,380명 (13.0%)	1,862명 (2.1%)	329명 (0.4%)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표 III-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연령별 현황

구분	계	기초생활 수급자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일반아동		
				소계	학교급식	
					지원대상	미지원대상
인원	87,291명	27,698명	26,797명	32,796명	14,461명	18,335명
비율	100.0%	31.7%	30.7%	37.6%	16.6%	21.0%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27) 아동복지법 제6조항1호 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보고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여 매개체로서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되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복지사업(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 지역복지사업(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 서비스), 지역사회조직사업(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 교육문화사업(아동·청소년기 능력교육, 성인기능교육, 어르신 여가·문화사업, 문화복지사업), 자활사업(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사회복지관 소개, <http://www.kaswc.or.kr>, 2010. 9. 30. 검색).

5) 정신보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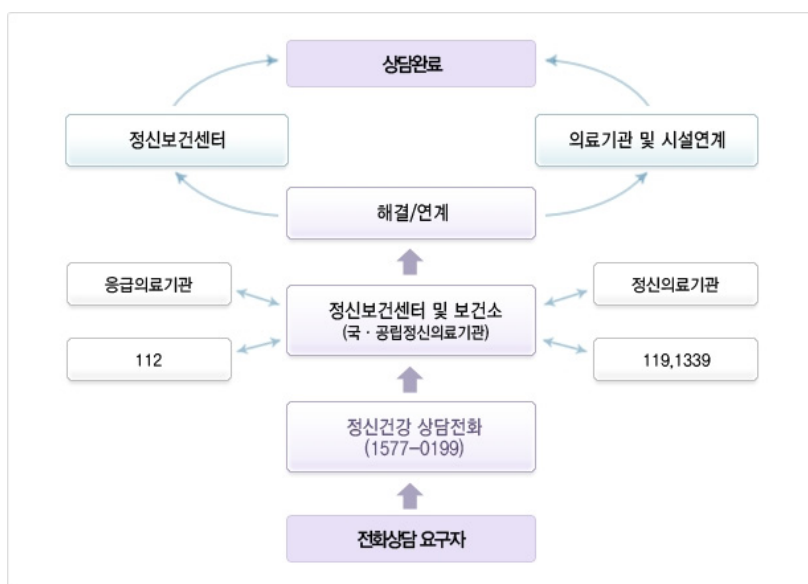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통합적 정신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정신보건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는 만성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전달체계 및 지지체계를 통하여 탈원화를 돕고,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일반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함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건강한 정신과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역할 및 기능에는 정신장애인 사례관리(가정 방문, 일상생활 및 약물 관리, 내소 상담 및 전화상담, 위기개입 및 응급 입원 지원 등), 정신장애

인 가족 지원(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 훈련(인지 재활, 사회기술 훈련, 정신건강 교육, 동아리 활동 등),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직업상담 및 평가, 관련기술교육과 훈련),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등이 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문제 및 고민을 상담하고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검사 및 상담, 전문치료를 시행한다. 서울 광역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인터넷, 전화 24시간 고민 및 자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III-24] 정신보건센터 지원체계도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정신보건. <http://www.mw.go.kr>. 2010. 9. 30. 검색

6) 알코올중독상담센터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된 알코올중독상담센터는 알코올 중독자, 문제성 음주자 및 그 가족에게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 교육과 체계적인

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알코올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알코올중독상담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보 제공, 예방 교육 및 홍보, 문제성 음주자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 유도, 지역사회에서의 여성 및 음주 문제, 산업장에서의 고용인의 음주문제, 음주운전 등의 피해예방교육 및 홍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역기능 가정의 자녀 및 배우자들의 고민 상담, 알코올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알코올 관리 집단 프로그램 운영, 알코올 문제에 관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및 관련물 출판 등이다.

알코올 문제가 있는 본인의 전화상담, 면접상담, 알코올 문제를 가진 가족으로 인해 문제를 가진 가족구성원 상담,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 및 각종 임상심리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7) 흡연상담센터

금연정책이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보건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차원의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가차원의 금연사업을 활성화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높은 흡연율과 최근 청소년과 여성의 상대적 흡연율의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흡연상담센터가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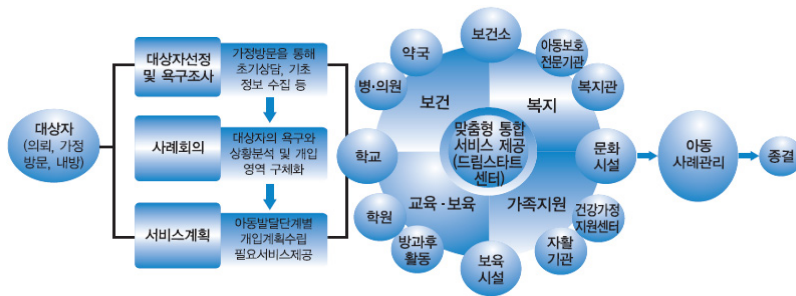
계층을 초월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금연상담 및 자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자료실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자문 인력 양성,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교육기관, 기업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기타 금연관련 사업 전개 등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금연지원자가 510명 이상인 사업장은 금연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8) 드림스타트사업

학대·방임아동의 증가 등 아동권리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문간호를 통한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20개소 보건소에서 '06년 4-12월까지 실시하였다. 이후 사회투자 역점과제중의 하나로 「희망스타트」를 발표('06. 8) 하였고, '07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16개 지역) 실시('07.1-12), '08년 드림스타트 시범사업(32개 지역)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2010).

[그림 5-2-1]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 체계도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그림 III-25]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 체계도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9) 시설²⁸⁾보호아동지원사업

(1)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

28)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종합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2008년 285개소에서 17,992명이 수용보호를 받았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양육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되어 동센터가 시·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및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등이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은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강당 또는 오락실(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도서실(열람석과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비치), 놀이터(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소·미끄럼틀·그네·모래밭 등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오락용구·도서류 및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아동양육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한 때에는 입소된 날부터 2주 동안 그 심신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육체적·정신적 정상생활이 될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0. 9. 30. 검색; 보건복지가족부, 2005 아동복지사업안내, 2005).

(2)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복지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은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강당 또는 오락실(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

야 한다), 도서실(열람석과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비치), 놀이터(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소·미끄럼틀·그네·모래밭 등 놀이기구)를 갖춘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별도의 설비로 심리검사·치료실(16.5제곱미터 이상), 직업훈련장(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훈련과목 및 그 과목 수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심리검사·치료용 설비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중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0. 9. 30. 검색;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3)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복지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되어 동 센터가 시·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및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가출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보호 등 보호조치)이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은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강당 또는 오락실(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도서실(열람석과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비치), 놀이터(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소·미끄럼틀·그네·모래밭 등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오락용구·도서류 및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아동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어린이 찾아주기센터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아동사진이 부착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활용, 실시간으로 송부한다.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여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아동양육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한 때에는 입소된 날부터 2주 동안 그 심신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육체적·정신적 정상생활이 될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일시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3개월이며, 1회에 한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중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0. 9. 30. 검색;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법).

(4)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아동직업훈련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은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아동이 상시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시설은 강당 또는 오락실(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도서실(열람석과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비치), 놀이터(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소·미끄럼틀·그네·모래밭 등 놀이기구)를 갖춘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별도의 설비로 심리검사·치료실(16.5제곱미터 이상), 직업훈련장(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훈련과목 및 그 과목 수에 따라 가

감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심리검사·치료용 설비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자립지원시설의 대상자는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4세 미만인 자이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은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한다.

자립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은 1년이며, 1회에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입소대상 연령이 24세 미만임을 감안하여 보호대상은 25세를 초과하지 못한다(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0. 9. 30. 검색; 보건복지부, 2005 아동복지사업안내, 2005).

(6)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아동전용시설은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아동전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공연법」·「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0. 9. 30. 검색).

(7) 아동복지관

「아동복지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관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복지관 시설은 강당(99제곱미터 이상), 오락실(50제곱미터 이상), 도서실(열람좌석수 20석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놀이터, 상담실(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 집단지도실(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0. 9. 30. 검색).

(8) 아동종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0) 가정보호사업²⁹⁾

(1) 가정입양지원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제적·제도적 지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매월 55만 1천원의 양육보조금과 연간 252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개정(2003년 2월 9일)을 통해 입양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국내 입양가정에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된다. 또한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2주간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2)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은 건전한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그 동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월 7만원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탁가정 발굴, 부모교육, 위탁아동 및 위탁 가정의 조사, 사후관리 등에 있어 사·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7월부터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 16,454명의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29) 가정보호사업에는 국내입양,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가정아동보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가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표 III-4> 가정위탁보호현황

(단위:명)

2005	2006	2007	2008			
			계	대리 양육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12,562	14,465	16,200	16,454	10,790	4,519	1,226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3) 소년·소녀가정지원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생활이 어려운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세대는 아래 2008년 말 현재 전국에 1,337세대, 2,058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우선 책정하여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학용품비·교통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통해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4) 공동생활가정³⁰⁾(그룹홈) 운영

2008년 말 기준 정부지원 그룹홈은 248세대로서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그룹홈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룹홈 생활 아동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퇴소 시 양육시설 퇴소아동과 같은 액수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30) 지역사회안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지도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주는 주거복지프로그램(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최근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체계가 요보호 아동에게 심리·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인식하에 시설보호 비중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그룹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종류에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추가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11)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드림스타트 사업과 함께 디딤씨앗통장(CDA)지원 또한 2007년 4월부터 추진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저소득 아이들이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도전정신을 갖고서 미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을 현재의 시설보호·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에서 단계적으로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09).

2009년 7월 기준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은 35,474명이며 이들의 총 적립금은 402억원(아동저축액 215억, 정부매칭지원액 187억)으로 아동 1인당 평균적립금은 125만원이다. 아동이 계속해서 30,000원씩 만 17년간 장기저축을 하게 되면 총 2,181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12) 아동급식지원

2008년 기준 급식지원 아동의 수는 452,321명에 달한다. 정부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 2000년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하여 아동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급식지원 확대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취학아동에 대해 조·석식,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조·중·석식을 제공 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사업 시작 이후 1만천여명의 결식 또는 결식우려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 방학 중, 토·공휴일 중식도 당시 교육부에서 당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급식을 실시하게 되어 여름방학에는 3만 천명에 대하여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였다.

겨울 방학에는 급식 지원 대상을 결식우려아동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확대하는 적극적 급식 지원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학기 중 급식을 받는 학생 중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7만 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이 지원되었다. 결식아동의 누락방지를 위해 2008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급식결정 권한을 부여 하여 지역사회에서 결식을 하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기타 종교단체 민간단체에서운영 하는 급식소에 대해서는 전원급식을 지원하도록 하여 급식이 필요한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방학 중 급식 지원 대상자조사 및 선정주체를 담임교사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결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10).

1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기존 시·군·구별 새울행정시스템(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31개 시군구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 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하여 구축하며, 2010년 1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사업별로 다른 소득·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

동 활용한다. 또한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각 지자체에 제공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업무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복지행정조직을 개편할 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행정내부망이므로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외부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내부 정보 및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09. 6. 9)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강화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한 번의 방문신청으로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안내, 상담, 연계하고, 사업별로 소득·재산조사방법 통일 및 공적자료 전산연계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며, 전국어디서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하면 관리망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복지대상자에게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측면에서는 복지대상자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여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을 정확히 선정하고, 1인 1계좌제, 급여지급과정의 임의조작 방지 및 실명확인을 통해 담당자의 횡령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점 등을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2010. 1. 4일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종합센터)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 10월에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의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고, 2001년 10월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체계를 갖추었다. 2004년부터는 소규모센터 23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2004년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치료·보호 및 가정복귀까지 중

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기능을 부과하여 시·도별 1개소씩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하였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치료실, 놀이실 등은 물론 보호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으며 아동보호를 위한 전체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2009년 현재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44개소). 현재, 보건복지콜센터(129)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4회선씩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사태에 대한 조사를 한다. 학대 상황이 심각한 경우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격리·보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학대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가족)에게 상담, 교육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의 재발방지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도 통계에 의하면 학대행위자의 84.5%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대행위 부모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학대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체계가 미흡하고 또한 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 교육 등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강제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 교육 등 전문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해 나아갈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15)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교사, 보건의료인, 상담소나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신고할 때에는 피해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와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야하고 신고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및 그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신고자 이외에 학대 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아동이 위험에 어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이유와 근거 또는 위급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를 확실히 해야 한다.

국번 없이 1391로 신고하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경찰서, 소방서 역시 아동학대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보건복지콜센터(129), 경찰서(112), 소방서(119)에 전화를 걸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네이버 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2010. 9. 30. 검색).

16) 보건복지콜센터(129)

정부는 2004년말 발생한 대구 장애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각종 생계형 사건·사고가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반성 하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집중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2005년 11월 1일부터 보건복지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보건복지와 관련된 모든 상담 및 지원요청을 One-Stop으로 통합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보건복지와 관련된 상담 및 지원요청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여러 지원제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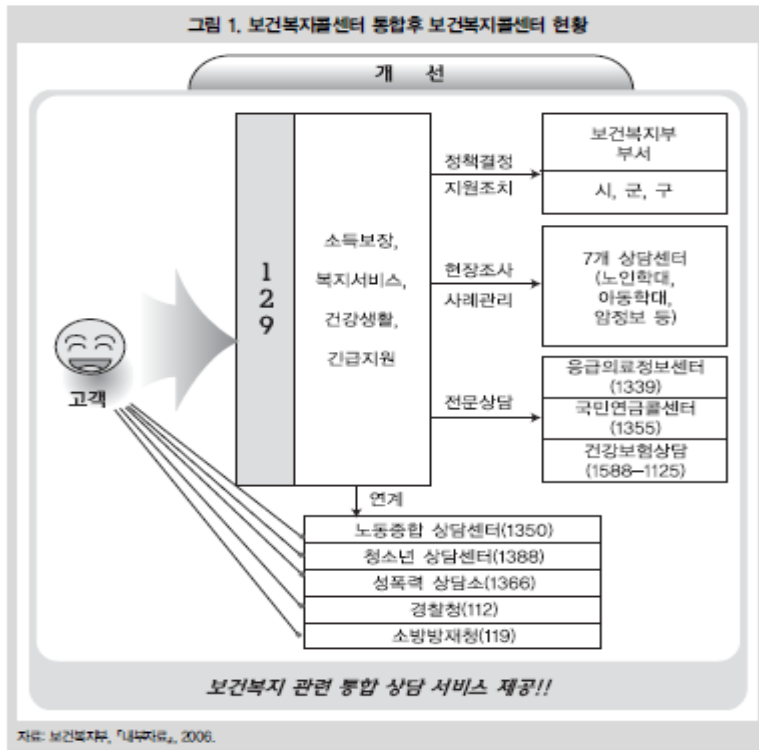
수요자로서의 국민들이 보건복지 관련정보와 상담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요 문의에 대한 직접상담 및 안내·중계 창구로써의 역할수행과 함께 시·군·구 및 읍·면·동 등 실제 집행기관의 주민생활 현장에서의 복지·보건 등 주민복지 지원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 관련 전화민원·상담을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전담 처리함으로써 정책부서공무원들이 정책·서업의 개발 등 기본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상담원의 신속·친절하고 표준화된 전화응대를 통해 보건복지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2009).

<표 III-5> 보건복지콜센터 주요상담내용

구 분	주요 상담범위
소득보장반	국민기초생활, 자활, 의료급여, 국민연금, 긴급복지지원(주간), 장애연금 등
민생안정지원반	일자리지원, 자영업자생업지원, 실직자지원, 저소득층생계지원, 교육·보육지원,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반	사회복지시설·법인, 푸드뱅크, 의사상자, 사회복지사, 노인복지, 장사, 인구정책, 모자보건,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청소년, 보육 사업, 장애등급판정 등
건강생활반	금연사업, 영양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암환자 지원, 예방접종, 모자보건, 구강보건,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보건의료인시험, 의료분쟁, 공공보건, 혈액정책, 생명윤리, 한방정책, 건강보험 등
긴급지원반	긴급복지지원(야간, 휴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정신질환자의료요양지원 등

* 출처: 보건복지부(2010). 2009 보건복지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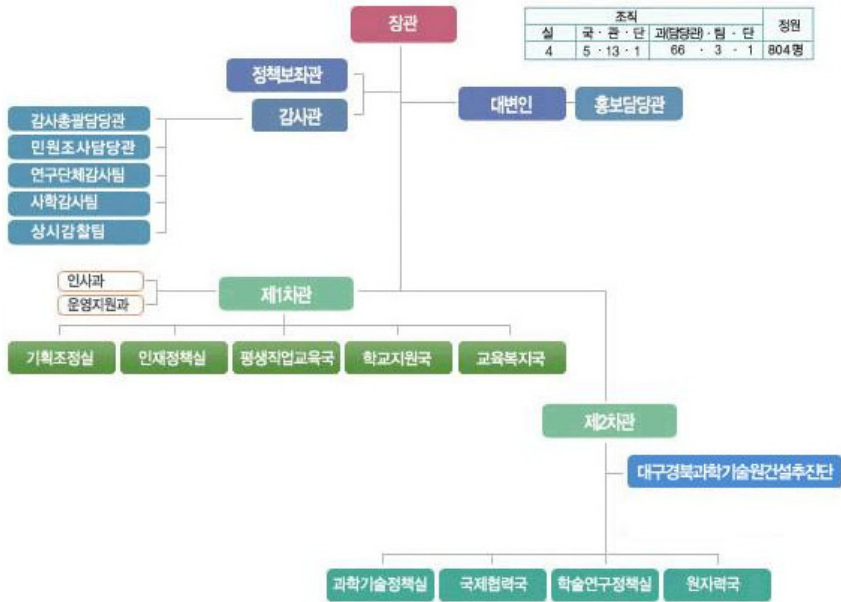


[그림 III-26] 보건복지콜 센터 통합후 보건복지콜센터의 현황

* 출처: 보건복지부(2006)

3.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크게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제1차관과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제2차관으로 구분된다. 본문에 정리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는 제1차관에 소속된 기획조정실,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국, 학교지원국, 교육복지국 전반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림 III-27]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도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2010. 9. 30. 검색

<표 III-6>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별 업무분장

담당부서		주요 정책 및 사업
기획조정실	교육시설담당관	- 초·중등학교 그린스쿨 사업 추진
인재정책실	학교선진화과	-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교육지원청 등), 방과후학교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추진
	창의인재육성과 학부모지원과	- 창의적 체험활동 - 방과후학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학부모 지원 정책의 수립·추진
평생직업 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지원, 초·중등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활동에 관한 사항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육과정기획과 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원, 국가 교육과정(초중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의 기본정책 수립,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운영지원과	- 대안학교제도 - 학교폭력, 배움터지킴이, 학교 내 CCTV 설치사업, Wee project
	학생건강안전과	- 급식지원
교육복지국	교육복지정책과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농산어촌 우수교 육성 사업,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정 교육지원, 자녀 교육비 통합지원 체제
	특수교육지원과	- 특수교육 종합계획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³¹⁾

1) 교육청 내 청소년상담센터

각 교육청에 설치되어 청소년들의 심리발달과 미래 가능성 성장을 돕고 집단 괴롭힘, 성폭력, 교내 외 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신고하고 상담하며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업 성적 문제, 성 문제, 정서장애 및 진로 결정 등의 청소년 문제를 상담하고 있으며 개별상담을 통하여 발견된 치료 대상자를 전문 치료 기관에 의뢰 또는 안내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유도하기도 한다.

31) 부처 홈페이지에서 본문 20개 항목을 위주로 주요 키워드로 검색하여 사업담당부서를 정리함.

교육청 내 청소년상담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청소년 자아 성장 집단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자아정체감 확립 도모,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개인 진로 검사를 통하여 청소년 성장 도모, 금연 및 약물 남용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통해 청소년 문제 해결,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역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부모에게 올바른 부모 역할 의식 함양, 거리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 유도,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 재직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다.

서비스 유형 및 활동은 내방, 전화, 사이버 상담(학교 폭력, 따돌림, 폭력 서클 등 학교 관련 문제 상담 및 진로, 성격 상담, 가정 문제 등의 개인적인 상담), 지능 검사, 진로 검사, 적성탐색 검사 및 이와 연계되는 상담, 적응 교육 프로그램(약물 문제, 성 문제, 폭력, 비행 문제 등 학생의 개별적인 문제 상담), 부모 상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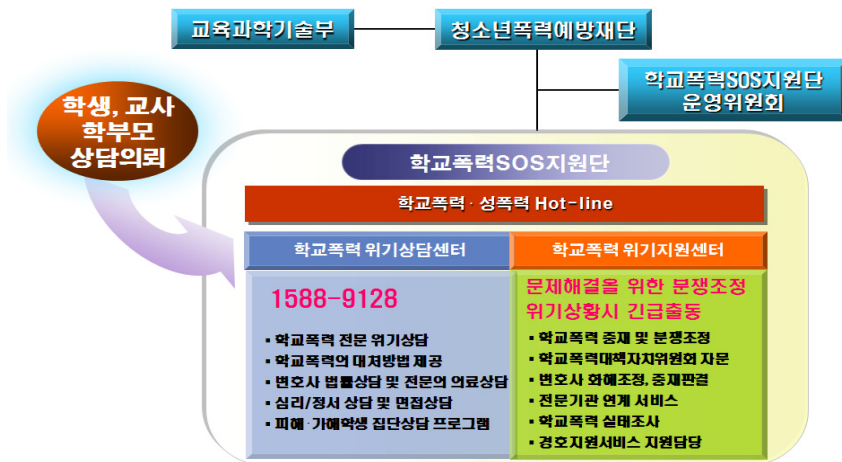
교육청 내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전문교사, 정신과 의사(정신건강 문제 상담 시) 등의 전문가가 활동한다.

2) 학교폭력SOS지원단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운영하는'학교폭력SOS지원단'은 2007년 6월에 개소하였으며,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와 학교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문제 해결과 위기상황 시 긴급 출동 등 방문위주의 문제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전문 위기 상담, 학교폭력 대처방법 제공, 변호사 법률 상담과 전문의 의료상담, 심리정서 전화 및 면접 상담, 피·가해 학생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는 학교폭력 중재 및 분쟁 조정,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자문, 변호사 화재 조정과 중재 판결,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 학교폭력 실태 조

사, 경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위지원센터³²⁾에는 청소년분야를 전공하고 학교폭력 분쟁조정 경험이 있는 분쟁조정 코디네이터와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였으며, 그 외에 상담사, 법률가, 의료전문가, 사회복지사, 장학사, 생활지도 경력 교원, 경호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위지원단을 조직하여 활동한다³³⁾.



[그림 III-28] 그림 학교폭력SOS지원단 체계도

* 출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홈페이지. 학교폭력SOS지원단 홍보안내문. <http://www.jikim.net>. 2010. 9. 30. 검색

학교폭력SOS지원단은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0~2014)'에 근거하여 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추진내용을 보면 지역교육청 학교폭력피해자 지원

32)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대구, 제주(청소년폭력예방재단 홈페이지, <http://www.jikim.net>, 2010. 9. 30. 검색)

33)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민·관이 발 벗고 나서 -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함께 「학교폭력SOS지원단」 서비스 운영'. 2007. 5. 29일자

팀 설치뿐만 아니라 2010년 3월부터 시도 단위에 학교폭력SOS지원단이 조직되는데, 지원단은 민간차원의 상담과 학교폭력피해자 지원팀의 의뢰를 받아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2010. 1. 3일자).

3) 학교사회복지사업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사회복지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인 동시에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이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방법)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2009년 7월 기준으로 학교사회복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학교 자체사업 5개교, We-start 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활동하는 14개교,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행되는 19개교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 관련 사업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308개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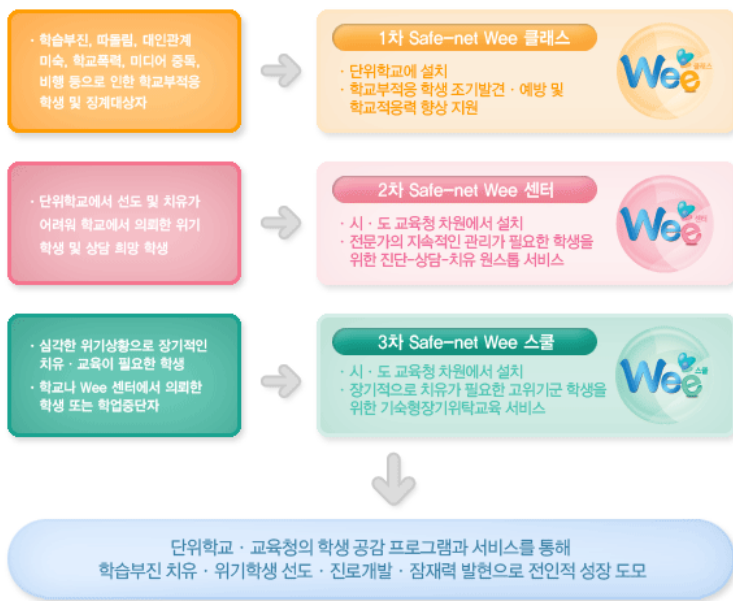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인 학교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 학생 상담인 개별개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집단개입, 가정방문 및 학부모 면담을 통한 가정개입, 학교 밖 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인 지역사회연계, 실태조사, 욕구조사, 연구 및 자원봉사 활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한국학교사회복지사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kassw.or.kr>. 2010. 9. 30. 검색).

2004년부터 중앙정부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지원 2008년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이 시행되면서 학교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업협회를 통해 2008년까지 전국

16개 시·도 96개 초·중·고교에서 활동하게 되었다(한겨레 칼럼 홈페이지. '학교 사회복지사 없으면 안 된다'. <http://www.hani.co.kr>. 2008. 12. 31일자).

4)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구축 사업

빈곤, 이혼, 학업부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로 2008년부터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³⁴⁾ 프로젝트를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III-29] 그림 Wee 프로젝트 체계도

* 출처: 위 홈페이지. <http://www.wee.or.kr>. 2010. 9. 30. 검색

34)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의 합성어이다.

Wee 프로젝트는 위기 청소년에게 단위학교-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 3차원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과 위기학생에게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2012년까지 5년간 총 1,069억원을 투자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는 위기학생을 약 4만명(고위험군 학생의 13%, 2008년 기준)에서 20만명(고 위험군 학생의 65%)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³⁵⁾.

(1) Wee 클래스

Wee 프로젝트의 1차 안전망인 Wee 클래스는 일반 초·중·고등학교 내에 부적응 학생 예방과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친한친구교실'로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하여 전문 상담교사의 집단상담, 체험활동, 진로교육, 특기·적성 개발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ee 클래스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1,53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적응 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전 중·고교의 50%인 2,530개까지 확대 설치될 예정으로, 2010년에는 1개교 당 25백만 원(상담실 개선 사업 2,000만원 포함)씩 총 8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2012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2008. 12. 15일자;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 Wee 센터

2차 안전망인 Wee 센터는 지역 교육청 내에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생활지원단'으로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진단-상담-치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Wee 센터에서는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등이 한 팀을 구성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도를 하며,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35)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2012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보도자료'. 2008. 12. 1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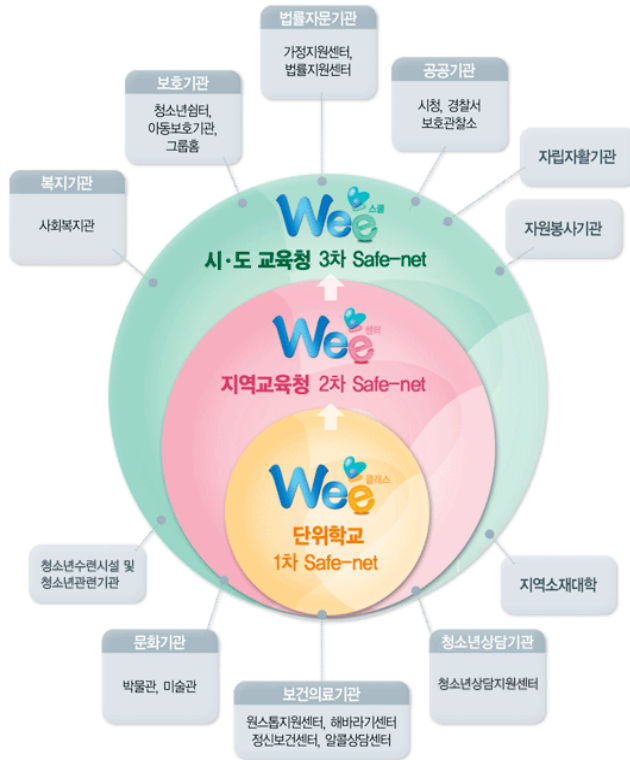
한편, Wee 센터에서는 국가차원의 멘토링 네트워크 체제인 '돈움♡디딤' 구축하여 멘토인 돈움이의 자발적 기부와 봉사로 나눔을 실천하는 범국민적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 이에 2009년 12월 'Wee, 우리가 희망이다!' 선포식을 개최하고, 2010년에는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와 위기학생과의 1:1 멘토링을 실시하는 '1만 Wee 멘토' 구축 및 위기학생 대상 국내외 인턴쉽을 운영할 계획이다.

Wee 센터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8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험에 노출된 학생을 중점으로 2012년까지 120개소로 확대하여 약 63만 명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에는 가정폭력, 학생미혼모 등 新(신) 사회적 위기대응을 위한 가정형 Wee 센터 '우리(Wee) 집'을 운영하고, Wee 프로젝트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권역별 융합 Wee 센터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3) Wee 스쿨

Wee 프로젝트의 3차 안전망인 Wee 스쿨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이 기속하면서 진로·직업 교육과 연계한 치료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장기위탁교육기관'이다.

2010년 9월 기준 국내에서 운영 중인 Wee 스쿨은 충남 아산의 충무학교(중학생, 정원 40명), 광주 돈보스코학교(고등학생, 정원 90명), 충북 진천 청명학생교육원(중학생, 정원 40명)이 있으며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마치면 원적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그림 III-30] Wee 서비스 네트워크

* 출처: 위(Wee) 홈페이지. <http://www.wee.or.kr>. 2010. 9. 30. 검색

5) 배움터지킴이 배치 및 학교 내 CCTV 설치사업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는 주로 퇴직한 교원·경찰관·군인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 등·학교 지도 및 취약 시간대에 학교내외를 순시·순찰하고, 담임교사 등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보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26.8%의 설치율을 보였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2010년부터는 일부 학교에 두던 배움터 지킴이를 모든 초등학교에 365일 방과 후 학교가 끝나는 시간까지 전면 배치하기로 하여, 5천44명의 배움터지킴이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배움터 지킴이는 교문에 새롭게 설치되는 안전등대(수위실)에서 상주하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도에는 학교폭력·성폭력·유괴·실종 등으로 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내 CCTV 설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CCTV는 학교 내 인적이 드문 위험지구에 설치되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는데, 2010년 6월에는 학생의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CCTV 관리자를 학교장이 지정하여 주간에는 교무실 또는 행정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2009년도에는 '놀이터·공원·학교 내 CCTV 설치'사업이 국정과제로 새롭게 선정됨에 따라 초등학교 CCTV 설치율은 2010년 3월 기준 59%이다. 2010년 9월에는 CCTV 미설치 초등학교에 전면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대상 총 14,499개소 중 연말까지 6,746개소(46.5%)에 설치를 완료하고, 2011년 이후에는 도시공원·놀이터 등 우범지역으로 CCTV 설치를 확대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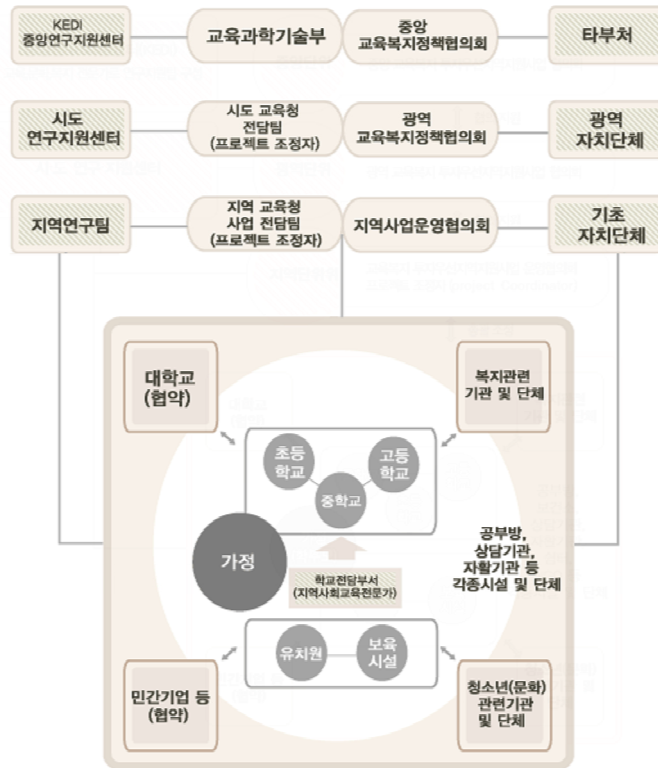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2014년까지 지자체 230곳에 1천1백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전국의 학교주변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공감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korea.kr>. 2010. 9. 30. 검색).

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해 학력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총체적 지원 즉, 학습능력 증진, 문화활동 지원, 심리·정서 발달 지원,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영유아 교육·보육 활성화 지원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 7개 부처 및 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준비기획단이 발족된 이후 단계적 사업 추진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 전략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3년 서울과 부산 총 8개의 시범사업 지역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100개의 시 지역 538개교(초304, 중230, 고4)를 지원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생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립하고 추진하며, 개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는 교육정책에 대한 사업 기본방향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등 전문적 연구와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연구지원센터(KEDI:한국교육개발원)가 설치되어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사업 운영의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현장의 컨설팅과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10년 방과후학교 현황 분석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지원하는 시·도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교육청마다 사업을 총괄·지원할 사업전담팀을 설치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복지전담부서를 마련하고, 교육복지사업 담당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배치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백서, 2010).



[그림 III-3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http://edusafetynet.kedi.re.kr/>. 2010. 10. 검색

7)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교육 활동이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방과후교실(초), 특기·적성 교육(초·중·고), 수준별 보충 학습(중·고)을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 추진하고 있다.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단위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아동·청소년백서, 2010).

2010년 6월 기준 전체 학교의 99.9%(11,226개교), 전체 학생의 63.3%(4,573,385명)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초등학교 학생의 참여율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교과 프로그램(59,743개)이 특기·적성 프로그램(118,055개)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으며, 내용별 강좌 비중으로 살펴보면 수학, 컴퓨터, 영어, 음악, 국어, 미술, 과학, 체육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과 프로그램의 강사는 현직교사가 55.2%, 외부강사가 44.8%이며,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현직교사가 8.1%, 외부강사가 91.9%로 외부강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현황이다. 또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의 1인당 월 평균 수강 강좌 수는 1.6개이며, 월 부담액은 약 35,012원인 것으로 파악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방과후학교 현황 분석, <http://www.mest.go.kr/>, 2010. 10. 검색).

방과후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사교육을 흡수하고자 하는 2010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 높고 다양한 심화보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저소득층 및 맞벌이를 위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은 '09년 4,172실에서 '10년 6,172실로 확대하여 약 7,000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 2010).

<표 III-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

수준 높은 교과 프로그램 (정규교육과정 보완)	가정과 같이 아늑한 돌봄 (Edu-Care)	체험중심 특기·적성 교육 (문화·예술·체육)
■ 수준별 교과 보충·심화 ■ 영어교육 강화 ■ IPTV등 첨단매체 활용교육	■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마련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간식·석식제공	■ 문화예술 강좌 확대 ■ 중고생 동아리 활성화 ■ 스포츠 활동 지원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학부모 코디네이터('09. 4,000명 → '10. 4,800명), 엄마폼멘토링('09. 2,400명, → '10. 2,880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한 민간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며, 자유수강권의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다('09. 35만명, 1,265억원 → '10. 39만명, 1,404억원 → '12. 49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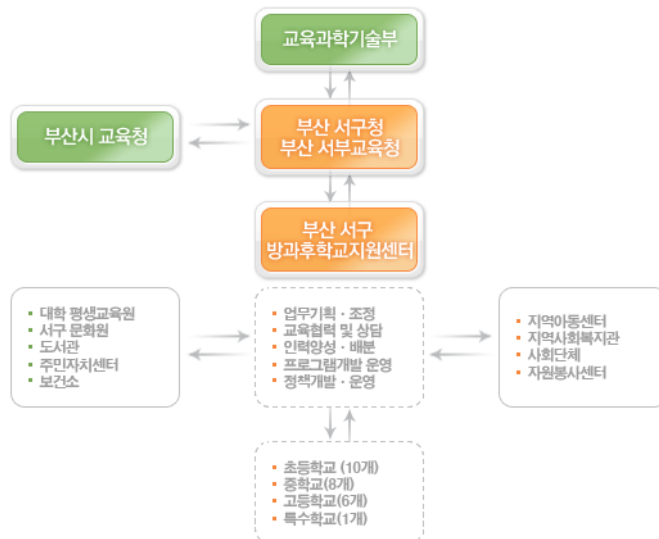
8)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각 기관·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지자체 단위의 각종 교육복지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제도적인 협력체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9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통합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선정하여 개소하였다³⁶⁾.

36) 2009년 시도교육청별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총 95개(본청16개/지역청79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운영 공모 계획에 선정되어 9월에 개소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10개소(인천 강화,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충남 공주, 충남 금산, 부산 서구, 충북 청원, 대전 동구, 경북 문경, 전북 정읍)로 심사결과에 따라 총 20억원의 지원예산 내에서 센터별 차등지원을 받았다.

방과후학교센터는 기초자치단체 내 설치(센터장 : 해당 기초자치단체장)를 권장하며,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역할을 분담, 지역단위 방과후학교 발전 전략을 공동 수립 추진토록 한다. 전문가와 실무자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기획·연구, 지역사회연계,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운용(정부부처의 각종 방과후 활동 관련사업(문화부, 복지부)의 통합 및 협력연계 권장), 우수 강사 확보, 단위 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 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공모계획, 2009;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선정결과, 2010).

주요 추진사업은 각종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확대 및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우수인력 발굴·양성·보급(교육 분야 고학력 여성 인력 활용 등),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 우수기관 참여 및 체험학습장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및 학교도서관 개방 등에 따른 각종 인력 지원, 지역사회 시설 개방 및 활용을 통한 각종 체험학습 및 캠프 공동운영, 지역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멘토링 지원 등이며 운영체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32] 그림 부산 서구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체계

* 출처: 부산서구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http://edu.seogu.busan.kr>. 2010. 9. 30. 검색.

9)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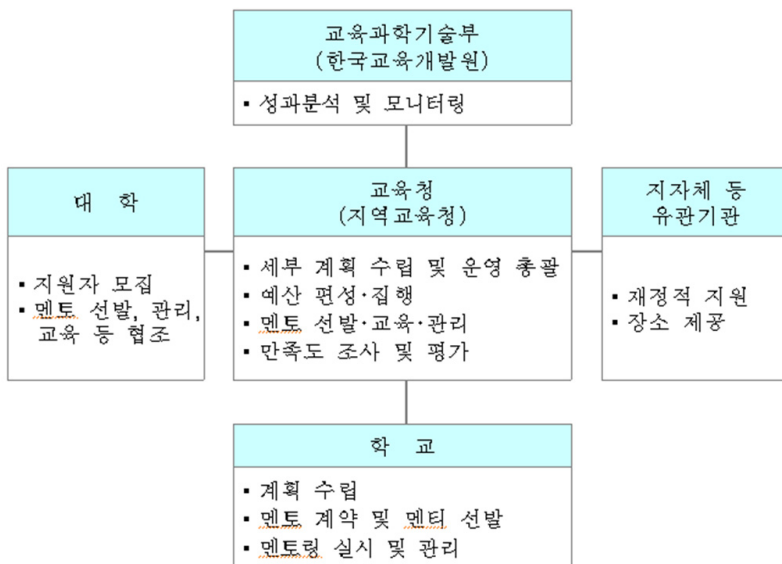
기존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비교과활동이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의 영역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 교육으로 초·중학교는 주 3시간, 고등학교는 주 4시간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 및 방법은 학교특성을 반영하도록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음악 수업은 오페라 관람, 법 수업은 모의재판 참관 등 지역사회와 기업·정부부처가 보유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면서도 관람 위주에서 교육 및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며, 대중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국제 SF 영화제 등) 강화로 국립과학관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부터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http://www.edupot.go.kr/>)'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업무보고, 2010).

10) 멘토링 이력관리체계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인성교육 강화 차원에서 2010년 대학생의 사회봉사와 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에 의학, 공학 등 전공연계 봉사·참여 과목 개설을 권유하고, 장학금 수혜자 등 우수 대학생들이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교과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멘토링 이력관리체계 구축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멘토링 이력관리체계가 구축되면 대학생 멘토의 교체, 학생 이사 등 환경변화에 상관없이 연속적인 교육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된다(교육과학기술부, <http://www.kofac.or.kr>, 2010. 9. 30 검색).

한편,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및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등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청소년, 학교부적응 및 학업 중단학생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도 추진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2012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보도자료, 2008. 12. 15일자).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교육청, 지자체, 대학(학교)이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멘토는 주 2~3회 방문(월 16시간 내외)을 통해 3~4명의 멘티를 그룹지도 한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멘토링 운영 학교는 2,065개교이며, 대학생 멘토는 9,050명, 학생 멘티는 33,665명이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생멘토링」 활성화 방안 모색'. 2009. 9. 1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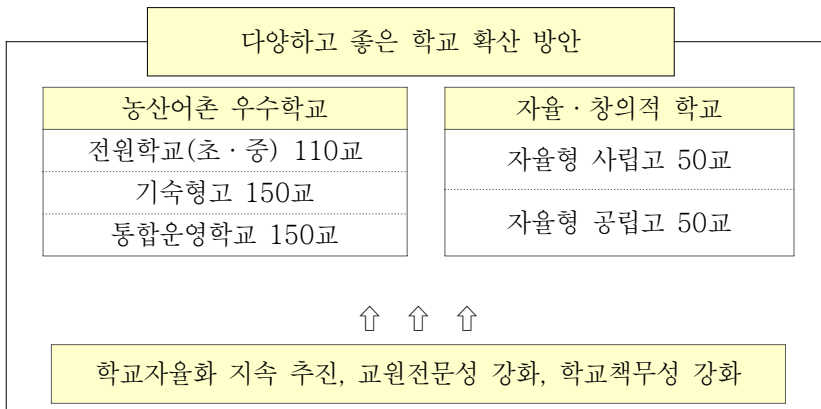


[그림 III-33] 대학생 멘토링 참여기관간 역할 분담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생멘토링」 활성화 방안 모색'. 2009. 9. 19일자

11) 농산어촌 우수학교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모델을 발전시킴으로써, 고교 단계에서 우수인재의 도시유출을 방지하고 과도한 교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04년 7개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07년에는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장초빙·공모제 도입, 교육시설 현대화와 각종 교육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교당 16억원을 지원하여 86개교에서 실시되었으며, 2009년에는 전원학교 110개교를 선정하고 사업비 790억원 교부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전국 모든 군으로 확대 - 지원기간을 단 년에서 3년간 분산지원으로 전환', 2007. 4. 4일자;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농산어촌 우수고' 중 우수학교 선정 - 04~06년 지정된 우수고 중 25학교 선정, 최고 2억원 지원' 2007. 12. 20일자).



[그림 III-34] 농어촌우수학교 사업방안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교 육성책으로 농산어촌 실정에 적합한 학교 모형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떠나는 학교'에

서 '돌아오는 학교'로 변모하는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으로 2010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 2009).

<표 III-8> 농산어촌 우수학교 2010년도 지원 내용

구분	학교 종류	2010년도 지원 내용
초·중	전원학교	■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원학교 110교, 570억원 지원 ■ ('11) 성과평가 이후 추가지정 및 우수사례 확산
고등학교	기숙형 고교	■ 첨단 기숙사 완비,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09년 지정된 68개교에 기숙사 신·증축비 지원 ■ 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재학생 기숙사비를 가정형편에 따라 경감 지원 ■ ('11) 타당성 검토 후 지정 확대
초·중·고	통합운영 학교	■ 자율학교 지정,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09) 100교 → ('12) 150교 확대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12) 교육지원청(구 지역교육청)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는 학교자율화 지속 추진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존의 관리 중심이었던 지역교육청을 2010년 9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경영컨설팅, 학부모교육, 학생상담·진로 컨설팅 및 교수-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선진형 학교현장 지원기관으로의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10월부터 1년간 부산 남부, 울산 강북, 충남 부여, 경기 군포·의왕 등 4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실효성이 낮은 관리·감독·규제 업무는 대폭 축소하고, 지역청·본청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학생·학부모·교사 및 현장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의 규모 및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교육

지원청의 4가지 조직개편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2011년부터 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2009년 11월 기준 총 180개인 교육지원청에서는 기존에 수행하던 행정관리적 사무를 덜어내는 대신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게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Wee센터 설치를 통해 학교 부적응학생 진단,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단위학교별로 개설하기 어려운 기초·심화과정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개설하여 운영한다.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2010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12개 교육지원청에 기초·심화과정이 개설되며, 약 800명의 학생이 수강할 예정이다.

학부모가 교육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11개 지역교육청에 학부모지원 사무 인력을 배치하여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고충 상담,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연수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교과협의회·학습동아리 등 학교의 자율장학 지원을 통해 교사의 수업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 2009;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지역교육청, “학교현장 지원기관”으로 거듭난다'. 2009. 10. 20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오는 9.1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달라진다', 2010. 6. 22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9.1.부터 “교육지원청”(구 지역교육청)이 문을 여는 가운데 이주호 장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현판식 참석', 2010. 9. 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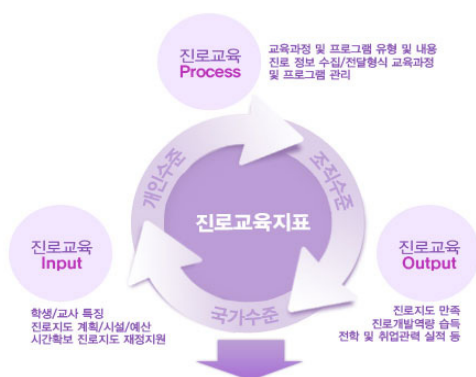
13) 직업교육 선진화-진로정보센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 국민의 생애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에 개소한 진로정보센터는 2009년에 종합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운영을 비롯해 사이버상담 제공, 진로교육전문가 연수 및 연계지원, 직업흥미검사개발, 전문계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이버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진로교육지표

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진로정보센터 운영 2009. <http://www.krivet.re.kr>. 2010. 9. 30. 검색).

정부는 2010년 직업교육 선진화 사업의 맥락에서 초·중·고 학생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교사용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교육 중심의 학교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을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지자체·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별로 진로·적성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지자체·경제단체 및 관련 부처 등과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자원(경력단절여성 등)을 활용한 '진로교육도우미(진로코디네이터)' 양성 및 배치와 예비교원 양성과정(교·사대)에 진로교육 관련 과목 개설을 확대하여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 2009).



[그림 III-35] 진로교육지표의 이론적 모형

* 출처: 커리어넷 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careernet.re.kr>. 2010. 9. 30 검색

14)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2012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의 핵심 과제로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1,500개 증설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유치원 과정 장애 유아의 50%(1,626명)가 특수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므로 만3세 미만 장애 영아 무상교육 및 유치원·고교단계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장애학생이 2004년 3,610명에서 2008년 10,227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을 반영하여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을 2007년 5,753학급에서 2012년 7,253학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책으로 초·중등 단계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4,751억원을 투자하여 장애학생의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체계 구축,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의 교과지도능력 향상,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장애학생의 개별 수요에 맞는 치료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2012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2008. 12. 15일자).

2010년에는 전국 150개의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만5세 유아와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특수·일반학교에 특수학급 800개를 증설할 예정으로, 2010년 4월 기준 일반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은 4,682개, 일반학급에 통합 배치된 초등 특수교육대상자는 5,313명이다(교육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정기국회 보고자료(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0).

1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09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사도교육청 위탁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중앙단위의 종합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탈북청소년 교육기관의 허브이다.

2010년 3월부터는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포털 사이트와 상담콜센터 운영을 시작하여 남북한의 언어, 문화, 가치관, 교육과정의 차이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선택에 고민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포털 사이트에는 시·도교육청, 학교, 민간교육시설 등에서 탈북 청소년의 학습과 적응을 돕기 위해 개발한 다양한 학습용 교재, 동영상 및 북한·통일교육 자료 등 총 150여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 3. 31일자)³⁷⁾, 전국 탈북청소년교육지원기관의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다. 상담콜센터에서 전화상담은 주 5일(오전 9시~오후 6시), 24시간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탈북 청소년 교육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사가 교육정보, 진로·진학지도, 심리 및 적응상담 등 탈북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상담을 지원한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탈북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선택 고민 끝! 3월 31일부터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포털 사이트와 상담콜 서비스 지원 시작'. 2010. 3. 31일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hub4u.or.kr>, 2010. 9. 30. 검색).

37) 학습용 교재 56종, 각종 논문 및 보고서 46종, 매뉴얼 및 연수자료 15종, 동영상 14편 등이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 3. 31일자).



[그림 III-36]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추진체계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hub4u.or.kr>. 2010. 9. 30. 검색

16) 탈북청소년 학력인정 대안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업무계획으로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원과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통한 초기적응교육을 강화하고, 1:1 멘토링 및 상담, 부진 과목 보충교육, 진로·직업교육 등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지원을 내실화하며, 대안학교 설립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은 2009년 7.6억원에서 2010년 8.3억원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적응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9년 10월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으로 대안학교 설립기준이 완화되고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2010년 여명학교가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개교하였으며, 2009년 7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201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 2009;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탈북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선택 고민 끝! 3월 31일부터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포털 사이트와 상담콜 서비스 지원 시작', 2010. 3. 31일자). 탈북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대안학교는 다음과 같다.

<표 III-9> 전국 탈북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대안학교

대안학교명	지 역	내 용
여명학교	서울 중구	'04. 9 개교(학력인정 인가) 10대 후반~20대 초반
두리하나국제학교	서울 서초	'09. 9 개교 초·중 대안학교
셋넷학교	서울 영등포	'02. 4 개교 10대 후반~20대 초반
하늘꿈학교	서울 송파 충남 천안	'03. 3 개교
제천간디학교	충북 제천	'97. 3 개교 초·중고 통합대안학교
아힘나평화학교	경기 안성 전남 보성	'96. 3 개교(비인가) 중고 통합 기숙형 대안학교
한울학교	경기 남양주	?
한꿈학교	경기 의정부	'04. 4 개교(비인가) 기숙형 대안학교
새날학교	광주 광산	'07. 1 개교(학력인정 인가) 초·중고 통합대안학교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hub4u.or.kr>. 2010. 9. 30. 검색

17)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및 자녀 교육비 통합지원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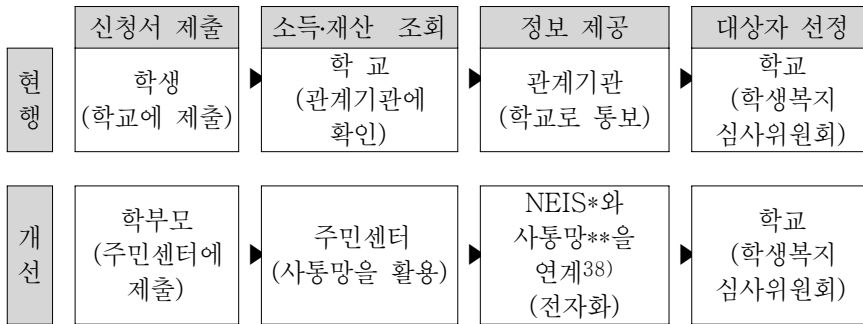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에서는 2008년 기준 저소득층 학생의 77%(62만명), 저소득층을 제외한 농산어촌학생의 69%(81만명)에게만 지원되던 급식비

를 2012년까지 예산 20,230억원을 투자하여 100% 확대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9년 기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91%(73만명)가 급식비를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0년 96%(77만명), 2011년에는 저소득층 학생 80만명 전원으로 확대하고, 농산어촌학생 117만명은 2012년까지 전원 무료급식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 2009;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2012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2008. 12. 15일자).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급식비를 포함하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학생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 등의 항목으로 총 8,851억원의 2009년 예산을 수립하고, 2009년 2월부터 저소득층 학교 교육비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기존에 저소득층 학생이 사업별로 신청하고 각각 지원받았던 학교학비, 급식비,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일괄 신청하고 지원받는 '자녀 교육비 통합지원 체제'로 2011년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가 완료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4가지 교육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자녀 교육비 통합지원 체제 도입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자가 받았던 절차의 불편함과 신분 노출로 인한 낙인감 해소에 기여하며 단위학교의 행정업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정부의 공교육 대책', 2009. 7. 25일자;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학비 걱정 뚝! 저소득층에 8851억 지원'. 2009. 2. 28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시 대상 학생 노출 문제 해소된다'. 2010. 8. 26일자).



[그림 III-37]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전·후 비교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시 대상 학생 노출 문제 해소된다'. 2010. 8. 26일자

18) '그린스쿨'

정부의 '녹색 New Deal'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인 친환경 그린스쿨 조성 사업은 획일적이고 노후한 기존 학교를 생태녹지 공간 조성, 빗물이용 시설,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기법을 적용한 자연 친화적이고 현대적인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그린스쿨을 조성하고, 유해성분을 최소화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09년 5월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 52개교에서 그린스쿨 사업이 추진 중이며(사업비 196,554백만 원) 2012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하여 초·중등 200개교를 전면 개보수할 계획에 있다.

친환경 그린스쿨 사업의 추진으로 학교가 환경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게 되어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원과 같은 편안한 휴식 공간이 제공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38)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학적 등 교육 행정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교육과학기술부, '03.3부터 운영 중)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 :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보건복지부, '10.1부터 운영 중)

하고, 구 도심지 등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주민들의 교육·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2010. 9. 30. 검색).

그린스쿨의 2010년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 2010).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시 각 교과(목)별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환경과 녹색성장' 교과서를 개발한다.

<표 III-10> 그린 스쿨 유형(예시)

학교 유형	주요 사업 내용
생태학교, 자연 친화형 학교	■ 수목 조성, 학교 옥상 정원화, 생태 연못 조성, 친환경 포장재 개선,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길 조성 등
에너지 절감형 학교	■ 지열 및 태양열 이용 냉·난방 및 급탕 설비, 빗물 이용시설,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 에너지 절약형 창호 교체 등
친환경 소재형 학교	■ 친환경 외장재·도색, 천연형 벽지·바닥재·내장재 등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녹색성장 연구학교'를 통해 학교 스스로 차별화된 녹색교육 과정·방법·자료 등을 연구하여 적용하고, 지역 내 다른 학교로 확산하여 '09.3~'11.2동안 47개의 학교에 운영(시·도별 초·중·고 각 1개씩, 대전은 2개)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연구학교'를 통해 학교 스스로 차별화된 녹색교육 과정·방법·자료 등을 연구하여 적용하고, 지역 내 다른 학교로 확산하도록 한다.

일반·예비(교·사대) 교원들의 녹색성장 관련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여 교과별·단계별(초·중·고) 맞춤형 녹색생활 교육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교장(감)·1급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이해 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환경인 학교도 녹색생활 교육에 적합하도록 노후한 초중고부터 친환경·체감형으로 개선하는 '그린스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4. 문화체육관광부

<표 III-11> 문화체육관광부 부서 및 업무내용

담당부서	업 무 내 용
게임산업과, 문화예술교육과, 전통예술과, 체육정책과, 장애인문화체육과, 국제체육과, 체육진흥과, 관광정책과, 종무1담당관, 문화예술위(문화나눔팀), 영상콘텐츠산업과, 저작권정책팀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게임여가문화체험관 구축 및 운영, 게임과몰입상담센터 운영 지원, 장 애학생e스포츠대회, 학교예술강사 지원, 아동복지 시설 보호아동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청소년 국악 캠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스포츠바우처사 업, 장애청소년 생활체육활동지원, 전국장애학생체 육대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제1회아시아청 소년대회, 한중청소년 체육교류, 한일청소년 스포 츠교류, 세계청소년태권도교류캠프, 기본종목 꿈나 무 육성, 청소년관광활성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 캠프, 사랑티켓제도 운영, 청소년저작권교실, 서울 국제청소년영화제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재구성.

1)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업(2004년 40억원, 2005년 48억원, 2006년 75억원, 2007년 75억원, 2008년 46억원)으로,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문화 소외지역 주민과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군부대, 교정시설,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총 62억원을 지원하여 182개 단체가 1,974회의 순회사업을 실시하였고, 총 349천여 명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문화관광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09).

2010년에는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하여 소외 아동·청소년, 노인, 군장병 및 재소자 등(19,000명, 770개소)에게도 지원할 방침이다(문화관광체육부,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주요업무계획, 2009).

<표 III-12>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실적(2009)

(단위 : 명, 회)

구분	세부사업명	관객수	순회회수
소외지역 문화순회사업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87,171	637
	농어촌순회사업	74,302	293
	임대주택 순회사업	10,309	52
	교정시설 순회사업	15,160	64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순회사업	10,986	61
	군부대 순회사업	60,830	155
	벽지 청소년을 위한 초·중고요순회사업	23,110	105
	중소기업 근로자 순회사업	7,080	21
	기타사업	7,489	20
	소 계	296,437	1,408
장애인 문화접근성 확대지원사업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37,626	320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14,656	246
	소 계	52,221	566
운영비			
합 계		348,668	1,974

* 출처: 문화관광체육부(2010). 2009 문화정책백서. 서울: 문화관광체육부.

2) 문화 · 체육 · 관광 바우처 사업

(1) 문화바우처 사업

문화바우처 사업은 2005년에 당시 문화관광부가 국고 4억원을 투입하여 시범 사업으로 최초로 시행하였다가 2006년 26억원(국고 20억원, 기금 6억원), 2007년 20억원(기금), 2008년 27억원(기금), 2009년 40억원(기금)이 지원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 제약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여자에게는 보조인력 지원, 티켓수령, 좌석안내, 휠체어 및 수화통역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 사업운영 개선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였다.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프로그램 관람 비용을 일 년에 5만원 한도 내에서 직접 보조한다. 2008년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연간 예술행사 관람횟수는 0.55회로 국민 평균 4.88회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시작된 문화바우처 사업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67억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에 회원 가입하여 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을 예매 후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프로그램 등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만큼 최대 10만원에 해당하는 문화생활이 가능하다. 그간 문화바우처 사업은 관람비 지원 외에도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이거나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 거주자를 위하여 버스 및 식사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여,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왔다.

이번 도서구입의 지원 확대는 중증장애인이나 산간벽지 거주자 등 아예 외부이동이 어려워 관람이 힘든 정책수혜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안 좋은 어르신을 위하여 도서목록에 오디오북을 포함하였다(문화관광체육부, 보도자료, '문화바우처로 마음대로 골라본다', 2010. 8. 4일자).

<표 III-13> 문화바우처 지원 실적(연도별/대상별, 2009)

(단위 : 명)

연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일반	동반자	계
2006	78,528	24,834	6,597	17, 942	35, 653	164,554
	47.7%	15%	4%	10.9%	22.4%	100%
2007	85,176	19,732	3,887	15,299	26,962	151,076
	56.4%	13.1%	2.6%	10.1%	17.8%	100%
2008	117,770	26,874	4,908	32,396	35,950	217,898
	54%	12.3%	2.3%	14.9%	16.5%	100%
2009	144,331	31,571	8,396	56,011	55,970	296,279
	51.3%	12.4%	2.86%	14.6%	18.7%	100%
계	425,805	103,011	23,788	121,648	155,555	829,807
	51.3%	12.4%	2.86%	14.6%	18.7%	100%

* 출처: 문화관광체육부(2010). 2009 문화정책백서. 서울: 문화관광체육부.

<표 III-14> 문화바우처 지원 실적(장르별, 2009)

(단위 : 건)

연도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무용	영화	문화 일반	전통	계
2006	369	266	154	99	28	284	89	51	1,240
	21.7%	21.5%	12.4%	8%	2.3%	22.9%	7.2%	4.1%	100%
2007	280	362	151	80	90	203	70	76	1,312
	21.3%	27.6%	11.5%	6.1%	6.9%	15.5%	5.3%	5.8%	100%
2008	476	571	193	62	93	256	84	85	1,820
	26.2%	31.4%	10.6%	3.4%	5.1%	14.1%	4.6%	4.7%	100%
2009	628	811	351	127	96	289	172	121	2,595
	24.2%	31.3%	13.5%	4.9%	3.7%	11.1%	6.6%	4.7%	100%
계	1,653	2,010	849	368	307	1,032	415	333	6,967
	23.7%	28.8%	12.1%	5.2%	4.4%	14.8%	5.9%	4.7%	100%

* 출처: 문화관광체육부(2010). 2009 문화정책백서. 서울: 문화관광체육부.

(2) 스포츠관람 바우처 사업

'스포츠관람 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10만원(50%), 프로스포츠 4개 단체 8만원(40%), 수혜자 2만원(10%) 씩을 부담해 4인 가족이 분기별 1회 이상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간 20만원 어치의 스포츠관람권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4개 프로스포츠가 참여한다. 다만,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는 지정석은 구매할 수 없고 일반석만 가능하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재원이 5억원으로 한정됐다. 10월4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또는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 뒤 신한카드사를 통해 스포츠관람 카드를 발급한다.

내년부터는 관련예산을 더 확보하고 관람종목을 핸드볼, 씨름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스포츠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

다(스포츠월드, '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 위해 스포츠관람 바우처 시범사업 시행', <http://www.sportsworldi.com>, 2010. 9. 27일자).

(3) 여행바우처

여행을 자주 가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위하여 정부가 국내여행경비 중 일부를 부담해 주는 제도로써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가 폐지되고, 2010년에 들어서 다시 기준이 재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월소득 212.5천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여행경비의 50-30%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지원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최고 15만 원까지이다. 주관기관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민관광상품권팀(02-757-7488)이다(두피디아 두산백과).

문화관광체육부는 7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2010 여행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이번 여행바우처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월소득 212만5000원 이하)에게 8~10월 3개월 간 국내 여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30~50%(최대 15만원)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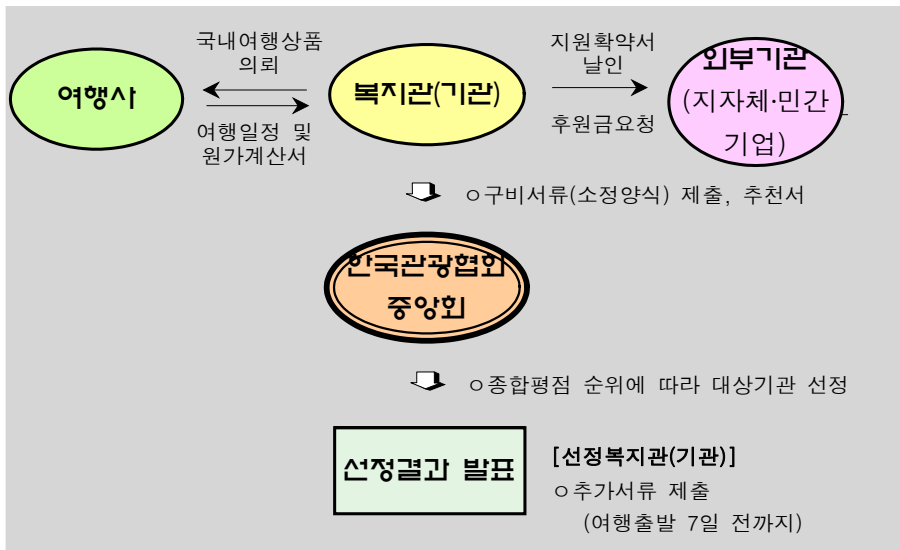
또 중앙회는 중앙회의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 가입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화부 지원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2010 여행바우처'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철도·항공 등 단순 대표대행과 사치상품(골프 등)을 제외한 모든 국내 여행상품에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자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추리고 16개 시·도 거주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안배를 할 계획이다. 약 5000~6000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Daum 아고라 홈페이지, 정책토론방, <http://agora.media.daum.net>, 2010. 9. 30. 검색).

(4) 복지관광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타(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국내 여행기회 제공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복지관광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아동·청소년(한부모, 조손가정 포함), 노인, 장애인 및 기타(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등) 대상자로 '05~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복지관광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국내여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여행프로그램 대상별 특성(주제)에 맞는 여행프로그램을 여행사 및 프로그램 전문가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여행기간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으로 구성되고, 여행기간은 4~10월중(단, 7.16~8.15 성수기 제외)이다.

신청 자격은 전국 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로 여행사와 여행프로그램 구성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한다(문화관광체육부, 『2010 복지관광』 지원신청 안내, 2010).



[그림 III-38] 복지관광사업 신청절차

* 출처: 문화관광체육부(2010). 『2010 복지관광』 지원신청 안내.

문화관광체육부는 2001년 시작한 복지관광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6,000여명의 단체 또는 개인별 국내여행을 지원해왔고, 올해는 총 5,3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자비로 여행을 가기 힘든 국민들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매년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으로 그 수혜범위를 꾸준히 넓혀왔다.

특히 2010년 사업부터는 대상기관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숙인시설, 미혼모시설,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생활시설'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부서와의 협력체계도 적극적으로 구축한다(문화관광체육부, 보도자료 '독거노인, 조손 가정 아동 등 소외 계층에 여행 지원', 2010. 2. 19일자).

'2010 복지관광 특별행사'로 독거노인, 아동 등 총 706가구 905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가을철 특별행사'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한부모가정과 외국인등록증 을 소지한 외국인근로자 약 300여명에게 관광기획이 제공될 예정이다(문화관광체육부, 2010 복지관광 지원신청안내, 2010; 한국관광협회중앙회홈페이지, <http://www.nanumtour.or.kr>, 2010. 9. 30. 검색).

3)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간의 업무협약 체결(2009. 3. 3)에 따른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대상자들에게 문화감수성 및 자기 이해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과후 돌봄 기능을 병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9년 시범사업으로 16개 시도 운영기관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92개 기관을 선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1,253명의 아동·청소년들이 교육에 참여한 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이 사업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세대를 문화로 따뜻하게 돌보고 용기를 주는 '부처 협력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모델'로 정착시키고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I-15>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별 현황(2009)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기관수 (개)	4	6	6	6	7	6	6	7	6	5	4	6	6	6	5	6	92
학생수 (명)	50	78	93	89	10	90	96	91	97	53	39	76	77	84	57	83	1,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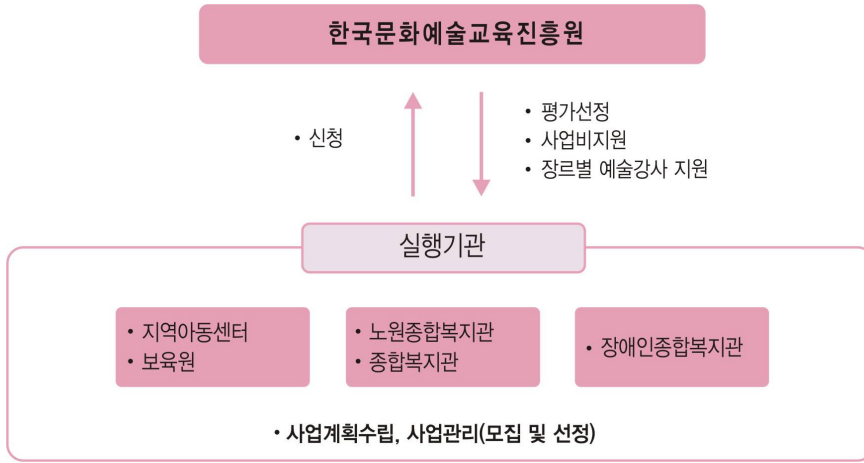
* 출처: 문화관광체육부(2010). 2009 문화정책백서. 서울: 문화관광체육부.

4)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체험·학습·창작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권 내 주거단지 및 농산어촌지역주민, 군, 교정시설 및 소년원 수용자 등 다양하다. 또한 사회문화예술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들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문화관광체육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1)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회 예술강사 파견 사업은 예술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들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현장에서 원활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4년 아동복지시설 중심으로 추진된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2006년에 이르러 노인복지관 연극분야, 장애인복지관 무용분야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노인·장애인 대상 신규분야 교육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문화관광체육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그림 III-39]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체계

* 출처: 문화관광체육부(2010). 2009 문화정책백서. 서울: 문화관광체육부.

<표 III-16> 2008 분야별 예술강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아동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국악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미술	연극	무용
강사수	39	59	51	52	30	57	30	31

* 출처: 문화관광체육부(2010). 2009 문화정책백서. 서울: 문화관광체육부.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교육대상은 시설을 이용하는 미취학아동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국악·음악·연극·영화·미술 등 6개 분야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들이 시설로 방문하여 문화예술 체험-학습-창작 등을 위한 실내교육과 공연·전시·영화 관람 등을 할 수 있는 현장학습 등 연간 30회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연극 분야를 특화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으로서 연극교육은 물론 노인의 사회적 문제를 노인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활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은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무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08년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노인대상 창작무용 프로그램과 지적장애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2010년 사업 확대기반을 마련하였다(문화관광체육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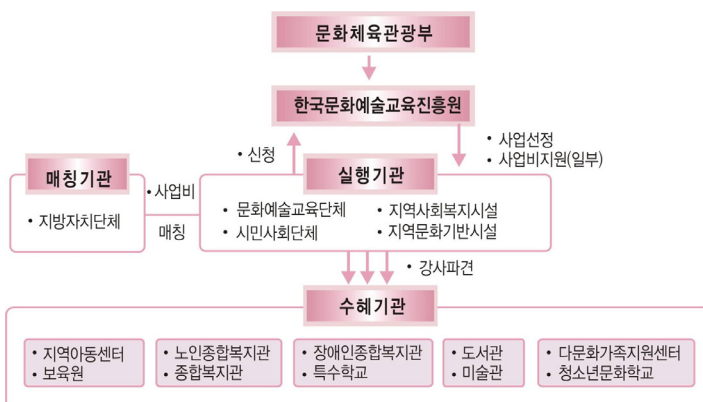
<표 III-17> 2009 분야별 예술강사 현황

구분	아동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국악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미술	연극	무용
강사수	39	59	51	52	30	57	30	31

* 출처: 문화관광체육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서울: 문화관광체육부.

(2)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역별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문화기반시설 등과 협력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07까지 복권기금(28억원)을 통해 지역의 노인·장애인·취약계층(농산어촌 지역주민, 새터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고, 2008년 예산을 국고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III-40]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 출처: 문화관광체육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서울: 문화관광체육부.

이 사업은 지역기반을 원칙으로 지방비 매칭 및 지역의 민-관 협력 도모사업이다. 교육수행단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기초 혹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하여 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교육수행단체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 때 사업계획(교부신청서) 검토 및 사업지원 관리는 기초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제 사업을 조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문화관광체육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표 III-18>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2006~2009)

(단위 : 개소/명)

구분	노인				장애인				아동/다문화/취약계층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지원단체수	44	60	81	94	45	86	82	67	46	84	129	112
프로그램 수	134	97	94	109	135	109	94	81	160	117	162	153
수혜인원	2,871	2,362	2,462	2,504	2,408	2,350	1,793	1,210	2,649	2,960	3,942	2,432

* 출처: 문화관광체육부. 2009 문화정책백서. 2010. 서울: 문화관광체육부.

5)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시설·단체에 신문구독 지원

당시 문화관광체육부는 2008년 12월 국회에서 삭감된 소외계층구독료와 NIE 지원사업, 인턴사원 지원 등의 예산 24억원을 추가 확보해 7월부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중 소외계층구독료 사업 지원금과 NIE구독료 사업 지원금으로 각각 4억9천5백만원과 5억2천5백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인턴사원지원금 5억8천만원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구독료 지원 사업은 기존 12억6천만원에서 17억5천5백만원, NIE구독료 지원 사업은 8억원에서 13억2천5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신문발전기금 증액은 첨단편집제작시스템(통합뉴스룸)과 소외계층 매체 운영 지원에 각각 7억원과 1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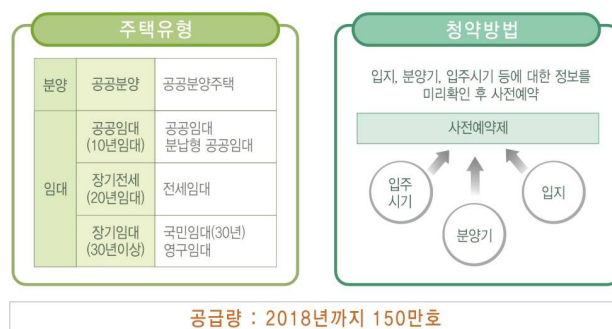
문화관광체육부는 이번에 확보된 소외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한국기자협회, '문화관광체육부 소외계층구독료 지원금 증액', 2009. 7. 9).

2010년에는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시설·단체에 대한 신문구독 지원을 32,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문화관광체육부,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주요업무계획, 2009).

5. 국토해양부

1) 보금자리주택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 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의 주택이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www.newplus.go.kr>, 2010. 9. 30. 검색).



[그림 III-41] 보금자리 주택 안내

* 출처: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www.newplus.go.kr>. 2010. 9. 30. 검색

국토해양부는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10년 중 보금자리주택 18만호를 공급하고(수도권 14만호(GB 8만호, 신도시·도심 등 6만호), 지방 4만호 수준), 시범지구는 보상·착공 일정을 계획대로 시행하여 '10년말부터 본 청약, '12년 하반기에 최초 입주를 추진한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추가 지구지정(20km² 규모, 8만호)을 추진하고, 연 2회 사전예약(약 3.5만호)을 실시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을 미래형 실용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아파트 형태의 다양화, 지붕·벽면의 디자인 개선, 현상설계 도입 등으로 특색 있게 개발한다. 벽체·창호 단열성능 강화,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을 통해 민간보다 강화된 그린홈을 건설(에너지 30% 절감)하고, 침실조명의 간소화, 창호면적 축소 등을 시범 실시한다.

청약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복잡한 공급유형(특별·우선·일반공급 등 7개)을 단순화하고, 청약일정도 공급유형별 성격에 따라 통합 조정하며('10.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생애최초주택 신청요건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완화한다('10.2,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 100%).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고 투기수요를 엄정 차단할 방침이다. 입주 후 일정기간 거주 의무(5년)를 부과하고, 거주 의무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 출입조사 근거를 마련하였다('10.4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지구발표 즉시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투기세력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CCTV설치, 정부합동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GB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홍보수단과 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사이버체험 홍보관이 모델하우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3차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약정보도 실시간 제공('10.2)한다. 사전예약시스템도 보금자리 통합포털로 일원화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홍보매체를 다양화(TV·신문·전광판 등)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보금자리 포럼 운영('10.1)한다(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010 업무보고, 2009).

(1) 국민임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주공·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재정(30%)과 기금(40%)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한다.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 (15평)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50%이하에 우선공급)이면 된다. 50m² 이상~60m² (18평)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50%이하에 우선공급)인 사람이면 된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www.newplus.go.kr>, 2010. 9. 30. 검색).

(2)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무기간 이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하며, 크게 5년 공공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뉜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이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50년 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그림 III-42]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일정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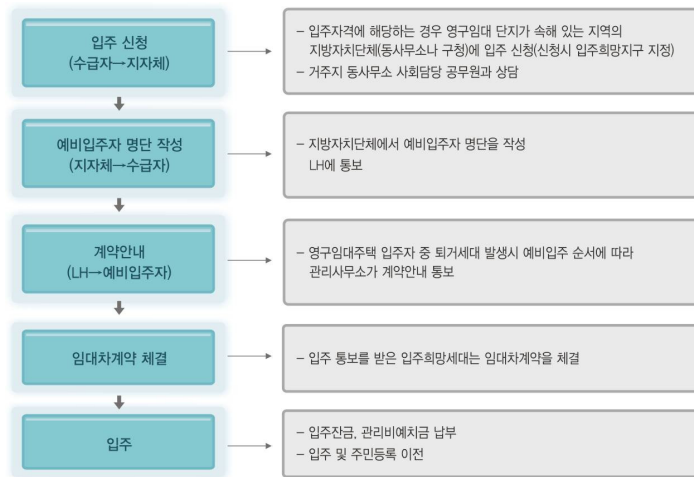
주택공급은 일반공급,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구분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10. 9. 30. 검색).

(3) 영구임대(한국토지주택공사)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현재 신규 공급은 없고,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하다(마포구청 홈페이지, <http://www.mapo.go.kr>, 2010. 9. 30. 검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무주택세대주어야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기간 내 출산(임신 중 또는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0% 우선 공급한다.



[그림 III-43] 영구임대주택 입주과정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된다.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공사에 통보하면 공사에서는 이미 선정되어 대기중인 예비입주자 다음 순서로 입주예정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 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입주를 통보한다.

영구임대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26.34㎡~42.68㎡이고, 기본 계약기간 2년간(2년경과 후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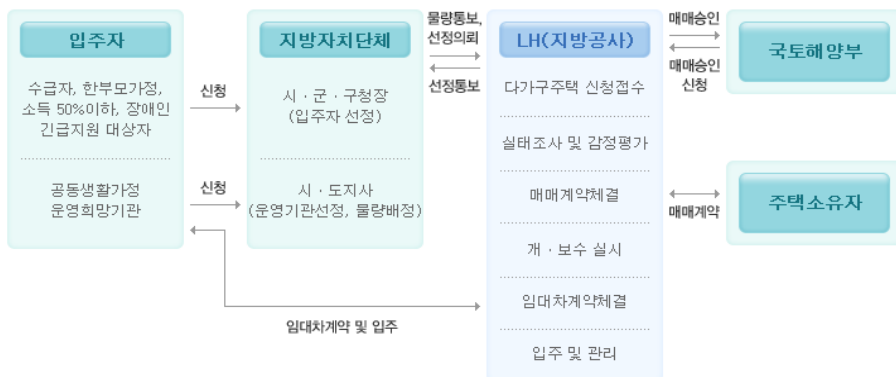
2) 다가구 매입임대

다가구 매매임대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09년까지 30,020호를 매입하였으며, '12년까지 총5만 가구를 매입하여 임대할 계획이다. '10년 매입 및 입주자모집 일정은 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된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다중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을 매입공고 등을 통해 신청 접수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한 후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다(단,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

임주대상은 일반가구, 공동생활가정, 긴급지원대상자이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재계약은 1회에 한정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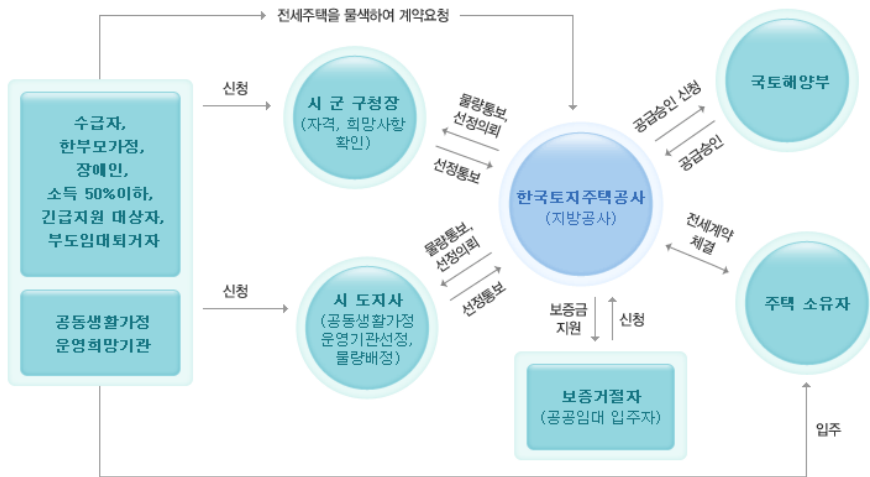
[그림 III-44]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절차도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3)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05년 654가구, '06년 5,277가구, '07년 5,811가구, '08년 7,004 가구, '09년 7,087 가구의 전세주택이 지원되었으며, '12년까지 총 4만여 가구를 전세·임대하게 된다. '10년 사업대상지와 입주자모집 일정은 신문공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된다.



[그림 III-45]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절차도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전세금 한도액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은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이다(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원, 그 밖의 지역 7천만원). 단,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다.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로 인정된다.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긴급지원대상자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4)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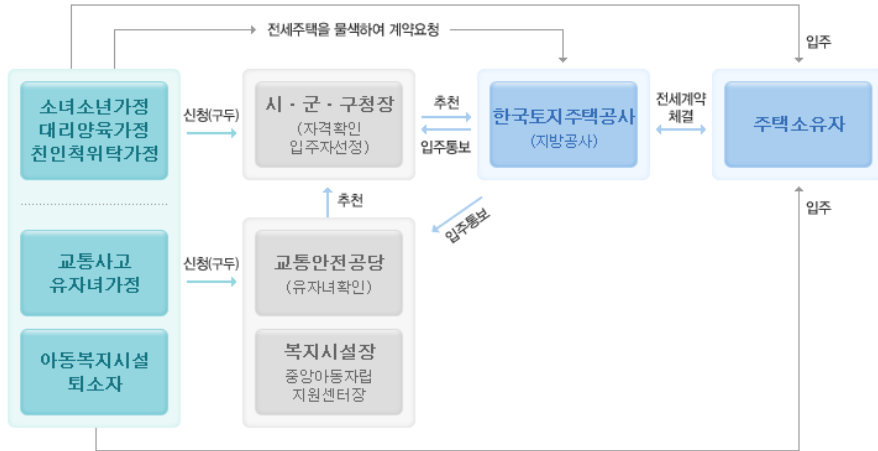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은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원대상가정은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포함)이나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이며,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가정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시 6월 이내에 지원대상가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7,000만원, 광역시는 5,0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1인 가구의 경우 50㎡이하 주택으로 제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까지 지원한다(호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되,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고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를 인정한다.

지원조건은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며, 20세 이후에는 이자(연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자격(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이 유지되는 한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

이 가능하다(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그림 III-46]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지원절차도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5)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7.04.20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하고 보금자리주택으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대상주택은 2005. 12. 13일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2009. 12. 29 전에 임대사업자가 부도나거나 6개월을 초과하여 국민주택 기금 융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거주하였거나 거주한 주택에 한한다. 다만, 부도 등의 발생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경매개시결정·전

세권·임차권의 등기가 설정된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주택, 법인 등 기타 단체가 임차인인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6) 긴급주거지원사업

국토해양부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대주택 지원을 하였다. 지원대상자에게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을 지원한다.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기간(임대기간)은 2년(1회 연장가능)이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09년 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500호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 상황에 따라 1,500세대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 자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그림 III-47] 긴급주거지원사업 지원 절차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자는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로서 일정기준³⁹⁾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이다.

'07~'12년까지 총 5,173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09년도까지 1,018호를 지원(쪽방 524호, 비닐하우스 494호)하였다.

주거지원 사업유형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2010. 9. 30. 검색).

8) 저소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강화

국토해양부는 2010년 업무보고에서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확대('09. 0.5 → '10. 1만호)하고, 단지 내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토록 개선('10.6, 주택 공급규칙 개정)하며, 일정물량은 차상위계층까지 입주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보금자리지구 내에 일체형 복지동(주택+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저층에는 고용지원센터, 재활치료실 등을 배치하고, 상층에는 영구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新개념 주거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영구임대단지내의 복지동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10.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10년 2만호)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비닐하우스거주자 등에서 고시원거주자, 범죄피해자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지역은 20만 이상 도시에서 수도권은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일부물량을 장애인, 보호노인, 미혼모, 가정폭력피해자 등에게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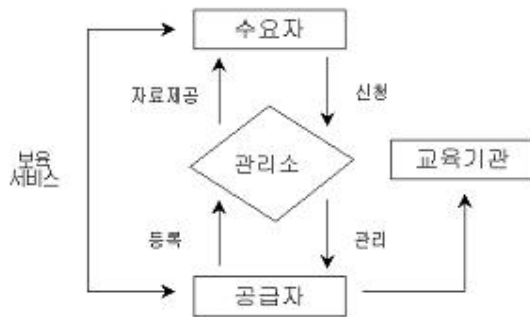
39)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09년 기준 1,944,320 이하), 토지는 5,000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는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 영업용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롭힘으로 지속적으로 공급('09년 기준 638가구 운영 중)한다(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 2009; 국토해양부,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 2010).

9) 저출산 고령화, Well-Being 시대에 부응한 주거복지 강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규모를 확대⁴⁰⁾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임신부부도 신청 자격에 포함한다('10.2, 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육아지원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 지자체·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주부·고령자와 육아가 필요한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 연결⁴¹⁾하여 육아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



[그림 III-48]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보육시설 확대 추진체계

* 출처: 국토해양부(2010).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 서울: 국토해양부.

* 지원 사항

- 홍보 : 홈페이지 개설, 게시판 게재, 베이비시터 책자 발간
- 교육 : 교육기관과 베이비시터간 연계, 교육비 지원, 교육안내 등

40) 분양주택 규모를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85m²로 확대하고, 타 계층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영주택 공급비율을 조정(30→10%)한다(국토해양부,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 2010).

41) '10.6, 시범사업 : 1천세대 이상 임대단지 대상 수요조사('10.3) 후 시범사업 실시(국토해양부,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 2010)

무장애 설계(Barrier-free)⁴²⁾가 적용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공급('10년 1.5천호)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10년 하반기)한다.

아토피,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을 보급('10.6, 기준 마련)하고, 복리시설(놀이터, 경로당 등)이 주민 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주택건설기준, '10.6)한다(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 2009; 국토해양부,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 2010).

10)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국토해양부는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10.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 입주자 선정권한(청약가점제 적용 등)을 이양('10.2, 주택공급규칙 개정)하고, 지방은 청약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24→6개월로 단축한다⁴³⁾.

단독주택에 대해 유지관리 등 주거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해피하우스 제도를 도입('09.12~'10.11. 시범사업)한다(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 2009).

6.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방재청)

<표 III-19>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및 업무내용

담당부서	업 무 내 용
정보문화과, 안전개선과	범국민정보윤리교육, 인터넷중독예방해소, 사이버예방교화사업(이상 정보화역기능대응),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p.420 재구성.

42) 단차제거,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 타월 등 설치(국토해양부,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 2010)

43) 청약과열 우려시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가능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위해 외부의 공공·민간 기관 전산망을 연결하여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지역서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자격조회·신청에서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주민서비스 대국민 포털(oklife.go.kr)을 구축하였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3단계 5개년 사업('07년~'11년)계획으로 2010년 2월 현재 2단계 1차('08.12~'09.6) 구축사업과 2단계 2차('09.9~'12) 구축사업까지 완료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단계 1차('10.4~'12) 구축사업이 발주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제공에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종래에는 주민이 일일이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하여 필요한 주민생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였으나, 이제는 온라인(주민서비스, www.oklife.go.kr)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지역별로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행정지원업무시스템이 정착되고 통합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면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내용을 알아보면 사용자에게 따라 일반 주민이 주된 사용자인 주민서비스 대국민 포털과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서비스 업무담당자를 주된 사용자로 하는 주민서비스 행정지원시스템으로 구분되며, 양 시스템의 정보교환 및 외부시스템 간 송수신 역할을 수행하는 연계허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I-49]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

* 출처: OK주민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oklife.go.kr>. 2010. 9. 30. 검색

대국민 포털의 주요 기능은 주민서비스의 종합적인 안내, 주민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기능,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아보는 기능 이외에도 주민이 대국민 포털로 신청한 내역이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조회하는 기능,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민간시설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등록하고 이력을 관리하는 기능 등이 구축되어 있다. 행정지원시스템은 주민서비스 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행정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주민이 포털로 신청한 내역은 행정지원시스템으로 연계되어 기관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외에도 기관으로 직접 방문한 주민과의 상담내용, 제공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서비스 안내 및 신청기능을 보면 현재 복지·보건·교육·고용·주거·관광·체육·문화 등 주민생활 8대 분야의 중앙서비스 281종과 232개 시·군·구의 지역자원 서비스 35만여 종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중 3만여 건은 해당 기관의 방문 없이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핵심 국정과제(5-2-1)로 구축한 주민생활 관련 8대서비스(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관광)의 대국민 인터넷 접점역할기능을 기반으로, 시급성과 효과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 간(중앙-지자체-공공-민간) 정보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

스 신청에서 결과까지 원스톱 완결형 처리방식을 확대·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 이외의 민간영역의 지역자원 서비스를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차원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민생활 서비스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주민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및 서비스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최신 정보기술 적용을 통한 주민서비스의 접근성, 편리성을 보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서비스의 이용률, 주민 편의 및 지방행정업무 효율성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⁴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통학로 분포, 토지이용, 사고, 기타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도로부속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구간별, 시간대별 필요한 교통규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 일방통행로 운영 등의 규제를 적절하게 시행하여야 한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archives.go.kr>, 2010. 9. 30. 검색).

44) 시·도 및 시·군·구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보조(보조율 50%)를 통해 1,239 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등 교통사고 발생이 안전사고 의식이 낮은 어린이가 활동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국정과제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의 추진과제이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보·차도 분리 및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이며, 대상지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100인 이상 보육시설 등이다. '03~'08까지 10,008억원을 투자하여, 6,454개소를 개선하였고, '10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개선 1,07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표 III-2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소, 억원)

전체계획		'03~'09년		'10년 계획		'10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9,310	15,150 (7,575)	6,454	10,008 (5,004)	899	1,076 (538)	1,957	4,066 (2,033)

* 출처: 행정안전부(2010). 2010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2010년에는 '10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지침 마련('10. 1), '10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10. 1~9),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마련 및 추진('10.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완료('10. 9)의 일정을 계획하였다(행정안전부, 2010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2010).

3) 희망 근로 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경제위기로 발생한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상품권이라는 새로운 재정정책수단을 도입하여 희망근로 참여자 임금의 일부(평균 30% 수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상인에 대한 간접적 지원효과와 이를 통한 경기부양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동 사업에는 국비 13,280억원, 지방비 3,790억원 등 총 1조7,070억원이 투입되어 전국 3만여개 사업장에서 25만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규모 인력과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숙원사업들을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거나 지역별 특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취약지역의 소규모 다목적 활용공간인 「동네마당 조성사업(전국 47개 시·군)」, 저소득 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Happy Home만들기 사업(전국 47개 시·군)」, 지역의 방치된 공터를 소공원으로 만드는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총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전국단위의 백두대간 보호사업, 동네마당 조성사업, 영세공장 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 사업, 자전거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을 전국공통추진 4대 랜드마크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그린 트레킹 서클(Green Trekking Circle) 사업(서울) 등 16개 시·도의 대표사업, 에코트리(Eco-Tree) 프로젝트(경남 김해), 한옥마을 정비 사업(전북 전주) 등 시·군·구 단위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생산적인 사업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준비 및 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점검 등을 통한 자치단체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기초 및 광역 34개)에 대해 특별교부세 총 100억원을 교부하여 추후 생산적인 사업추진을 격려하고 지원하였다. 이후 최종평가를 통해 포상 등을 수여토록 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지자체의 역량을 결집하였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고용위축을 막고 고용지표를 안정시켜 주었다. 희망근로가 시행된 2009년 6월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00명 증가하여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7월에는 기상여건의 악화 등으로 감소했다가 이

후 8~9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져 일자리대책으로서의 성과를 보였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상품권 또한 정해진 유통기한에 원활하게 유통되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고용의 경기후행성과 저소득층 생계불안 및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2010년 상반기에도 규모와 인원을 축소하여 시행기로 결정되었다.

사업 규모와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자격기준 설정에 있어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강화하고, 다른 사업 수혜자의 참여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상자 선발심사를 보다 면밀히 하는 한편, 추진사업의 내용과 관련하여 10개의 생산적 사업 및 친서민 사업 목록을 제시하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를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행정안전부, 2009 행정안전백서, 2010).

2010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적인 희망근로사업을 추진(10만명)하기 위해 저소득층 복지대책에서 실업대책으로 전환하여 소득·재산 상한 도입, 공무원 동일세대 가족배제 등의 선발기준을 강화한다.

'친서민·생산적 10대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5,727억원), 구체적 사업은 슬레이트지붕 개량,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다문화가족 영어교사, 재해취약시설 정비, 영세기업 밀집지역 인프라 개선,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기 위해 소기업, 특산물가공업, 건설현장 작업반 등의 일자리를 발굴·취업지원(5,000명)하여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Post-희망근로 대책으로 「지역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추진('10.9~)할 것이며, 그 대상은 희망근로사업 중 검증·평가를 거친 사업, 신규규모 등으로 한다(3,500명, 176억원).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대도시형(보육, 간병 등), 중소도시형(취약계층지원 등), 농어촌

형(특산물 가공·유통 등)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 업무계획, 2009).

4)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시·도와 협의를 거쳐, 시·도 및 주요 시·군·구에 일자리 종합센터를 설치, 구인·구직 및 직업훈련, 상담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종합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조8천억원 지역일자리 창출에 집중투자 16만개 일자리 제공', 2010. 1. 8).

일자리 지원체제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기업·대학과 협력하여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기업·대학·자치 단체간 MOU를 체결, 구인·구직 및 취업훈련 등을 알선하였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 업무계획, 2009).

일자리종합센터는 취업, 창업, 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벽인력시장 운영으로 일일근로자의 구직환경을 개선하며 무료로 취업을 알선한다. 상설채용박람회장을 설치·운영하여 구인, 구직과 관련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기업, 공공기관, 산업맞춤형 일자리의 공시로 최신의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업상담실 운영(직업상담 운영, 사례관리 운영 사례관리 운영, 맞춤취업 동행면접 운영, 상시 현장면접의 날, 찾아가는 직업상담, 심리검사 운영), 구인처 발굴(구인상담 운영, 상용직 구인상담, 건설직 구인상담), 돌봄서비스(돌봄서비스 취업상담 운영), 돌봄 서비스 취업상담 운영, 새벽일일근로자 무료 취업알선, 취업교육 및 훈련, 상설 채용박람회 운영 등이 있다(인천종합일자리센터 홈페이지, <http://www.incheonjob.org>, 2010. 9. 30. 검색).

5) 희망마을프로젝트

희망마을 사업은 2009년 30일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역점사업 중 하나로 제시됐다. '희망마을'은 지역별로 주민 공동 복합생활시설을 만들고 이를 주민자치, 복지의 '사랑방'으로 만들자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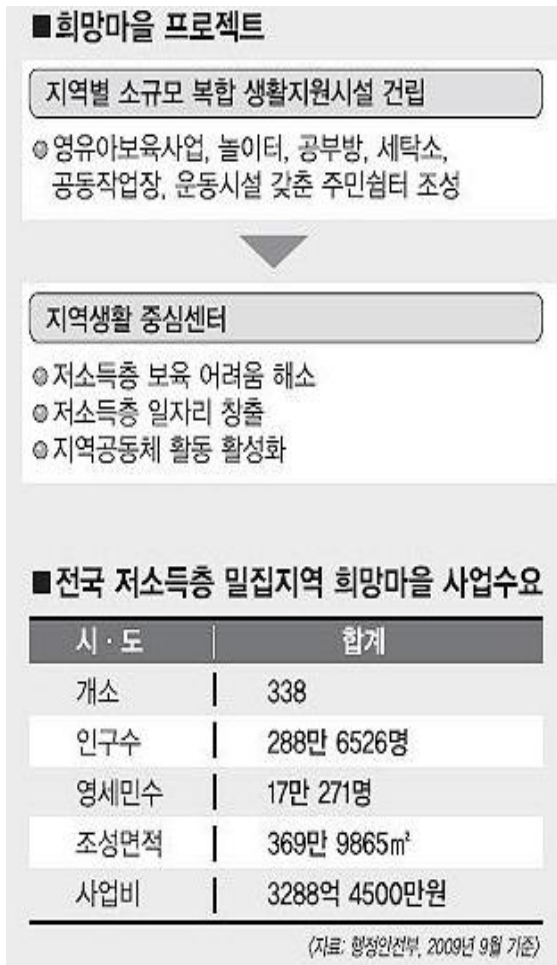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338곳을 선정해 영유아 보육·놀이터 및 공부방, 세탁소, 공동작업장을 갖춘 소규모 복합생활시설을 건립하고 운동시설을 갖춘 주민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맛벌이 위주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녀 돌보기를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기회도 제공한다는 '1석2조' 전략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관계자는 “회관에 주민들이 자연스레 모이게 되면 주민자치관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유아보호, 학습지도 등 일자리도 생긴다.” 고 소개했다. 지난해 시범 실시된 '동네마당 조성' 사업을 확장한 셈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와 재작년 2차례에 걸쳐 지자체 동네마당사업 수요를 조사했다. 전국적으로 280만여 명 12만가구로 추산되며, 2910년에는 100개의 마을을 선정하고 2011년에 100곳, 2012년에 138곳에서 추진키로 했다.

기대되는 일자리 수는 2500여명분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영유아 보모 등 교사, 노인정 관리, 공공작업장 등 세 부분으로 나눠 마을당 6~7명 정도 항구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우선 관련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동네마당 사업의 경우 지난해 88개소에 서 추진돼 강원도 원주 등지는 완료됐지만 자체예산이 부족했던 전북 등은 사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전국 338개소에 338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당 10억원 꼴이다. 국비 500억원과 지방세 500억원을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중으로 교부세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서울신문, '[2010 행정포커스] 희망마을 프로젝트', 2010. 1. 6일자).



[그림 III-50] 희망마을 프로젝트 안내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년 9월 기준; 서울신문, '[2010 행정포커스] 희망마을 프로젝트', 2010. 1. 6일자.

6) 농어촌 집수리 사업

행정안전부는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우려가 있는 슬레이트 주택지붕 개량 등 「농어촌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붕방수, 도배 및 장판, 난방시공 등 주택 내부수리 등 2,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 업무계획, 2009).

7) 지역희망금융사업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새마을금고,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저신용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신용등급 6~10등급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 소상공인으로 소득제한이나 보증인 요건은 없다.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보증거래중인 자(배우자 포함)는 제한된다. 대출한도 및 금리는 500만원 이하, 연 4%(고정금리)이다. 대출기간 3년으로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한다. 취급절차는 대출신청(새마을금고)→보증심사(지역신용보증재단)→협약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대출실행(새마을금고)으로 진행된다(금융감독원, 2010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2010).

사업규모는 2,000억원으로 추진되며, 경영상담, 창업상담, 취약계층 자활 교육 및 현장연수 지원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 업무계획, 2009).

8) 세제 지원

행정안전부는 2009년 국민 세부담의 적정화를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일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과 세정지원을 중점 추진하여 경제회생과 기업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행정안전부, 2009 행정안전백서, 2010).

2010년에는 일자리 창출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지속하고, 중소기업 창업 시 취·등록세를 100%,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연간 총 1,050억원을 지원한다.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1대당 96만원을 지원하고, 귀농자의 통지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50%)을

신설하여 가구당 2억원 기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행정안전부, 2010년 업무보고, 2009).

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경찰은 성폭력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아동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2005년 8월 31일 경찰병원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최초로 개소한 이래 각종 간담회, 관련부처 협의회 및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ONESTOP 지원센터의 전국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 결과, 2005년 12월 부산의료원을 시작으로 경북·울산·강원·충북 등 전국 14개 지역에 15개 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08년 12월에는 서울 서남부 지역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 보라매병원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였다.

2009년에는 원스톱 센터가 없는 충남, 전남 지역 내 개소를 목표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0년 1월부터 전국에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I-21> ONE-STOP 지원센터 현황(18개소)

지방청	병 원	전화번호	지방청	병 원	전화번호
서울	경찰병원	02)3400-1117	경기남부	아주대병원	031)216-1117
서울	보라매병원	02)581-1170	경기북부	의정부방면	031)874-3117
인천	인천의료원	032)582-1170	강원	강원대병원	032)243-8117
부산	부산의료원	051)805-1170	충남	단국대병원	041)567-7117
울산	동강병원	052)246-3117	충북	청주의료원	043)272-7117
대구	대구의료원	053)556-8117	경북	안동의료원	054)843-1117
광주	조선대병원	062)225-3117	경남	마산의료원	055)244-8117
대전	충남대병원	042)280-8436	전남	성가롤로병원	061)727-0117
제주	한라병원	064)749-5117	전북	전북대병원	063)278-0117

* 출처: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ONE-STOP 지원센터는 여성 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성매매 사건 피해자들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등 의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병원진료 후 피해자가 진술녹화 및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센터 내에 진술 녹화실을 설치하여 이중조사로 인한 불편이나 수치심 유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 및 증거채취를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영상진료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안정을 위해 상담실과 침대·소파를 갖춘 피해자 안정실을 구비하였으며, 법률구조공단이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 소속된 전문 변호사들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지원과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ONE-STOP 지원센터는 성폭력 등 10,47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21,400건, 진료 8,632건, 증거채취 2,876건, 진술 녹화 2,273건, 피해자조서 작성 5,839건 등을 처리하였다.

특히,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법적 대응에 소극적이던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일본에서도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우수제도로 보도되고 있으며,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견학을 위해 방문할 만큼 여성·아동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표 III-22> ONE-STOP 지원센터 운영실적('09년)

피해유형별 방문자 수						지원 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진료	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조서
10,471	7,140	2,348	177	116	690	41,020	21,400	8,632	2,876	2,273	5,839

* 출처: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10) 아동안전 지킴이집,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2007년 12월 안양 초등학교 납치·성폭력·살인 사건과 2008년 3월 일산 초등학교 납치미수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크게 고조되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놀이터·통학로 등에서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경찰이 함께 하는 아동안전 지킴이집과 아동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 아동안전 지킴이집

2008년 4월 경찰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있는 문구점·약국·편의점 등 2만 4천여 개소와 연계하여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을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시행 초기 홍보·관리 등 일부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킴이집 로고를 상표 출원(업무표장)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편의점 협회('09.2월)·대한약사회('09.5월)와 각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소를 지킴이집으로 위촉하고 각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을 기하였다.

전국적으로 24,000여 개소의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 아동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지킴이집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아동안전 수호천사」를 도입하였다. 야쿠르트 여사, 집배원, 태권도 사범, 모범택시 기사 등 15,000여 명을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위촉하였으며, 상가가 부족한 골목길, 농어촌 지역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킴이집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반기별 1회 FTX 및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말에는 아동안전 지킴이집 지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 센터'에 지킴이집 관리 지원팀을 신설하고 2009년에 구축한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지킴이집에 대해 정보 제공 및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등 아동과 학부모·업주를 상대로 한 만족도·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

안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아동교육용 홍보애니메이션(DVD)을 제작하여 전국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배부(1,000개)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하여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취지를 홍보하고 이용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아동보호 관련 지식·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관련 소식지를 제작하여 전국 지킴이집에 배부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지방경찰청별로도 가방·알림장·시계 등 아동친화적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LED 전광판·지역신문·캠페인 등을 홍보에 활용하는 등 제도에 대한 아동 및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울러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우수 업주에 대한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지킴이집 운영자들의 사명감·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 이후 2009년까지 성추행범 등 아동대상 범인 54명을 검거하고 640여 명의 아동을 보호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2008년 9월, 총리실 주관의 정부합동 현장점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운영으로 단시간 내 효과 있는 아동보호 제도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어,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등에 지킴이집 내용 게재가 추진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핵심적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표 III-23>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성과('08. 4. 14~'09. 12. 31)

범인검거·지원활동 실적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									
계		납치·유인범		성추행범		강도·갈취범		폭력사범		기타사범		계		폭력예방		실종예방		비행선도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30	54	2	2	7	7	13	29	4	9	4	7	432	640	78	122	122	127	94	192	138	199

* 출처: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2)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한 경우회·노인 회원 중 1,010명을 선발하여 아동안전 지킴이로 위촉하였다. 2008년 1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그 효과가 인정되어 2009년 3월 2일부터 전국 대도시 101개 경찰서로 확대하였으며, 지킴이들에게 위급상황 시 조치요령을 교육하고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지킴이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교 시간에 학교주변·놀이터 등을 순찰하고 신고 접수된 사건에 출동하는 등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있다.

2009년 한 해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으로 길을 잃은 아동을 신속하게 지구대에 신고하여 242명의 아동실종을 예방하는 등 총 28,308명의 아동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 9월 지킴이 운영 지역의 학부모·교사·아동·경찰관 등 17,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아동안전 지킴이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문자 대부분이 “놀이터 주변 등에서의 지킴이 순찰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운영지역 및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아동안전 지킴이를 전국 174개 경찰서 1,740명으로 확대하고, 홍보 관련 우수시책 공모 등을 통하여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표 III-24>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성과('09. 3. 2~12. 31)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										범인검거·지원활동 실적									
소계		폭력 예방		실종 예방		비행 선도		기타 (교통사고예방등)		소계		성폭 력범		강· 절도범		폭력 사범		기타 사범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12,642	28,298	1,067	2,417	212	241	4,749	9,679	6,614	15,960	6	10	3	3	0	0	1	3	2	4

* 출처: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1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찾기 시스템

2005년 12월 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시행되면서 14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실종아동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 예규로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치매노인 역시 실종아동 등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 2009년 실종아동등 신고 건수는 14세 미만 아동이 9,240건으로 소폭 감소(-2.4%)하였으나, 정신지체 장애인은 5,564건, 치매노인은 5,659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4%, 33.3%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괴·실종 경보시스템 운영, 유전자 검사 및 보호시설 일제수색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2009년 발생한 전체 실종아동등 중 99%이상을 발견하였다.

<표 III-25> 실종아동등 발생 및 처리 현황

구분	8세이하 아동		9~14세미만 아동		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발생	미발견	발생	미발견	발생	미발견	발생	미발견
'07년	2,206	1	6,396	1	7,239	18	4,118	16
'08년	1,710	1	7,760	0	4,844	22	4,246	22
'09년	2,062	3	7,178	30	5,564	147	5,659	42

* 출처: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2009년 가출인 신고 건수는 55,714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은 15,118건, 20세 이상 성인은 40,596건으로 집계되었다(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2) 유괴·실종 경보시스템 운영

2007년 3월 제주에서 발생한 9세 여아 유괴·살해 사건으로 아동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의 긴급 공개수배 제도인 '앰버경보 시스템(Amber Alert System)'을 2007년 4월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였다.

유괴·실종경보 시스템은 아동 실종 및 유괴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TV·라디오 방송, 도로·지하철 전광판, 휴대전화·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 신고·제보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2007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서울시와 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방송·신문사, 이동통신사, 인터넷기업, 금융기관 등 총 46개 기관이 경보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표 III-26> 유괴·실종 경보시스템 참여매체 현황

구분	방송사 (7)	공공기관 (2)	신문사 (23)	이동 통신 (3)	인터넷 (6)	은행 (5)
협약 매체 (46)	KBS·KKTv MBN· IPTV(3) CBS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향국민·내일·동아매경·서울·세계·연합·조선·중앙·한국한경·헤럴드·고뉴스·뉴시스·한겨레민중의소리·파이낸셜뉴스·한국국정일보·노컷뉴스·스포츠한국·시티신문	SKT KTF LGT	네이버 네오위즈 다음·야후 네이트·파란	국민· 신한 농협·우리 기업

* 2009년 방송사 4개, 신문사 5개 참여, 46개로 확대 운영

* 출처: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2007년 4월~2009년 12월간 총 235건의 경보를 발령하여 총 149명을 발견하였다. 향후, 경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공 전파성이 큰 매체와 추가 협약을 추진하고 전광판 활용 및 방송사 등의 홍보를 통해 대국민 관심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3)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아동 등·가출인 및 신원불상 변사자와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DB)화 한 것으로, 대상자가 발생·발견되었을 경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2008년 3월 도입되었다.

2009년에는 경찰청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자료(찾는 자료)와 보건복지부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보호 자료)간 전산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찰청 실종아동 등·가출인, 변사자 자료와 보건복지부 무연고자 자료의 상호 비교 분석 및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실종아동 등 발견 시간이 단축된 것은 물론, 실종아동 등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다.



[그림 III-51] 프로파일링 시스템 체계도

* 출처: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2009년도 실종아동 등의 가족복귀를 위하여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등 실종아동 등의 유입이 예상되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전국 일제수색을 실시하여 아동 282명, 정신지체 장애인 227명, 치매노인 149명 등 총 658명을 발견하였다. 또한, 실종아동찾기 시스템의 과학화를 위해 2004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실종아동 유전자 은행을 설치하는 등 「유전자 활용 실종아동 등 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까지 총

21,804명(실종아동 등 20,487명, 보호자 1,317명)의 유전자 D/B를 구축하였으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153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예방 및 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 예방 홍보 리플릿, 실종아동 찾기 센터 신고전화 홍보 스티커 등을 제작·배부하고 장기 실종아동수배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전문기관, 국정홍보처, 국회방송 등 유관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종아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제를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방송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을 통해 향후 실종아동 등 발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4)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아동안전보호협의회는 경찰서장 소속하에 각종 봉사협력단체장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아동안전 보호활동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통한 지역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다(일간연에스포츠, '아동안전 보호협의회 발대식과 위촉식 개최', <http://www.esportsi.com>, 2009. 11. 30. 검색).

행정안전부는 2010년 아동안전보호협의회를 244개로 확대하여 아동 대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835명)에 대해 1:1 전담 경찰제를 실시한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 업무계획. 2009).

15)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란 소년범의 조사과정에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가정·학교환경 등 43개 비행촉발 요인과 공격성·반사회성 등 34개 인성평가 항목을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여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2003년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이후, 2004년 5개 경찰서, 2005년 45개 경찰서, 2006년부터 2008년에는 52개 경찰서, 2009년에는 60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 중이다.

<표 III-27>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연도별 운영 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운영관서 (개소)	2	5	45	52	52	52	60
참여소년범 (명)	55	331	1,320	3,958	5,675	6,266	5,507
전체소년범 (명)	96,697	86,861	83,477	90,628	115,661	123,044	118,058
참여비율 (%)	0.05	0.38	1.6	4.4	4.9	5.1	4.7

* 출처: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2003년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조사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한 소년범 386명에 대하여 재범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문가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고위험군 소년범의 재범률은 40%로 저위험군 소년범의 재범률 4.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재범예측의 정확성이 입증되었다. 이에 2007년부터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 가해학생 조사에 전문가 참여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저위험군 학생은 사랑의 교실과 연계하여 경찰 단계에서 선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고위험군 학생은 재범방지를 위해 법원·검찰이 운영하는 선도 프로그램에 연결해 주고 있다. 2009년에는 전체 소년범의 4.7%에 해당하는 5,507명만이 전문가 참여조사를 받았으나, 앞으로 더 많은 소년범이 전문가의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선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6) 청소년 상담교실 및 사랑의 교실 운영 사업

경찰은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면담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청소년 상담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경찰관 6,357명, 민간 자원봉사자 1,031명이 활동하여 29,995명의 청소년을 상담하였다.

<표 III-28> 청소년 상담교실 운영 실적

(단위 : 회)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상담횟수	18,827	14,514	13,787	18,671	21,751	31,226	26,734	30,925	31,278	29,995

* 출처: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아울러 해마다 각급 경찰관서별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여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2009년에도 전국 13,233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5,097,863명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등 교육 효과를 높였으며 교육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를 인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 복지관 등과 협조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 교실은 비행·불량소년, 중·고등학교의 문제 학생 등에 대한 인성 교육을 통해 소년범의 비행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국 32개 청소년 전문교육단체에서 총 6,837명을 대상으로 1,11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III-29> 사랑의 교실 운영 실적

(단위 : 회)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상담횟수	287	231	272	137	137	238	153	132	445	1,110
참가인원	9,598	7,557	7,249	6,456	5,300	5,787	5,577	5,883	7,630	6,837

* 출처: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최근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나 가정불화 등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는 청소년이 늘어 가고 있다.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범죄와 접하게 된다.

경찰은 가출 청소년이 주로 배회하는 대도시의 주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경찰관·관련단체 등 상담 요원을 배치하여 가정 및 신상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서 보호 및 귀가 조치를 하는 한편, 숙식해결을 위해 주로 찾아가는 주유소, 무허가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학기 초, 방학기간, 수능시험 전·후, 연말연시 등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7)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

경찰은 2005년 초 고교연합 폭력서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 성폭력 등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표 III-30>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적

구분 연도	기간	폭력 서클 해체 (개)	가해 학생 처리 (명)	자진신고(명)				단속 및 피해신고(명)		
				가해 학생 인원	조치			가해 학생 인원	조치	
					불입건	입건	소년부 송치 등		입건	소년부 송치 등
'05년	3.4~5.31	794	11,205	8,610	8,429	181	—	2,595	1,912	683
'06년	3.13~5.31	270	9,071	4,088	3,535	311	44	4,983	4,099	884
'07년	3.12~6.11	211	14,266	7,059	6,471	448	140	7,207	6,387	820
'08년	6.2~8.31	225	13,614	7,515	6,901	498	116	6,099	5,041	1,058
'09년	3.16~6.15	126	11,579	5,682	4,348	931	403	5,897	5,074	823

* 출처: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특히, 학교폭력이 음성화된 원인이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신학기 초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주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6개 관련부처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고기간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학생 중 자진 신고한 경우와 피해신고로 확인된 경미초범은 경찰단계에서 선도를 조건으로 불입건 후 선도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처벌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신고 학생은 비밀보장과 함께 담당경찰을 서포터로 지정하는 등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학생들이 경미한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양성화 되었고 학교폭력을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건부 불입건 제도'가 정착되었다. 또한,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이었던 폭력서클이 자진해체를 통해 대부분 와해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8)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

명예경찰 소년단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청소년 스스로가 각종 범죄 및 제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 질서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4·5·6학년생 중에서 선발한다. 명예경찰 소년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경찰과의 만남을 통해 경찰에 대한 친밀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자치단체, 청소년 선도단체 및 교육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명예경찰 소년단은 전국 초등학교 4·5·6학년생을 대상으로 인성이 바르고 학교생활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명예 경찰활동에 의욕이 있는 희망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서장이 위촉하고 있다.

경찰청은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하고 지방경찰청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운영 및 관리, 명예경찰 소년단 행사 기획 및 진행, 경찰서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맡고 있다. 경찰서에서는 명예경찰 소년단 및 지도교사위촉, 경찰서 단위 유관기관과 협의 운영 및 관리, 명예경찰 소년단의 기본·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10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을 발대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3일 경찰청에서 명예경찰 소년단 전국 확대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3월 9일 전국 총 4,051개교 22,260명의 학생들이 명예경찰 소년단으로써 첫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표 III-31> 명예경찰 소년단 현황('09년)

(단위 : 개, 소)

실시학교(개소)				명예경찰 소년단(명)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153	2,097	56	0	24,323	23,979	344	0

* 출처: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2000년 11월 4일에는 명예경찰 소년단 선발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에서 전국 중·고등학교로 확대하였다가 2008년부터 관심과 인기가 높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재편성하였으며, 2009년 12월 현재 전국 2,153개교 24,323명의 명예경찰 소년단이 활동하고 있다.

명예경찰 소년단의 활동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 프로그램으로는 각급 경찰서에서 명예경찰 소년단을 대상으로 태권도, 유도, 합기도 및 심신건강 증진 종목 중 한 가지를 실시하는 명예경찰 무도학교와 명예경찰 소년단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도교사 및 경찰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학교폭력 방지활동을 들 수 있다.

또한, 왕따·불우학생 및 저학년 어린이 도와주기, 교통캠페인 및 질서운동, 경찰서 방문 및 견학이 있으며 112순찰 및 도보순찰을 경찰관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활동 등이 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한 유적지답사, 불우시설 봉사활동 등이 있다. 방학기간인 7~8월에는 극기훈련, 민속놀이, 환경보호 캠페인, 수상안전·교통수신호 교육 및 여름과출소 현장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여름캠프가 운영되고 있다. 겨울에는 등반대회, 청소년 선도 등을 통한 경찰관 합동근무, 불우이웃 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된 동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I-32> 명예경찰 소년단 수련활동 실적('09년)

(단위 : 회, 개교, 명)

무도학교			경찰서 견학 및 체험			수련 프로그램 운영		
회	개교	명	회	개교	명	회	개교	명
59	241	1,848	445	1,763	17,057	107	656	4,640

* 출처: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표 III-33> 명예경찰 소년단 선도활동 실적('09년)

(단위 : 회, 개교, 명)

교통 캠페인 등			봉사활동			학교폭력 방지활동					
						신고		취약지역 순찰		친구맺기	
회	개교	명	회	개교	명	회	명	개교	지도교사	명예경찰	대상자
3,543	2,850	37,303	867	917	9,443	102	208	3,830	2,672	476	655

* 출처: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2009년 7월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경찰대학에서 수도권 지역 명예경찰 소년단 단장 120명이 참가한 하계캠프를 실시하였고, 12월에는 우수 명예경찰 소년단을 선발하여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와 해안경비대 등 제주도 일대에 대한 하반기 국토순례 현장체험을 실시하였다(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10).

19) 생활안전사고 예방 강화

행정안전부는 2010년 업무보고에서 안전사고 사망률을 2015년까지 안전선진국(OECD 15위 이내)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통사고 부분에서 최근 3년 평균 보행사망자 2,294명에서 '10년 1,800명 이하로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가 등 생활도로 속도제한(30km/h)을 시범운영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도설치,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확대(666개소 지원)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무단횡단방지시설 확충하기로 했다.

화재 부분에서 최근 3년 인명피해 평균 446명에서 '10년 402명 이하로 1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입로 확보를 위해 주·정차 단속권 확대(특·광역시 → 16개 시·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 무료 안전점검, 노후시설의 개·보수('07~'12년 364천 가구 목표, '10년 43,695가구 지원(국비 13억원))을 지원한다.

놀이기구의 안전사고 건수를 최근 3년 평균 479건에서 408건 이하로 '10년 15% 감축할 방침이다. 놀이기구(55,800개)의 안전점검 강화(시설·사고 현황, 안전검사 등 종합관리)하고, 시설 설치검사 비용을 지원하며(1,100여개소),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희망근로 등을 활용하여 안전요원 배치할 것이다.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근 3년 148명이었는데 이를 '10년 61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59% 감축). 취약지역에 안전장비 및 안전요원 확충

(취약지역 : 666 → 73개소)하고,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400개소)하며, 유·도선 및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 업무계획, 2009).

20) 외국인주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1,106,884명)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국어 표지판 설치, 교육·의료·복지 등 생활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단체·학교 등과 연계하여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347개 경찰관서)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 업무계획, 2009).

2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족(167,090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어·문화교육(주민자치센터), 의료지원(보건소) 등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희망근로 참여, 공무원채용(통·번역 등)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다국어 민원서비스를 제공(운전면허, 의료분야 등)하고, 다문화마을(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이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 업무계획, 2009).

아울러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6.9(수) 정부중앙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그동안 각 부처별로 실시하던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혜택도 동등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교육이수자에게 국적 취득 시 면접심사 면제와 국적취득심사기간 단축의 혜택이 부여되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76개 기관지정)과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171 개소)의 교육,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일반 한국어 교육 등 각 기관별로 별도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시·군·구의 한국어 교육은 이수하더라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국적 취득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고, 교재와 교육과정도 통일된 기준 없이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적취득시 혜택이 부여되는 교육기관이 76개소에서 약 300여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어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거주지에서 쉽게 우리말을 배우고 교육이수에 따른 혜택도 폭 넓게 누리게 되어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이 앞당겨지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이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표준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강사 양성도 적극 지원하게 되어 교육내용도 한층 체계화 되고 충실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다문화가족 한국 사회 적응, 쉽고 빨라진다', 2010. 6. 9일자)

22)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기반 마련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17,713명)의 자립·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체 기술습득 위탁교육, 재배농법 전수,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고, 종교, 사회단체 등과 결연을 통해 사회적응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가족결연사업(부녀회, 이북5도민 등), 정착도우미(자치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감면(협약 의료기관) 지원을 실시하고, '건강지킴이' 의료협약을 확대(186→ 215개 경찰관서-의료기관)한다. 자치단체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역적응센터 등). 지원매뉴얼 등 표준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한다. 자치단체 업무평가를 반영하여 우수기관에는 포상하는 등 보건복지부·통일부 등 관계부처 사업이 지방현장에 착근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0년 업무계획, 2009).

7. 통일부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말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초기 적응 교육 강화, 정규학교 맞춤형 교육 내실화,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종합적인 교육지원 체제 구축 등 탈북청소년의 입국 초기부터 사회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으며⁴⁵⁾, 이에 통일부 본부의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와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III-52] 통일부 조직도

*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10. 9. 30. 검색

45)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10. 9. 30. 검색

<표 III-34> 통일부 담당부서별 주요 정책 및 사업⁴⁶⁾

담당부서		주요 정책 및 사업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 등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운영의 지도·감독,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적응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 종합·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생활관리 및 지도,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관리

1)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제2하나원 건립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 1. 13 시행)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과 주거알선, 가족관계등록 창설, 정착금 등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초기 정착지원을 받게 된다.

1999년 하나원 개원 이후 2010년 6월까지 17,000여명이 사회적응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0년 1월 기준 하나원 수용능력은 1,000명(안성본원 750명, 성남, 시흥, 양주 분원 250명)으로,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동시 수용능력을 50%증가시키기 위하여 통일부에서는 강원도 화천에 제2하나원을 2011년 착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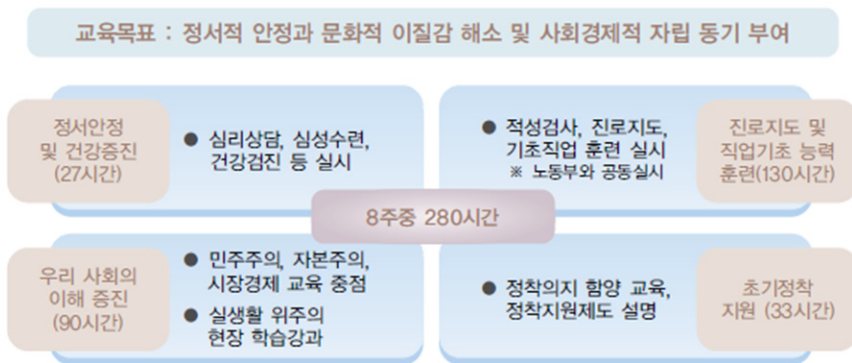
46) 부처 홈페이지 참고하여 본문 항목 위주의 일부 사업 관련 부서만 정리함.



[그림 III-53] 하나원 조직도

*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10. 9. 30. 검색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경제적 자립에 중점을 두고 2008년까지 8주 과정으로 편성·운영되어오다가 2009년부터는 사회적응 강화를 위하여 교육기간을 12주 420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응교육 기간 중에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심리상담실, 진로상담실, 하나의원(내과, 치과, 한방과, 정신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는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종교 및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성별, 연령별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원 분원을 설치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III-54]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 출처: 통일부(2009). 2009년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10%정도를 차지하는 10대 북한이탈청소년들 중 일부는 남북한 간 이질화된 문화와 탈북과정에서의 학업 중단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⁴⁷⁾. 이에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나 인근의 삼죽초등학교 및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에 위탁되어 초기 적응교육을 받으며,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에서 지원을 받는다(통일부, 2009년 통일백서, 2010; 통일부, 통일부 2010년 업무보고, 2010; 통일부 홈페이지. 부처뉴스. <http://www.unikorea.go.kr>. 2010. 9. 30. 검색).

2) 하나둘학교

비정규인 하나둘학교는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의 운영지원을 받아 2001년 2월부터 하나원에 설치되어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남한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자체교육과 한겨레 중고등학교(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반복하면서 불안정하게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한겨레 중고등학교 위탁교육을 중단하고 하나원 제1교육관을 전면 개보수하여 2009년 9월 30일 하나둘학교를 개교하게 되면서 청소년 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둘학교에서는 만 19세이하 하나원 입소 교육생을 유아반, 유치반, 초등반, 청소년반으로 편성하여 3개월 간 심리안정, 정서순화, 학습능력배양, 사회적응 등을 교육한 후 학력심사를 거쳐 일반학교로 편입시킨다. 2009년 9월 기준 교육생은 유아반 23명, 유치반 9명, 초등반 42명, 청소년반 53명이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는 유치반 방과 후 교사 1명, 초등반 방과 후 교사 2명, 청소년반 7명(교육과학기술부 2명, 무지개 청소년센터 5명)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탈북 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hub4u.or.kr>, 2010. 9. 30. 검색; 통일부 보도자료. '하나원 하나둘학교 개교 기념식 개최'. 2009. 9. 29 일자).

47) 2008년도에 입국한 만 10세 이상 19세이하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254명이다.

하나원 재원 중		하나원 퇴소 거주지 정착 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라포형성 · 문화이해	· 라포 형성 · 일상생활 적응강화	· 초기진로이해 증진 · 정착불안해소	· 생활현황 파악 · 지역자원연계
하나원 재원 청소년 방문 교육(월 1회, 4시간) 청소년반 전일제 협력(2009.9 교사 5명 파견)	하나원 재원 청소년 배교문화체험학습(월 1회, 1박 2일)	사회입문프로그램(격월 1회, 8시간)	거주지방문교육(월 5개 지역)
초등 유치 방과후 교육(교사 3명, 주5일, 2시간) 주말 방문교육(2시간)			

[그림 III-55] 단계별 정착초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3) 초등학교 특별학급(삼죽초등학교)

2000년 2월부터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초등학생들은 인근에 위치한 삼죽초등학교(정규)에 특례 입학하여 3개월 간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삼죽초등학교는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북한이탈학생 적응 연구학교'로써 교육과정 개발이 지원되었고, 특별학급 1학급을 신설하였다. 특별학급은 2005년 이후 3학급⁴⁸⁾으로 증설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요청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북한이탈 유·초등생 입국 초기 교육지원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48) 모란반(1~2학년), 도라지반(3~4학년), 해당화반(56학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국어, 도덕, 사회과 중심의 특별학급 통합교과인 '우리는 하나'를 최초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기초수학과 국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월 2회의 목요체험학습과 연 5회의 가정문화체험, 컴퓨터 교육, 미술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3월까지(135기) 삼죽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정착지 학교로 전출한 학생은 총 792명으로 이들의 60%이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의 대도시로 전출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hub4u.or.kr>. 2010. 9. 30. 검색).

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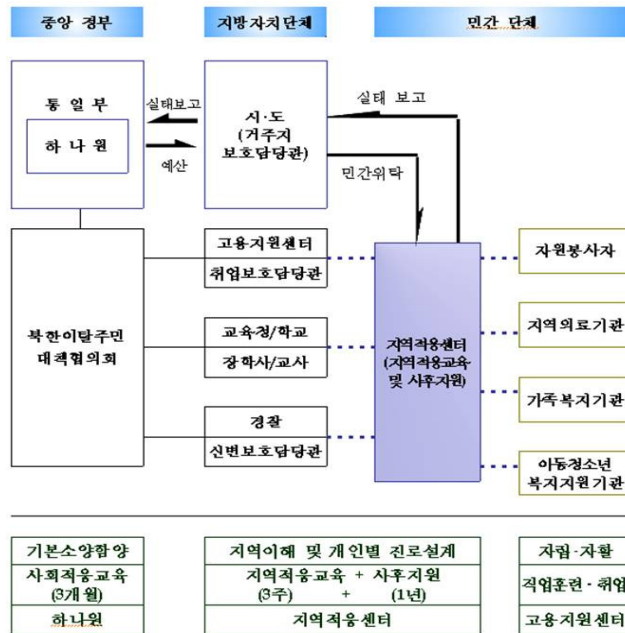
하나원 이후 거주지에서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2009. 1. 31 개정)에 '거주지 적응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하나센터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초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는 2009년 3월 서울 북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경기 서부 덕유사회복지관, 대구 북한이주민지원센터를 시작으로 6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하여 2010년 10월 기준 전국 30개소가 42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⁴⁹⁾.

하나센터는 통일부-광역시자체-민간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내 정착지원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편입 후 3주간 체계적인 지역안내 등의 초기집중 교육과 1년 간 밀착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정부는 하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실제 정착현장인 거주지에서 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2010년에 센터 운

49) 16개 시·도별 지정현황(총 30개소): 서울(4), 경기(6), 인천·광주·강원·충남·경북·경남(2), 부산·대구·대전·울산·충북·전북·전남·제주(1)

영을 위한 전문상담사 100명을 육성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통일부, 통일부 2010년 업무보고, 2009;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10. 9. 3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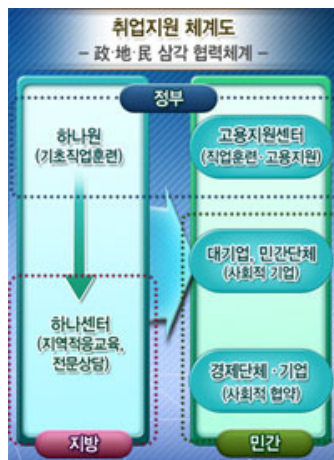
[그림 III-56]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 체계도

*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 '거주지 정착지원기관 '하나센터' 개소', 2009. 3. 25일자.

5) 일자리 중심 북한이탈주민 토탈케어 정보시스템 구축

2010년 통일부가 남북관계 주요 전략 목표로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을 내세움에 따라 일자리 중심 북한이탈주민 토탈케어(Total Care)를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가정까지' 정착하는 경로 전 과정을 관리하여 거주지 편입 후 정착상황의 체계적 관리기능을 확충하려는 토탈케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내에

'북한이탈주민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지원센터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커뮤니티 운영으로 민간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며, 연구DB를 구축하여 정부와 민간에 지원하게 된다(통일부, 통일부 2010년 업무보고, 200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http://www.dongposarang.or.kr>. 2010. 9. 3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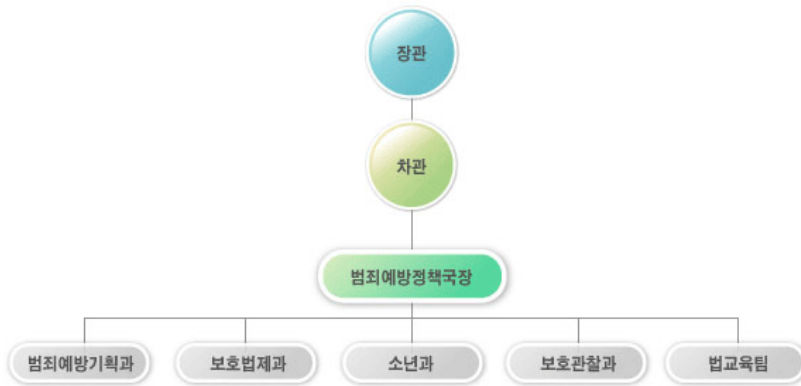
[그림 III-57] 취업지원체계도

*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10. 9. 30. 검색

8. 법무부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기능 강화, 소년사법절차 혁신, 개방적 교육중심의 소년원체제 구축, 보호관찰 선진화 등을 소년보호행정의 변화전략으로 삼고 비행청소년의 치료·교정 및 처우 프로그램 개발·보급, 소년사법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시스템 구축, 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개방처우 확대, 재범억제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실

효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주요이행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기존의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변경하고, 2009년에 들어서는 범죄예방행정정책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보호기획과, 범죄예방정책과, 소년보호과, 보호관찰과, 법문화진흥팀을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그림 III-5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조직도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표 III-35> 법무부 담당부서별 주요정책 및 사업

담당부서		주요 정책 및 사업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범죄예방정책국 총괄기획, 예산·인사 보호행정 관계법령의 입안
	보호법제과	보호관찰, 치료감호직원 복무, 교육, 평가 감호업무, 범죄예방위원 업무
	소년과	소년보호정책 수립 및 집행감독 소년보호기관 복무, 교육, 평가, 수용관리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갱생보호공단 및 민간법인 관리 감독
	법교육팀	법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참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56년 설립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양질의 법률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으로, 특히 가정 내에서의 남녀평등, 부부평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

법률 구조부에서는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하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상담(매주 월요일)을 실시한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시도하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하고,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백인변호사단과 협의하여 무료 소송구조를 통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부터 2009년까지 본부 1,008,295건, 본부와 전국에 설립된 31개 지부를 합하여 총 2,640,676건의 상담(법률상담 2,584,484건, 화해조정 31,664건, 무료대서 21,239건, 소송구조 3,289건)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해왔다⁵⁰⁾.

50) 이태수, 정익중, 김신열, 박경수, 이호균, 이경림, 박주현(2008). 아동·청소년복지 네트워크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2010. 9. 3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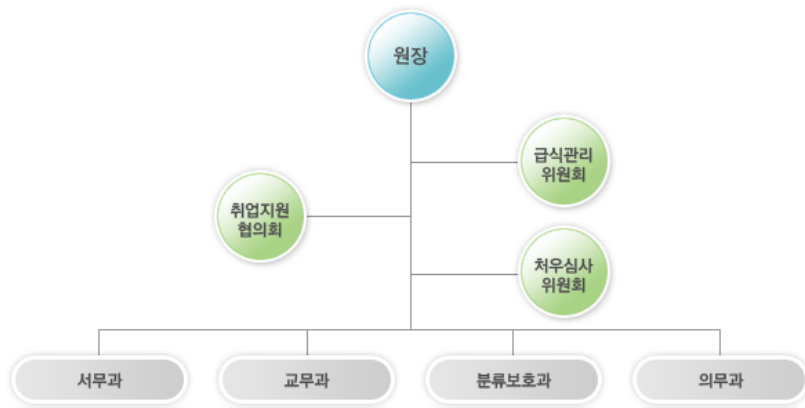


[그림 III-59] 한국가정법률사무소 기구표

* 출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2010. 9. 30. 검색

2) 소년원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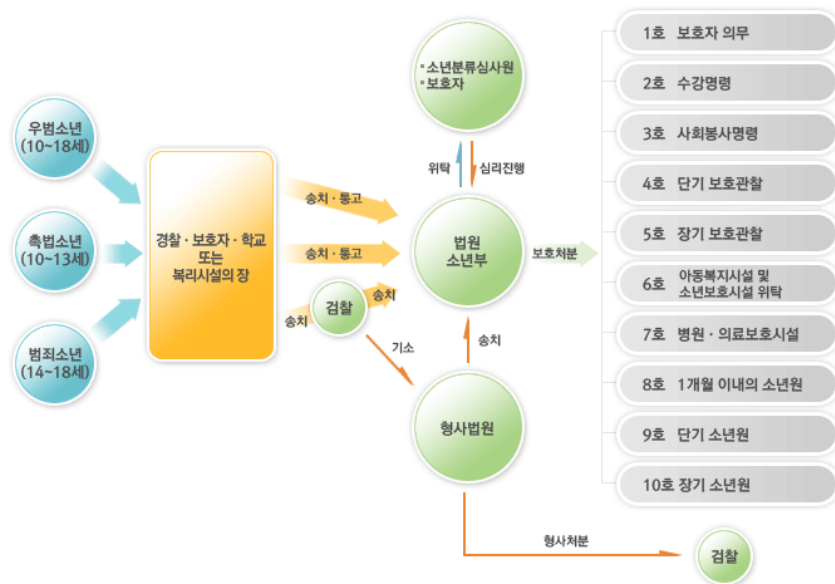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19세 미만 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 활동 등의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 소년원은 수용관리가 중점이었으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맞춤형 교육행정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림 III-60] 그림 소년원학교 조직도

* 출처: 소년원학교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은 죄를 범한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촉법소년,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으로 분리하고, 보호소년의 소년원의 처우 과정은 1개월 이내(8호), 단기(9호), 장기(10호)로 구분하고 있다. 보호소년은 소년원 교육과정을 마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원하거나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결정 받고 6개월~2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퇴원을 하게 된다. 소년원에 수용된 신수용 보호소년은 2004년~2006년 기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어 2008년 기준 소년원 신수용 인원은 2007년 1,511명에서 14.6% 증가한 1,732명이다.



[그림 III-61]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소년원은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⁵¹⁾, 2008년 12월말 기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전 직원은 760명으로 교육과 감호를 담당하는 보호직 공무원(교사자격증소지자 포함), 별정직 공무원인 직업훈련교사, 의사·간호사, 기타 기능직 공무원, 전산·건축직 등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법무부는 2009년 소년원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2009 소년원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였다⁵²⁾. 법무부 자체평가에 의하면 소년의 사회복귀 목표 달성률 65.5%로 목

5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덕, 청주, 안양, 춘천, 제주 이상 10개

52)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 확대실시, 성행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소년보호기관 장학금운영관리지침 개정, 푸르미 인터넷 라디오방송국 개국, 소년원 학생 스키캠프 운영, 사제체육대회, 시청각교실 설치 등

표치에 도달하였지만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낮아지고 있지 않아 소년원 재범 방지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2010년에는 소년분류심사 전문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년원 학교 운영, '가족 솔루션 캠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법무부, 09년 법무부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결과, 2010).

3)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

법무부는 2007년 7월 전국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및 교육청이 의뢰한 학교부적응학생, 검찰이 의뢰한 대안교육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 법원이 의뢰 또는 명령한 대안교육 대상자에게 대안교육을 실시하여 소년보호를 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정규과정(3일, 5일, 10일)과 특별과정(일일체험, 법교육 출장강연 등)으로 구분되며, 전문프로그램(절도비행, 학교폭력, 성비행, 교통안전, 약물 및 인터넷 중독 등)과 일반활동 프로그램(법과체험, 생활도예, 정애체험, 극기훈련, 등산,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표 III-3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현황

기관명(대외명칭)	주요임무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대안교육센터)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광주대안교육센터)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주대안교육센터)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대안교육센터)	- 상담조사 - 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 청소년심리상담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안산대안교육센터)	- 대안·보호자교육 - 청소년심리상담 - 연구·개발 및 직원연수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법문화진흥센터)	- 법교육, 법문화 직무연수 -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대안교육은 2002년 '중·고등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2007년부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분류심사원, 6개의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대안교육수료증을 수여하고, 해당학교에 교육결과를 통보하여 학생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며, 학부모에게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학교와 협조하여 교육수료 학생 추후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2002년~2008년까지 일반학교로부터 의뢰된 16,260명의 학생이 대안교육을 수료하였다.

한편, 기소유예 대상자와 대안교육명령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각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비합숙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2008년 개정된 소년원법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안교육명령을 받은 소년은 1개월의 대안교육을 받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안교육 이외에도 비행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자교육, 일반학생 및 국민에 대한 법교육,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문제 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센터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비행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그림 III-6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구표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4) 청소년심리검사실

청소년심리검사실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능, 적성 등의 심리검사와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소질과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의 비행성향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의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심리검사실은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 대상의 법교육으로 특화된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제외한 부산, 광주, 청주, 창원, 안산지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는 5개 소년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표 III-37>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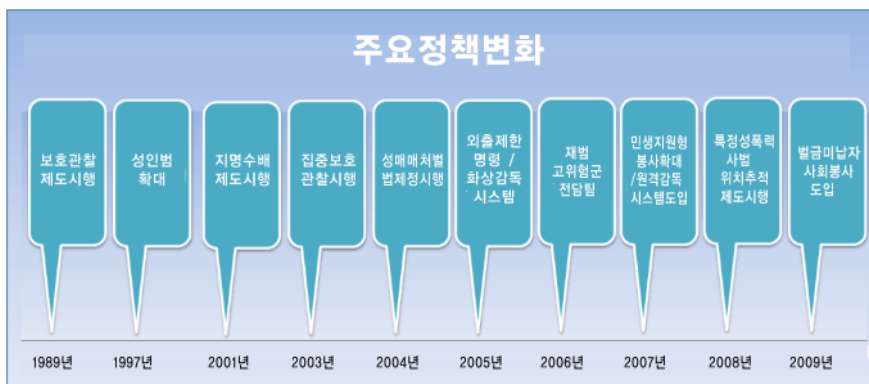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2008
인 원	3,399	4,260	3,976	4,513	5,481

* 출처: 법무부(2008);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5)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에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 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원호를 받게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게 하거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형사제도이다.

1989년 7월 1일 「보호관찰법」 제정으로 소년법에 한하여 국내에 처음 도입된 보호관찰은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성폭력사범(1994년), 성인 형사범(1997년), 가정폭력사범(1998년), 성매매사범(2004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2008년)로까지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2008년 전체 보호관찰 실시 인원 184,813명 중 청소년 대상자는 54,824명(29.7%)으로 전년 27.7%에 비해 증가하였다. 전체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청소년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나 높은 변화 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III-63] 보호관찰 주요정책변화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한편, 보호관찰기관은 2010년 1월 기준 고등검찰청 소재지(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된 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개, 지방검찰청 및 주요지청 소재지에 설치된 보호관찰소 16개와 보호관찰지소 38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1개로 총 60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⁵³⁾.

53)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1) 보호관찰 실시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와 「형법」 제62조 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 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소년법 일부개정(2007. 12. 21)으로 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고, 보호관찰 부과연령은 10세로 하향되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청소년 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법정준수사항⁵⁴⁾ 및 외출제한명령 등 법원 및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지키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청소년 대상자와의 초기면담,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일반, 주요, 집중대상자 등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통제를 위해 출석지도 위주의 보호관찰 방식을 탈피하여 주거지 방문, 생활근거지에서의 면접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역동적 보호관찰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6년 9월부터는 재범고위험군 전담팀을 설치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등 성적이 불량한 때에 형의집행 등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인하고 유치한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취소,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가해제 또는 부정기형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한다. 2008년 기준 청소년 대상자 보호관찰 성적에 따른 조치현황을 보면 성적 불량자는 19,459명, 성적 양호자는 183명이다.

54)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그림 III-64] 보호관찰 실시 절차도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전국의 보호관찰(지)소에서 각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특성별 재범방지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개정된 소년법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 상담교육,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자특별교육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청소년 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주로 처벌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노인, 장애인 등 생활복지시설에서 이루어져 대상자는 봉사체험을 통해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과 속죄의 기회를 얻는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단독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가능해지고, 사회봉사 명령의 부과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낮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08년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5,726명으로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1,477명이고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4,249명이다.

<표 III-38>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명)

	총계	직접 집행	협 력 집 행					
			소계	자연 보호	복지 분야	공공 시설	대민 지원	기타
2008년	5,726	1,477	4,249	11	3,990	166	17	65

* 출처: 법무부(2008);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재구성.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치료는 대상자의 범죄내용에 따라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방지교육 등으로 세분화하여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총 260여개의 지역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수강명령은 소년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단독 수강명령 결정이 가능해지고, 수강명령부와 연령이 12세 이상 하향 조정되면서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08년 청소년 수강명령 집행인원은 5,847명으로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5,620명이며 협력 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227명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표 III-39>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명)

	총계	직접 집행	협 력 집 행						
			소계	약물	준법 운전	심리 치료	가정 폭력	성폭 력	기타
2008년	5,847	5,620	227	-	40	77	-	14	

* 출처: 법무부(2008);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재구성.

(3) 판결(결정) 전 조사 및 환경조사

판결(결정) 전 조사는 법원이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명하기 위하여 판결(결정)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여 보호관찰관이 청소년 대상자의 범죄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제반사항에 관해 사실조사를 수행한다.

환경조사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용자, 보호감호소의 감호 처분자에 대한 범죄동기 및 현재의 환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수용기관 교정교육과 가석방·임시퇴원·가출소 등의 심사자료 그리고 보호관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은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대책 등으로 면접,

사실조회, 자료 분석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환경조사 결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필요시, 보호관찰소장은 본인, 가족, 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수용자의 환경개선 활동을 한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청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대해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검사결정전조사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조사 실적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2010. 9. 30. 검색).

<표 III-40> 청소년대상자 판결(결정)전 조사 및 환경 조사 접수실적
(단위: 명)

	환경조사(소년원 의뢰)	판결(결정)전 조사
2008년	1,477	3,036

* 주: 판결전조사는 판결전조사와 결정전조사를 합산

* 출처: 법무부(2008);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재구성.

(4)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운영

보호관찰제도 도입 당시 8,389건이었던 사건수가 2008년 184,813건으로 21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보호관찰 인력은 부족한 여건에서 보호관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양대 목표 달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표 III-41>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 주요내용

세부시스템		내 용
폰to 컴 생활보고시스템		전화로 컴퓨터에 생활음성보고
사이버보호관찰소		대상자에게 다양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휴일·야간 보호관찰 업무 공백 최소화
휴대폰문자전송서비스시스템		대상자의 휴대폰으로 보호관찰 정보 전송
사회봉사·수감명령 사이버감독	1세대 화상전화 감독 시스템	화상전화기를 통해 집행감독
	2세대 원격감독 시스템	협력기관에 대한 문서 자동송출, 집행상황부의 전자적 처리
보호관찰현장업무지원시스템		PDA폰을 통해 출장 현장에서 대상자의 각종 보호관찰 정보를 조회·입력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		컴퓨터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분석을 통해 재택여부 감독

* 출처: 법무부(2008);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재구성.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은 저위험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스스로 선택한 IT장비(휴대폰 PC, PDA)로 지도·감독에 응하거나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혁신 시스템과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감독 강화와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상전화·음성분석 기술을 통한 원격 집행감독, PDA폰을 활용한 현장 정보 검색 등 업무처리에 IT기술을 접목한 프로세서 혁신 시스템으로 나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6) 법교육

법교육이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이고 실용적 교육으로, 2005년 5개년 법교육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08년 3월 「법교육 지원

법」 제정을 통해 대국민 법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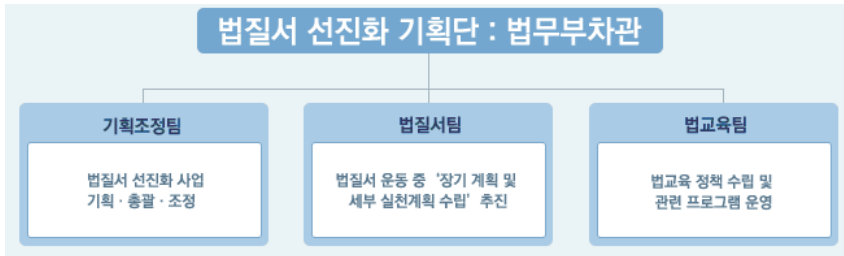
법무부는 법교육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법률전문가들을 Law Educater로 위촉하고 법률지식을 무료로 강연하는 Law Educater 법교육 출장강연⁵⁵⁾, 사이버법교육센터 운영, 실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맞춤형 학습교재 개발⁵⁶⁾,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운영⁵⁷⁾, 중앙일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개최하는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초중등교사 직무연수, 전국 중학생 파인애플 저작권퀴즈대회, 법캠프, 법질서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사이버 법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edu.go.kr>. 2010. 9. 30. 검색). 2008년에는 초등 법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된 서울지역 10개교에서 총 10차시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해피스쿨 법질서체험 학교로 선정된 21개 초·중·고에서 체험형·토론형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등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한편, 법질서 운동을 확산하고, 비교적 낮은 법질서 수준을 제고하여 법질서 선진국으로 거듭하기 위해 2010년 2월 24일부터 기존의 법질서 운동 전담부서인 '법질서담당관'과 '법교육팀'을 통합하여 '법질서선진화기획단'을 발족하고, 주요 10대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중이다(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lawnorder.go.kr>, 2010. 9. 30. 검색).

55) 2010년 하반기 출장강연 선정학교는 강원·서울·인천(각 5개교), 경기(7), 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전남·충남·충북(각 10개교) 지역 초·중·고등학교이다.

56) 어린이용 '나는야 법짱', 중고생용 '청소년의 법과 생활', 대학생 및 일반인용 '한국인의 생활법률', 교사용 '법은 내 친구' 등

57) 청소년들의 법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향상, 간접적인 사법제도 체험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효과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총 35개 중고교에서 시범운영중이다.



[그림 III-65] 법질서선진화기획단 조직도

*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lawnorder.go.kr>. 2010. 9. 30. 검색

(1) 사이버 한국법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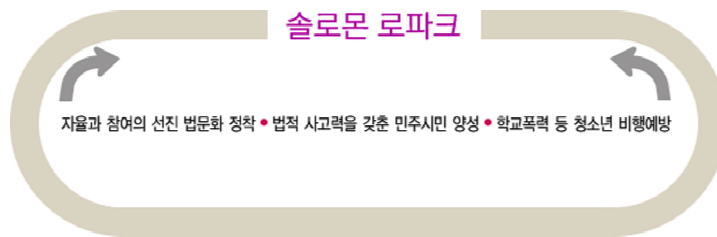
법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국내 최초의 법교육 전문사이트로 법무부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애니메이션, 동영상, 만화를 통해 쉽게 제시하고, 생활법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며, 초등학생부터 외국인 노동자까지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도록 다양한 법교육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동영상, 매뉴얼, 경연대회 등 법무부가 개발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다(사이버 한국법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edu.or.kr>, 2010. 9. 30. 검색).

(2) 한국법문화진흥센터(솔로몬 로파크)

법교육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2007년 대전에 '솔로몬 로파크'를 건립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쌓아 가는 법교육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였다.

2009년 공원 내에 조성한 법체험관과 법연수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체험 및 법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지원팀에서 담당하는 법체험관은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용 법치세상 법체험 코스를 통해 동서양 법제도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입법, 과학수사, 모의재판, 교도소 등 사법제도 전반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용 법짱마을 법체험은 법짱극장, 안전법짱, 세움법짱, 수호법짱, 교통법짱 코스의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법과 친해지면서도 법질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한편, 교육운영팀에서 담당하는 법연수관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법탐험 캠프, 청소년 법치세상 아카데미,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직무연수 등의 법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및 교사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법과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고양시킬 것이다(솔로몬 로파크 홈페이지. <http://www.lawedupark.go.kr>, 2010. 9. 30. 검색).



[그림 III-66] 솔로몬 로파크 비전

* 출처: 솔로몬 로파크 홈페이지. <http://www.lawedupark.go.kr>. 2010. 9. 30. 검색

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구 한국갱생보호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⁵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근거하여 출소자와 소년원 퇴원생 등 갱생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통한 사회보호 및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주요 활동은 갱생보호의 실시(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주거지원, 기타 자립지원 등), 다각적인 범죄예방활동 전개, 갱생보호제도 연구 및 보급,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경영이다.

58) 1995년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2009년 3월 27일 이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중앙 본부와 산하 14개 지역 지부, 1개 센터 7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2010년 6월 현재 128명이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원활동은 남자청소년 지원시설 2곳(서울 은평, 전남 순천)과 여자청소년 시설 2곳(경기 안양, 광주광역시) 총 4개의 출장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각 시설마다 사회복지사 등 3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법무부 홈페이지 업무현황, <http://www.moj.go.kr>, 2010. 9. 30. 검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oreha.or.kr>, 2010. 9. 3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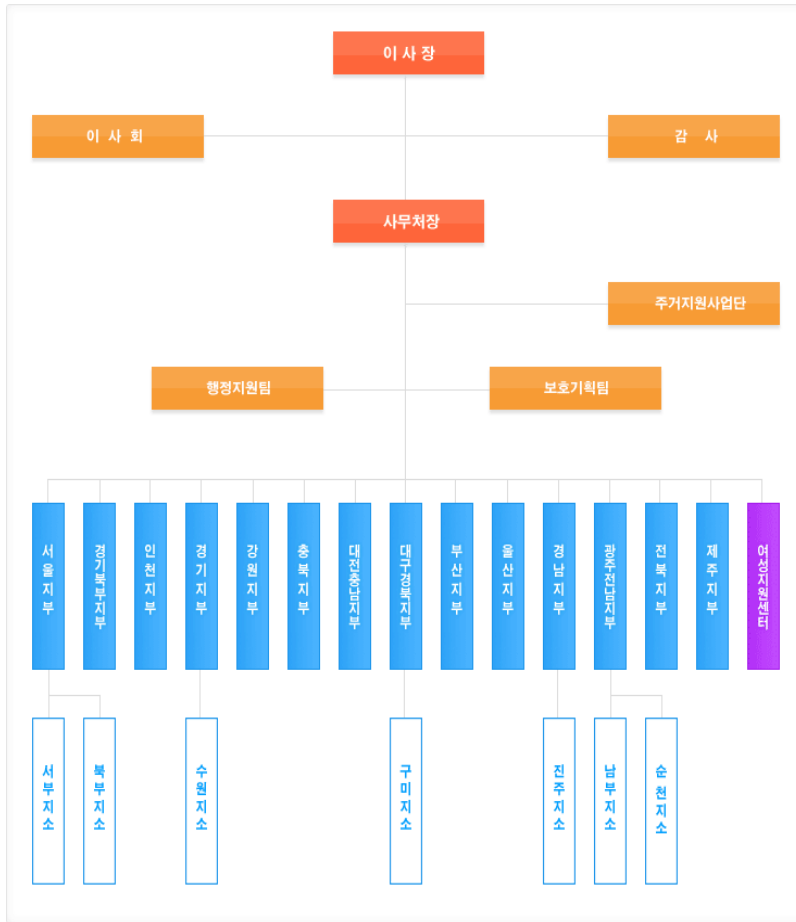
소년출장소에서는 소년원 퇴원생, 보호관찰대상자, 기소유예자 등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관 운영을 통한 숙식제공사업(생활관별 일일 숙식보호인원 10명~15명)을 최장 2년간 실시하고, 학업지도와 취업알선, 직업훈련, 사회성향상교육 등 각종 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호실적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

<표 III-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비행청소년보호실적

(단위: 건)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재사 회화 교육	사후 지도	긴급 원호	기타 지원
2004	708	103	42	32	103	72	35	321
2006	2,784	239	203	79	288	707	173	1,095
2008	2,689	210	153	70	377	539	227	1,113

* 출처: 한국갱생보호공단(2008)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p.379 재구성.



[그림 III-6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조직도

*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oreha.or.kr>. 2010. 9. 30. 검색

9. 고용노동부

1) 직업전문학교

평생직업능력 개발교육에 입각하여 창의성을 개발하고 기능을 연마하며 우리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참된 사회인과 다기능 인재를 육성한다는 이념으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된다.

기초정보 활용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또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IT기반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개인 인성을 함양시켜 궁극적으로 인성과 전문기술을 겸비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 사회활동참여를 확대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적성검사 및 이에 맞는 진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며, 각 과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연계 및 취업준비상담을 제공한다.

직업훈련기관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학원의 형태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직업훈련을 수행한다.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훈련과목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하여 허용된 정원만큼 훈련생을 모집한다.

훈련 과목은 각 직업훈련기관마다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산 관련은 CAD, 웹 디자인, 컴퓨터 수치 제어, 프로그래밍 등의 과정이 있으며, 중장비 관련은 굴착기운전,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등의 과정이 있다.

2)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는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 2006년 7월 1일 고용한정센터에서 고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찾아가는 서비스, 보다 적극적

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출범된 기구이다. 기업체에 우수인력 뿐만 아니라 필요한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들에게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취업상담을 비롯하여 집단프로그램, 단기특강,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구직자취업 지원서비스, 구인업체에 대한 인력지원서비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상담, 외국인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탐색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자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고, 구인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찾아줌으로써 개인의 직업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업지원서비스는 노동시장에서 원활한 인력흐름을 유도하고,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국의 81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자와 일자리를 직접 이어주는 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과 각종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2008년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고용상황을 감안하여 2009년도에는 취업취약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지원센터를 상설적인 채용관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을 실시하였다.

구인·구직의 원활한 매칭을 위하여 워크넷에 소프트매칭(Soft matching)기법을 도입하였고, 기업의 인력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e-채용마당을 개발하는 등 온라인 취업지원 기능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심층상담을 토대로 1:1 밀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2월에 도입된 심층상담 전담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구직자들의 취업의욕 및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실업인정시스템」도 시범 운영되었다.

2009년도 고용상황의 악화로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한 구직자는 2008년 보다 30.5% 증가한 273만 2천명이고, 취업자 수는 23.0% 증가한 67만명이었다. 사업체의 구인인원도 10.1% 증가한 122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3> 고용지원센터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

(단위 : 명, 건, %)

구 분	구인인원	구직건수	취업건수	취업률
2007	1,008,448	1,967,073	501,256	25.5
2008	1,112,341	2,093,557	544,122	26.0
2009	1,225,011	2,732,741	669,535	24.5

* 출처 : 고용노동부(2010).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2009년도 추진성과로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등 다양한 채용행사를 개최하여 일반구직자, 실업급여수급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였고, 특히 38개 고용지원센터를 「상설 채용관화」 운영센터로 지정하여 매주 수요일 등에 정기적으로 구인업체와 구직자들에게 직접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채용행사를 개최하고 워크넷에 전국 고용지원센터의 월간 채용행사계획을 게재하여 구직자들의 참여도를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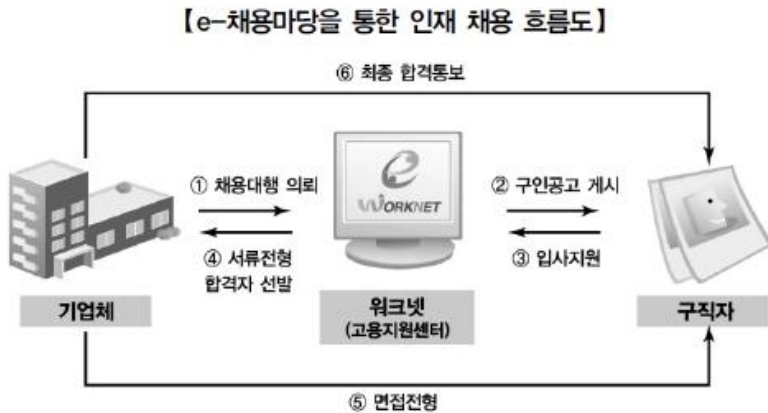
<표 III-44>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 : 명, 건)

구분	2007		2008		2009	
	실시횟수	참여자수	실시횟수	참여자수	실시횟수	참여자수
구인·구직 만남의 날	837	29,289	952	47,269	1,700	51,057
동행면접	248	1,791	255	2,244	263	4,595
채용대행서비스	43	51,665	92	63,645	245	53,374

* 출처 : 고용노동부(2010).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구인·구직의 원활한 매칭을 위하여 온라인 전산시스템도 대폭 개선하거나 추가 개발하였다. 기존에는 워크넷을 통해 구인·구직조건에 100% 일치하는 정보들만이 검색되었으나, 워크넷에 소프트매칭(Soft matching) 기법을 도입하여 일자리 검색조건이 100% 일치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임금·직종·근로조건 등이 유사한 순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에게 보다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 선택의 폭도 넓혔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구인·구직자간 직접 매칭의 장을 제공하는 온라인 채용대행서비스 「e-채용마당」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고용지원센터에 온라인 채용대행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접수 및 지원자들에게 대한 서류심사까지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e-채용마당」은 기업 에게는 채용에 따른 비용, 인력, 시간을 절감시키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편, 구직자에게는 우수기업체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림 III-68] e-채용마당을 통한 인재 채용 흐름도

* 출처 : 고용노동부(2010).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고용지원센터를 찾는 방문하는 구직자 중 취업애로 요인이 심각한 구직자에

대한 개인별 심도 있는 상담,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 등 밀착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심층상담 전담제」를 정착시켰다. 2009년도에도 종합고용지원센터별로 1~2명의 상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심층상담 전담제」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10,841명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중 39.1%에 해당하는 4,238명이 취업하였다. 또한, 「심층상담 전담제」는 저소득층 및 취약청년층을 대상으로 1:1 관리 및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과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도입에도 많이 기여하였다.

<표 III-45> 심층상담 전담제 추진실적

(단위 : 명, %)

구 분	상담인원	취업자	취업률
2008	8,981	3,450	38.4
2009	10,841	4,238	39.1

* 출처 : 고용노동부(2010).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구직자의 취업의욕을 높이고, 면접 기술, 자기소개서 작성 등의 구직기술 습득을 통해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취, CAP(Career Assistance Program) 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횟수를 늘려 수혜자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결과, 2009년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가 24,504명으로 2008년도에 비해 2,268명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NEET족 등 취업취약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의욕 및 구직기술을 높이기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올라(ALL-A)」를 추가로 개발하였다.

또한, 3~5일 과정인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려운 구직자들을 위하여 취업의욕 및 구직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3~4시간 과정의 참여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12종을 추가로 개발·운영하였다.

<표 III-46> 집단상담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대 상	내 용
성취	구직자 전체	취업의욕 증진, 취업정보 수집, 이력서·자기소개서, 모의면접 등
CAP	15~29세 청년 구직자	진로선택·직업결정 위한 자기분석, 직업탐색, 자기소개서, 모의면접 등
취업희망	취약계층 구직자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
성실	55세 이상 고령 구직자	자신의 강점 찾기, 효과적인 대화법, 화 다스리는 법 등
주부재취업설계 프로그램	주부 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도전 직업 찾기, 재취업장점 구체화, 셀프마케팅 등
제대군인 프로그램	중장기복무자, 전역예정·전역한 군인	전직준비동기부여, 일자리탐색 및 전직계획 등
올라	취업청년층(NEET 등)	마음열기, 마음 모으기(협력) 의사소통 및 생애설계와 비전수립 등

* 출처 : 고용노동부(2010).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표 III-47>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현황

구 분	과 정 명
취업의욕 제고	행복한 대화 이끌기,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나를 이해하기
기초 직업 능력 향상	대인관계능력 향상, 의사소통능력 향상, 자기개발능력 향상, 직업윤리
구직기술 제고	취업전략 세우기, 취업목표 정하기, 멋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기술 습득하기 I, 면접기술 습득하기 II

* 출처 : 고용노동부(2010).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살펴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기술 특강프로그램인 「단기 취업특강」 145,132명,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기술 향상 프로그램인 「취업설명회」 28,637명, 고용지원센터별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인 「일자리희망프로그램」 114,001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고용지원센터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2007		2008		2009	
	실시횟수	참여자수	실시횟수	참여자수	실시횟수	참여자수
단기 취업특강	4,703	129,406	4,409	135,550	4,342	145,132
취업설명회	1,068	93,587	782	79,162	384	28,637
일자리 희망 프로그램	1,546	59,581	813	75,577	460	114,001

* 출처 : 고용노동부(2010).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실업인정제도를 실업급여수급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실업인정시스템」을 도입하여 8개 종합고용지원센터2)를 통해 시범 운영하였다. 기존의 실업인정은 실업급여수급자가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고, 실업상태 및 재취업활동 여부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새로운 실업인정시스템」은 실업급여수급자가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협의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를 수립하고, 동 계획서에 따라 직업훈련, 심층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동행면접 등 취업서비스에 참여·이행한 경우에는 12주 동안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별도의 실업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고용지원센터 업무담당자가 워크넷을 통해 재취업활동 내용을 확인하여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하였다. 2009년에는 실업급여수급자 6,910명이 「새로운 실업인정시스템」에 참여하였다.

2010년에는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1:1 관리 및 통합적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심층상담 전담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한편, 2009년에 시범 운영되었던 「새로운 실업인정시스템」도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09년에 개발한 워크넷 소프트매칭(Soft matching) 기법,

「e-채용마당」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워크넷(www.work.go.kr)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대졸자에게 맞는 채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용노동부,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2010).

3) 구인·구직 DB 구축

고용노동부는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0.1.21)를 통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발표하였고,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2.5 위기관리대책회의). 그 세부추진계획 중 하나가 구인·구직관리를 위한 기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워크넷에서 구축중인 대졸·전문계고 졸업자 구직 DB(80만명)를 취업애로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구직수요를 망라하여 전산화하고 기존 DB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취업 애로자는 신규로 등록한다.

구직DB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애로계층의 구직수요를 전산화하기 위한 DB 구축팀을 설치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인·구직 DB 구축팀'(팀장포함 4명 수준)을 설치하여 DB 구축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설치(1주 단위 실적 보고)한다. 고용지원센터 구인·구직 DB 확충을 위해 현재 채용예정인 인턴 1,200명중 40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한시채용 구인·구직 등록 유도 등을 위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추진하기로 했다.

구인DB의 확대는 현재 워크넷에서 구축중인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DB(6만개)와 병행하여, 중소기업 「빈 일자리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3만개→10만개)를 확대한다⁵⁹⁾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09년 ① 구인 등록 후 2주 동안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 ②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 제외, ③ 사업주 제시임금이 해당산업·직종별 평균임금보다 낮

59) 현행 빈 일자리 기준 : 취업알선을 3배수이상 하였으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일자리로서 기업이 제시한 임금이 동일 업종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

은 일자리(제조업 단순생산직의 경우 128만원), '10년) ① 구인 등록 후 1주 동안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 업종 : '09년 기준과 동일, 구인 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사업주 제시금이 해당산업·직종별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 등의 계획을 세웠다. 또한 구인정보 확충을 위해 특별 구인등록기간 운영,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업종별 협회를 활용하여 회원기업의 구인수요를 집중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추진방안', 2010. 2. 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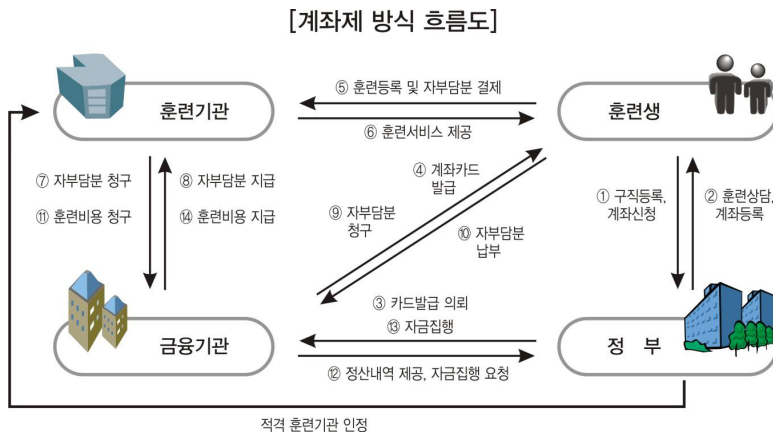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구직자 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훈련수요자의 선택권의 확대, 둘째, 훈련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 셋째, 훈련 상담을 통한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제고이다(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평가 및 개선방안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0).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제로 낮은 훈련참여율과 참여기회의 양극화(대기업·정규직 근로자 중심), 산업 현장과의 괴리(취업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훈련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규제에서 탈피하고, 훈련시장의 기능 회복을 통한 개인적 수요에 입각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시스템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훈련생에게는 훈련선택권을 확대하고, 훈련시장에는 진입장벽과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훈련의 질을 제고하며, 정부는 심층상담과 정보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훈련성과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추진하였다(고용노동부,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2010).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에게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게 1인당 200만원상당의 가상계좌를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훈련수강을 위하여 훈련비의 20%에 대하여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토록 하였다. 다만,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 20%면제 및 훈련비 200백만원을 초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20% 자비부담을 면제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하여는 훈련비 200만원을 초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좌발급은 취업 전 1회 발급이 원칙이나, 180일 이상 취업 후 실직한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다시 200만원까지 계좌가 발급되며, 계좌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180일미만 취업 후 실직한 경우에는 계좌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1회에 한하여 100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009년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738억원을 투입하여 46,580명에게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570억원(77.2%)을 집행하여 87,215명(187%)에게 훈련을 실시하였다(고용노동부,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2010).



[그림 III-69] 계좌제 방식 흐름도

* 출처: 고용노동부(2010).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5)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으로서 복지정책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를 위한 근로연계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면서 2009년 기존 자활사업을 개편해 시범적인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9년 6월 4일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기존 자활사업이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8년 12월말 현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참여중인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자활지원을 유지하되 2009년부터 시행되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의 연계참여가 가능하도록 2008년 12월 중 관련지침을 마련·시달하였다. 2009년 시범·신규 사업으로 실시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의 추진 결과, 총 참여자는 9,947명으로 자활대상자 3,079명(31%), 일반 신청자(3.2일부터 참여) 6,868명(69%)으로 2009년도 사업추진 목표 1.5만명 대비 66.3%달성하였다.

2009년은 기존 조건부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힘든 여건 속에서도 취업성공률(사업종료자 대비)을 55% 달성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본토대를 구축하는 정책적 성과를 거둔 한 해로 남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2009년도 신규·시범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통한 조기 정착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특히,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관리를 원칙으로 단계별 과정관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활사업 운용과 비교해 볼 때 업무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만큼 동 사업의 시행여건 조성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아울러,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입법 추진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게 되었다(고용노동부,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2010).

2010년도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개관						
▶ 지원대상자 : 일정수준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이하 가구원으로 10~64세 이하인 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임액액 (A)	904,344	858,747	1,138,919	1,363,091	1,625,265	1,887,439
소득 한도액 (B) (A × 2.5)	754,818	1,288,121	1,446,879	2,044,817	2,432,899	2,891,118
보험료 (B - 0.628609)	29,141	54,125	44,495	54,495	54,570	74,013
※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 센터에 제출						
▶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 (상담·교육·훈련·실업·실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입별 「취업지원계획(MP)」 수립 • (이력·능력·종전·개입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 (합종 취업지원 「동행연립」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 어고도 실질적인 취업지원 실시						
▶ 취업성공수당 지급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시 3차에 걸쳐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일 기준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 ① 3개월 이상·무단 30시간 이상 일하지 않 ② 2·3차에 참여할 경우 취업 1개월간 고용지원센터 3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음						
▶ 훈련참여수당 지급						
• 지원대상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해 「훈련참여수당」 지급 (월 20만원)						

[그림 III-70] 2010년도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개관

* 출처: 고용노동부(2010).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6) 저소득층 취업지원 특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2만명을 참여시키는 『저소득층 취업지원 특별기간』을 10.1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일자리이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⁶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연말까지 2만명을 목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여 대상자를 추천 받고 있다.

참여대상자는 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법정 차상위 계층, ③ 차차상위계층이며,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 및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특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종료 후 취업되지 않은 자의 참여가 기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 증진 → 집중취업알선에 이르는 1:1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시에는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참여기간 중의 직업훈련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취업지원을 통한 2만명 빈곤탈출 지원', 2010. 10. 11일자).

7) 사회적 기업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당시 노동부는 2003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고하기 위한 모델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국가 의존도가 높고, 단기·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일 자리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로서 기업연계형 모델을 시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둠으로써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 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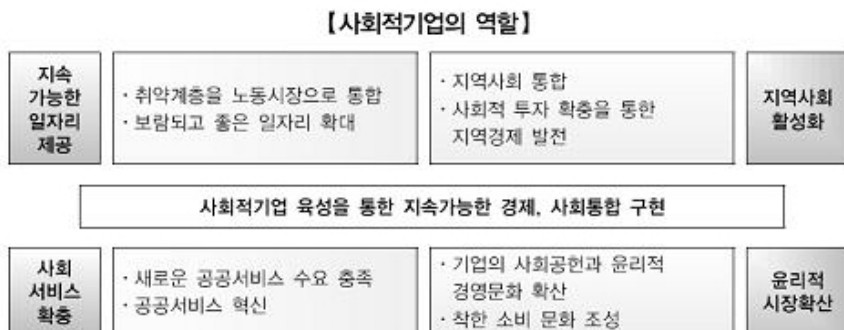
60) 빈곤층으로의 진입(82.8%) 및 탈퇴(73.1%)의 주요한 요인은 근로소득의 증감('07년, 한국노동연구원)

이에 2007년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2007. 1. 3)·시행(2007. 7. 1)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되고,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게 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수익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가 인식하지 못하는 신규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기부·후원·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을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까지 9차례의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수는 266개소이며(신청 567개소, 인증률 48.0%)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수는 기업당 28.2명(인증시 기준)이다(고용노동부,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2010).



[그림 III-71] 사회적기업의 역할

* 출처: 고용노동부(2010).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10. 농림수산식품부

1)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지원사업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이다⁶¹⁾.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세대당 연간 평균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50%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0.84%이상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세대 건강보험료는 `08년 0.82%, `09년 0.83%, `10년 0.84%로 경감되었다.

<표 III-49>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377,742	155,924	170,704	159,423	169,712
보 조	377,742	155,924	170,704	159,423	169,712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2010).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서울: 농림수산식품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제외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

61)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 33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3조 및 제4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지 않는 자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이다.

지원 금액은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28%를 지원, 보건복지부의 경감지원 22%를 포함하면 최대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고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고지서를 발부받아 그 금액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한다.

2010년 시행사업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제외대상에 대한 것,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지원형태 및 납부방법에 대한 것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되고, 제외대상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 종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규정된다.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에 있어서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되, 본인이 부담할 연금 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 최고 35,55원/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기준소득월액 790,000원)⁶²⁾. 지원형태 및 납부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하고 농어업인은 부과된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010).

2)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

62) 지원기준 변경 : ('07까지 → ('08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이다⁶³⁾. 사업목표는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한다.

<표 III-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수혜자 만족도	90%	88%	89%	89%	2010.12	-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 만족도조사는 농협중앙회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2010). 2010년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서울: 농림수산식품부.

<표 III-51>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7,958	8,274	8,660	9,814	20,040
보 조	5,571	5,792	5,992	6,520	14,028
농가부담	1,629	2,028	2,028	2,340	4,212
농협부담	758	454	540	454	1,800
영농도우미	5,431	6,760	6,760	7,800	12,040
- 보 조	3,802	4,732	4,732	5,460	9,828
- 농가부담	1,629	2,028	2,023	2,340	4,212
가사도우미	2,527	1,514	1,800	1,514	6,000
- 보 조	1,769	1,060	1,260	1,060	4,200
- 농협부담	758	454	540	454	1,800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2010). 2010년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서울: 농림수산식품부.

63)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제③항,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 제15조

(1)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대상자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1935. 1. 1이후 출생자)의 농업인⁶⁴⁾으로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10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시행주체는 농림중앙회이고, 지원조건은 국고 70%(최대 36,4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이다. 지원 금액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52,000원 이내에서 지역농협이 정하는 금액이며 영농도우미 임금이 52,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고에서 36,4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용농가가 전액 부담한다. 영농도우미 임금을 1일 52,000원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이용농가가 부담한다. 지원일수는 지원 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이다. 부부가 동시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발생시에도 영농도우미는 1명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10일까지만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비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요청이 가능하나, 영농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없다(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010).

(2) 가사도우미 지원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및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이 되며 지원대상자의 영농활동과 관련 없이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64)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①항 제1, 2, 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

사업시행주체는 농협중앙회이고, 지원조건은 국고 70%(7,000원/회), 농협부담 30%(3,000원/회)이다. 취약농가에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0,000원을 지급하며, 이 중 70%(7,000원)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3,000원)는 농협이 부담한다. 취약농가에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가구의 특성·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1명이상 파견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를 1인 이상 파견한 때에는 농협·이장·인근주민의 확인을 거쳐 다수의 파견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지원일수는 지원 대상 가구당 연간 12회 이내(월1회)이다. 가사도우미 지원 시 파견하는 도우미 수는 농협이 봉사업무량을 판단하여 지원한다.

도우미 신청은 지역농협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연초(1/4분기 중) 관내 취약농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한다. 일제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한다(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010).

3)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사업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어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여,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유지하고자 수립된 사업이다⁶⁵⁾.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와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은 표와 같다.

65)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7조, 제18조, 제22조

<표 III-52>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사업 사업수혜자 만족도조사 결과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양육비 지원의 만족도	75	-	60	70	2011.1	- 사업수혜자에 대 한 설문조사를 통 해 측정

- * '06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며, '08년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시설이용)과 통합하여 시설미이용으로 구분 운영
- * '08년부터 사업의 성과지표로 양육비 지원의 만족도를 도입
-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2010).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서울: 농림수산식품부.

<표 III-53>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216,682	98,824	81,296	81,296	90,806
보 조	108,341	49,412	40,648	40,648	45,403
지방비	108,341	49,412	40,648	40,648	45,403

-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2010).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서울: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대상 및 요건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어가”이라 함)의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함)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경우이다.

지원 금액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가 지원되고,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동 대상에게는 교육비가 지원된다. 시설미이용아동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국공립시설 등 이용 연령별 보육료의 35% 수준(단, 5세아 이상은 50%)으로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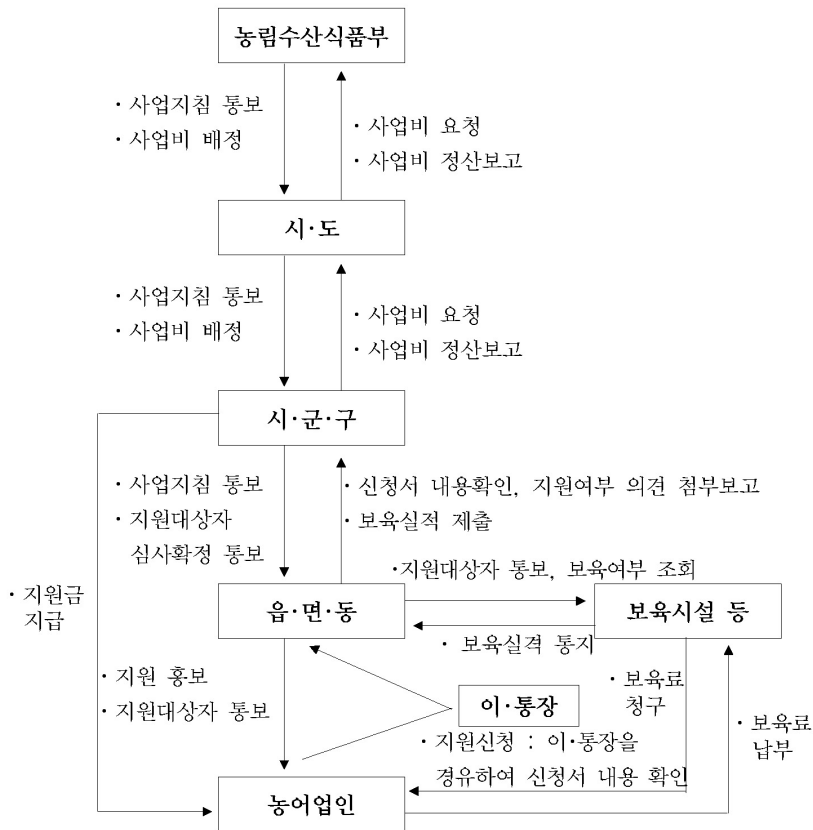
2010년도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사업비 부담기준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군(시·구)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농림수산업사업 시행지침서, 2010).

<표 III-54>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사업 201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천명)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47	81,296	40,648	40,648	—	40,648	—
시설이용아동	29	55,226	27,613	27,613	—	27,613	—
시설미이용아동	18	26,070	13,035	13,035	—	13,035	—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2010). 2010년 농림수산업사업시행지침서. 서울: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이용아동〉



[그림 III-72] 사업시행 체계도 - 시설이용아동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2010). 2010년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서울: 농림수산식품부.

4) 여성농업인센터

농림부는 영농·가사·육아문제 등 고충을 상담하고 보육·방과후 아동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자 17명을 2002년 선정·발표하였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상적으로 여성농업인의 고충을 상담하고, 농번기에는 여성농업인이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를 실시하며, 농한기에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청소년 체험학습 등 지역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자에게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85%(최고 102백만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며 15%(최고 18백만원)는 수혜자가 부담한다(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02. 2).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농어촌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와 복지지원에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시설을 보육시설평가인증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전국 15개소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협업농(부부중업인증 여성)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3월), 12월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업무계획, 2009).

5)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실시(5개 지역)

도시에서 거주하는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맛나는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령 농어업인의 젊은 출향 자녀가 귀농하여 현지 젊은 인력과 함께 지역농산업의 핵심주체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맞춤형 인력육성지원종합 프로그램이다⁶⁶⁾.

단지입지는 지역 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영농여지원, 교육·복지환경조성 등은 기존사업으로 연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한 후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목표는 '09~'17년까지 53지구를 조성하는 것이다('09~'11년 5지구, '12년 이후 48지구)

시범사업은 `09~ `11년(3년간, 1차년도 - 부지확보 및 계획수립, 2~3차년도 : 공사시행 및 입주)에 진행된다면 표준소요사업비는 1.009억원(국고 895억원(보조 370, 융자 525), 지방비 114억원)이다.

<표 III-55>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실시(5개 지역)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	-	16,167	26,324	995,836
보 조	-	-	2,085	15,062	343,312
융 자	-	-	-	5,254	448,002
지방비	-	-	14,082	6,008	204,522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2010). 2010년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서울: 농림수산식품부.

주요사업내용은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기반을 조성하는데 시장·군수가 기존마을재개발, 기존마을확장, 신규마을조성 등 개발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한다(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2010).

66)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제3절 및 농어촌 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추진체계

1년차	사업공모(2개월) 및 타당성조사(2개월)를 거쳐 대상지 선정	· 공모계획시달(농식품부)→사업계획서 제출(시·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농식품부)→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4개월)	· 시·군
	↓	
1년차	다음경비구역 지정 승인(2개월)	· 시·군→시·도(지정)→시·군(고시) · 20만제곱미터 이상은 농식품부 지정
	↓	
1년차	세부설계 실시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 (4개월)	· 시·군 · 20만제곱미터 이상은 시·도 승인
	↓	
2년차	입주자 모집(2개월)	· 수요확보 후 지원 · 입주자들의 영농어 교육 수요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지원 계획 수립(시·군)
	↓	
2년차	공사 시행	· 시·군(단지조성공사 및 주택건축 위탁 가능)
	↓	
3년차	입주자 교육 실시(1년)	· 시·군, 농식품부
	↓	
3년차	준공 및 입주	· 시·군

[그림 III-74]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추진체계

* 출처: 농림수산물부(2010). 2010년 농림수산물사업시행지침서. 서울: 농림수산물부.

11. 환경부

1) 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03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영세민(125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60L 이내(연간 65백만매, 200억원)에 무상으로 지급한다.

2009년 상반기에 약 30백만매(100억 상당)를 지급하였고 '09~'13년간 약 1,000억원의 종량제 봉투값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점포 및 무점포 영세상인 등에게 종량제 봉투값을 50% 경감시킬 계획이다(환경부, 환경정책 2009 추진계획, 2008;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서민대책 실천과제, <http://www.epeople.go.kr>, 2010. 9. 30. 검색).

2) 저소득층 수도물 공급지원 확대

환경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기간에 유예를 두고 있다.

2008년 12월 집계된 바로는 기초생활수급자(832천 가구) 대상으로 동절기에 수도요금을 감면하였고, 수도요금을 체납했을 시 납부유예기간을 최대(60일 이상)로 설정하고 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였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수도관 연결 사업은 1,946가구에 97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옥내급수관개량사업으로 1,144가구에 1,144백만원을 무상 지원하였다.

노후 서민주택단지 등에는 저수조 및 옥내수관을 통하지 않는 '직결급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였다. 서울시의 '아리수 샘터'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병입 수도물의 무상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환경부, 환경정책 2009 추진계획, 2008).

3) 나눔장터 등 자원절약 및 알뜰구매 범국민운동 전개

환경부는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의 나눔장터를 개설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09년 2~3월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하여 전국단위의 대규모 나눔장터 행사를 개최했다. 앞으로 재활용품 상설매장을 시·군·구당 1개소 이상 확대하고(150 → 260개 이상),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품 상설매장 운영을 담당할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범국민운동본부」로 발족할 예정이다(환경부, 환경정책 2009 추진계획, 2008).

4)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농어촌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확대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반입대상을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 신고대상과 일부 허가대상 농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09년 7월). 이는 FTA·해양투기 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개별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저소득 축산농가, 한센토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7개소에 64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시설을 확충하고(6개소) 개선하여(4개소) 생산된 액비를 주변 경작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환경부, 환경정책 2009 추진계획, 2008).

5) 농어촌 지역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과 시설개량에 3,2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 상수도, 우물 등을 이용하는 농어촌 151개소와 도서지역 52개소에 상

수도 보급을 추진하고⁶⁷⁾,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할 계획이다⁶⁸⁾.

군단위 이하 하수도시설 확충과 개량에도 2,82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280개소) 및 면단위 하수처리시설(68개소)을 설치하고, 시설이 노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113개소) 개량할 계획이다⁶⁹⁾.

섬, 산간 고지대 등 가뭄 우심지역(46개 시·군)에 비상관정을 개발할 계획인데 관정은 493개소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송수관로는 98.2km로 약 204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구례, 함양 등 23개 가뭄우심지역에는 1차적으로 지원을 완료하였다⁷⁰⁾(환경부, 환경정책 2009 추진계획, 2008).

6) 어린이유해환경 개선

환경부는 2009년 10월까지 친환경 안심 놀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동네 놀이터 환경안전진단('09. 4) 및 연차별 놀이터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09, 10).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어린이, 영유아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청정지역에 아토피 치료 및 수련시설 등을 갖춘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⁷¹⁾(환경부, 환경정책 2009 추진계획, 2008).

7)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 설립

가정·직장의 친환경성과 건강성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언을 제시할 계획이다('09. 5). 세부계획으로 생활을 진단·개선(집먼지, 진드기, 포름알데히드, 석면, 전자파 등)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실천대인 컨설팅(그린

67) 농어촌·도시지역 상수도 보급률 향상 : 45.2%(' 07) → 54%(' 09년)

68) 수질기준 초과 및 25년 이상 노후된 1,034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69) 하수도보급률 향상 : 45.7%(' 07) → 50.1%(' 09)

70) ' 08년 12월, 국고 110억원

71) 전북 진안, ' 09-' 11

홈, 그린빌딩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부, 대학생 등을 '그린코디'로 양성하여 단기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취약지역 가정은 무료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환경부, 환경정책 2009 추진계획, 2008)

12. 기타 중앙행정기관

위에서 언급한 중앙행정기관 이외에서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공공지원 서비스로는 기획재정부의 희망키움통장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등이 있다.

1) 희망키움통장제(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기초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연금을 신규 시행(33만명, 월 15/14/9만원 지급)한다. 또한 복권기금의 공익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2010년 중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지원, 다문화·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소외·취약계층에 대해 7,620억 원⁷²⁾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익사업의 안정적 재원조성을 위해 복권 발행, 유통 및 판매 등 복권시장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⁷³⁾이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10년 업무보고, 2009).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와 자립자금 형성을 지원하여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으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18천 가구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기초수급자 탈출을 전제로 월 30만원 수준의 금액을 통장으로 적립하는 제도이다.

72) 기금사업의 82.9%에 해당하며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 사업 4,719억 원, 다문화·

한부모 가족·장애인 등 소외·취약계층 2,634억 원, 문화나눔 237억 원 지원

73) 전자복권의 발행·판매 분리 및 재수탁사업자를 7개에서 3개로 축소 등

기획재정부와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정책으로 시행되며 보건복지부의 2010년 사업관련 예산은 총 24,887백만원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월 10만원 이하의 본인 저축액과 이에 대한 1:1 매칭액을 적립하여, 3년 후 탈수급 시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형성된 자산은 주택비, 교육훈련, 취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09년 하반기 경기·인천·전북·부산의 2천 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나 2010년에는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으로 근로소득 있는 차상위 청년 취업자 및 아동부양가구주를 포함할 계획이다(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http://www.hopegrowing.com>, 2010. 9. 30. 검색).

2)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5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미리 ①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 및 종류, ②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③ 통학하는 학생 수, ④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으로 검색으로 알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2010. 9. 30. 검색).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1. 문헌자료

- 경찰청(2010).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고용노동부(2010).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0).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평가 및 개선방안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서울: 고용노동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공모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정기국회 보고자료(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0).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선정결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국토해양부(2009). 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 서울: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2010).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 서울: 국토해양부.
- 기획재정부(2009). 기획재정부 2010년 업무보고. 서울: 기획재정부.
- 농림수산식품부(2010). 2010년 농림수산업사업시행지침서. 서울: 농림수산식품부.
- 문화관광체육부(2010). 2009 문화정책백서. 서울: 문화관광체육부.
- 문화관광체육부(2010). 『2010 복지관광』 지원신청 안내. 서울: 문화관광체육부.
- 문화관광체육부(2009). 문화관광체육부 2010년 주요업무계획. 서울: 문화관광체육부.
- 법무부(2010). '09년 법무부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결과. 서울: 법무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2009). 2010년도 자활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2005). 2005 아동복지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2010). 2009 아동·청소년 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2010). 2010년도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0). 2009년도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0). 2010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0).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0). 201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0). 여성가족부 2010년도 업무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01).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부(2009). 여성부 2009 업무보고. 서울: 여성부.

이태수, 정익중, 김신열, 박경수, 이호균, 이경림, 박주현(2008). 아동·청소년복지 네트워크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0). 2009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서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통일부(2009). 2009년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통일부(2009) 2010년 업무보고. 서울: 통일부

한국교육개발원(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년 경북, 울산 탈북학생 지도 담당교원 연수.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행정안전부(2010). 2009 행정안전백서. 서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2010). 2010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서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2010). 행정안전부 2010년 업무계획. 서울: 행정안전부.

환경부(2008). 환경정책 2009 추진계획. 서울: 환경부.

2.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취업지원을 통한 2만명 빈곤탈출 지원'. 2010. 10. 11일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추진방안'. 2010. 2. 5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탈북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선택 고민 끝! 3월 31일부터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포털 사이트와 상담콜 서비스 지원 시작'. 2010. 3. 31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 3. 31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2012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보도 자료'. 2008. 12. 15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시 대상 학생 노출 문제 해소된다'. 2010. 8. 26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시 대상 학생 노출 문제 해소된다'. 2010. 8. 26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생멘토링」 활성화 방안 모색'. 2009. 9. 19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지역교육청, “학교현장 지원기관” 으로 거듭난다'. 2009. 10. 20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2010. 1. 3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민·관이 발 벗고 나서 -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함께 「학교폭력SOS지원단」 서비스 운영'. 2007. 5. 29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9.1.부터 “교육지원청” (구 지역교육청)이 문을 여는 가운데 이주호 장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현판식 참석'. 2010. 9. 1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오는 9.1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달라진다'. 2010. 6. 22일자.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농산어촌 우수고' 중 우수학교 선정 - 04~06년 지정된 우수고 중 25학교 선정, 최고 2억원 지원' 2007. 12. 20일자.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전국 모든 군으로 확대 - 지원기간을 단년에서 3년간 분산지원으로 전환'. 2007. 4. 4일자.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010. 5. 11일자

문화관광체육부, 보도자료 '독거노인, 조손 가정 아동 등 소외 계층에 여행 지원', 2010. 2. 19일자.

문화관광체육부, 보도자료, '문화바우처로 마음대로 골라본다', 2010. 8. 4일자.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8. 7. 25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개요', 2010. 4. 7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 1. 27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 5. 3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 6. 22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 8. 2일자.

통일부. 보도자료. '거주지 정착지원기관 '하나센터' 개소'.

통일부. 보도자료. '하나원 하나둘학교 개교 기념식 개최'.

3. 인터넷 자료

1388 청소년전화 홈페이지. <http://www.kyci.or.kr>.
2010년 방과후학교 현황 분석. <http://www.mest.go.kr>
OK주민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oklife.go.kr>.
가족친화 기업에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복지타임즈. 2010. 5. 20일자). <http://www.bokjitime.com>.
경상북도아동청소년 무지개 쉼터 개소(경북인터넷뉴스. 2010. 9. 1일자).
<http://www.gbin.co.kr>.
공감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korea.kr>.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홈페이지. <http://eduzone.kedi.re.kr>.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archives.go.kr>.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서민대책 실천과제. <http://www.epeople.go.kr>.
네이버 용어사전. <http://www.naver.com>.
네이버 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네이버 홈페이지. <http://www.naver.com>.
두드림존 홈페이지. <http://www.kyci.or.kr>.
마포구청 홈페이지, <http://www.mapo.go.kr>.
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 위해 스포츠관람 바우처 시범사업 시행(스포츠월드. 2010. 9. 27일자). <http://www.sportsworldi.com>.
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lawnorder.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정신보건. <http://www.mw.go.kr>.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www.newplus.go.kr>.

부산, 여성·아동 폭력피해자 24시간 원스톱지원'(뉴시스. 2010. 2. 8일자). <http://www.newsis.com>.

부산서구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http://edu.seogu.busan.kr>.

부산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bsonestop.or.kr>.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http://www.dongposarang.or.kr>.

사이버 한국법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edu.or.kr>.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kaswc.or.kr>

소년원학교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솔로몬 로파크 홈페이지. <http://www.lawedupark.go.kr>.

스쿨존 넓어진다(한겨레신문. 2010. 9. 24일자). <http://www.hani.co.kr>.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아동복지법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양산시 청소년동반자. <http://www.yangsan.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조직 및 기능,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조직 및 기능. <http://www.mogef.go.kr>

여행바우처. <http://agora.media.daum.net>.

위 홈페이지. <http://www.wee.or.kr>.

인천종합일자리센터 홈페이지, <http://www.incheonjob.org>.

인터넷 중독·해소사업. <http://www.kyci.or.kr>

정부의 공교육 대책(위클리 공감. 2009. 7. 25일자). <http://gonggam.korea.kr>.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진도디지털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jindo.grandculture.net>.

진로정보센터 운영. <http://www.krivet.re.kr>.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온라인 위기상담 사업. <http://www.jikimi.or.kr>.

청소년 고민 상담 통화보다 문자로(한국일보 2010. 7. 14일자). <http://news.hankooki.com>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홈페이지, <http://www.jikim.net>.

커리어넷 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careernet.re.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hub4u.or.kr>.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학교 사회복지사 없애면 안 된다(한겨레 칼럼. 2008. 12. 31일자).
<http://www.hani.co.kr>.
 학교폭력SOS지원단. <http://www.jikim.net>.
 학비 걱정 뚫! 저소득층에 8851억 지원(위클리 공감. 2009. 2. 28일자).
<http://gonggam.korea.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http://www.kofac.or.kr>.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nanumtour.or.k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 업무현황. <http://www.moj.go.kr>.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포털 홈페이지. <http://www.iapc.or.kr>.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2009 주요사업실적, <http://www.kyci.or.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ywa.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ssw.or.kr>.
 희망마을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seoul.co.kr>.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http://www.hopegrowing.com>.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해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흥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흥식
- 10-R03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운정·안소연·윤소윤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해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윤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박영균 · 이상훈 · 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 · 이승현 · 권수진 · 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 · 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 · 유영준 · 이명희 · 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 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 · 최수정 · 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 · 조아미 · 정경은 · 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Hernan Cuervo · 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 · 장지연 · 윤자영 · 성재민 · 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수시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 · 길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 · 김성경 · 남미애 · 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 · 박제일 · 이은경 · 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 · 권해수

■ 용역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운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란·김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윤숙·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кви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I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II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V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
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 · 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연구보고 10-R02-1

아동 · 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인 쇄 2010년 12월 24일

발 행 2010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빗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873-1

978-89-7816-871-7(세트)